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

2019. 11

충남도의회

제 출 문

충남도의회의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9. 11



원장 윤 황

■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필요성 4

제2절 연구 목적 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4절 연구 추진체계 및 과정 8

1. 연구진 및 역할 8

2. 추진 일정 8

3. 연구 과정 9

제5절 기대 효과 12

제2장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분석 ... 15

제1절 농가소득 현황 15

1. 농가소득 15

2. 농가소득충남도 농가소득 23

3. 농가소득 분석 소결 44

제2절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47

1. 전국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47

2. 충남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55

3.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분석 소결 67

제3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체 분석 결론 69

제3장 농민기본소득 개념, 배경, 쟁점 분석 75

제1절 개념 정의 75

1. 기본소득(basic income) 75

2.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76

제2절 논의 배경 79

1. 무분별한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삶 파탄 79

2. 도농 간 소득불평등 심화 80

3. 농업직불금 수령액 양극화 심화 81

4. 농가 간 소득 양극화 심화 83

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 필요 85

제3절 쟁점 분석 87

1. 농민기본소득의 목적 및 대상 87

2. 거주 및 영농 기간 90

3. 지급액 90

4. 지급 제외 대상자 및 지급 방법 92

5. 지급 시기 및 이행 조건 94

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여부 9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00

1. 요약 100

2. 시사점 101

제4장 타 지자체 사례 및 유사 정책 사례 분석 107

제1절 타 지자체 사례 107

1. 전남도(2019년 7월 25일 도-시군 합의 내용 기준) 107

2. 전북도(2019년 7월 1일 도-시군 합의 내용 기준) 109

3. 전남 강진군 111

4. 전남 해남군 113

5. 기타 지자체 116

제2절 유사 정책 사례	118
1.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	118
2. 농식품부 공익형 농업직불제	11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3
1. 요약	123
2. 유사 정책 비교	126

제5장 농민기본소득 적정 금액 분석 129

제1절 타 지자체 금액 비교	129
1. 타 지자체 금액 현황 및 쟁점	129
제2절 충남 농민기본소득 예산	131
1. 지급대상	131
2. 지급액	132

제6장 실행체계 구축 및 지속 방안 151

제1절 실행체계 구축 방안	151
1. 각급 행정단위별 추진체계(위원회) 구성	151
2. 각급 추진체계별 역할과 기능 부여	151
제2절 조례 제정 방향	152
1. (가칭)<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152
2. 충남농업환경실천사업과의 연계성	155
제3절 예산 확보 방안	157
1. 농정예산 확대	157
2. 농정예산 재정혁신	158
3.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운영	161
4. 중앙정부 예산 활용	161
제4절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홍보 방안	164

부록 169

I. 보고회 자료 169

1. 착수보고회 169
2. 중간보고회 172
3. 최종보고회 174

II. 회의 및 자료수집 활동 176

1.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참관 176
2. 충청도청 식량원예과장 및 담당자 인터뷰 178
3. 충남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자문회의 181
4. 충남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인터뷰 및 현장조사 189

표 차례

[표 1-1] 연구진 및 담당 분야	8
[표 1-2] 연구 추진 일정	8
[표 1-3] 추진 경과	10
[표 2-1] 전국 농가소득 현황	16
[표 2-2] 경지규모별 평균 농가소득액	17
[표 2-3]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분포	18
[표 2-4] 농가부채 평균 현황	19
[표 2-5] 농가소득과 가계소득 차	20
[표 2-6] 시도별 농가소득 현황	21
[표 2-7] 전체 농가 및 분석대상 농가 수	23
[표 2-8] 충남 평균 농가소득 현황	24
[표 2-9] 충남 농가소득의 소득구간 별 가구 현황	25
[표 2-10] 충남 농가소득 평균 및 중위 값	26
[표 2-11] 충남 농업소득 현황	27
[표 2-12] 충남 농업소득 작목별 비율	28
[표 2-13] 충남 농업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29
[표 2-14] 충남 농업소득 평균 및 중위 값	31
[표 2-15] 충남 겸업소득 현황	32
[표 2-16] 충남 겸업소득 부문별 비율	32
[표 2-17] 2018년 충남 겸업소득 중 기타겸업 세부 비율	33
[표 2-18] 충남 겸업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34
[표 2-19] 충남 사업 외 소득 현황	35
[표 2-20] 충남 사업 외 소득 부문별 비율	36
[표 2-21] 충남 사업 외 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37
[표 2-22] 충남 사업 외 소득 평균 및 중위 값	37
[표 2-23] 충남 이전소득 현황	38
[표 2-24] 충남 이전소득 부문별 비율	39
[표 2-25] 충남 이전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40
[표 2-26] 충남 이전소득 평균 및 중위 값	41
[표 2-27] 충남 농업소득 현황	42
[표 2-28] 충남 비경상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43
[표 2-29] 충남 비경상소득 평균 및 중위 값	43
[표 2-30] 충남 농가소득 및 세부항목의 평균 및 중위 값	46
[표 2-31] 전국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47
[표 2-32] 전국 농업경영체 및 농가 현황 및 차이	49
[표 2-33] 전국 농업경영체 변화	50
[표 2-34] 전국 농업인 등록 현황	52
[표 2-35] 농업인 성별 등록 현황	52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표 2-36]	농업인 연령별 등록 현황	53
[표 2-37]	전국 농업인 변화	54
[표 2-38]	충남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56
[표 2-39]	충남 가구 및 농업경영체 비중 비교	58
[표 2-40]	충남 농업경영체 변화	59
[표 2-41]	충남 농업인 등록 현황	61
[표 2-42]	충남 인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인구 비중 비교	63
[표 2-43]	충남 농업인 성별 등록 현황	64
[표 2-44]	충남 농업인 연령별 등록 현황	64
[표 2-45]	충남 농업인 변화	65
[표 3-1]	농가소득 5분위별 변화 추이	83
[표 3-2]	각국의 농업예산과 농업직불금 비교	84
[표 3-3]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연구·평가 결과	86
[표 3-4]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차이 및 장단점	87
[표 3-5]	각 지자체 및 농민단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조례(안) 내 목적	88
[표 3-6]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급 방식별 장단점	94
[표 3-7]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참여를 규정하는 농민수당 조례의 예	96
[표 4-1]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 소요 예산 변화	119
[표 4-2]	광역지자체 농민수당 실시 계획 비교	123
[표 4-3]	기초지자체 농민수당 실시(계획) 비교	125
[표 4-4]	농민수당 유사 정책 비교	127
[표 5-1]	각 지자체 및 단체의 농(어)민수당 지급액 비교(연간)	130
[표 5-2]	2018 ~ 2020년 지급대상 선정 결과	131
[표 5-3]	농업경영체 지급 금액	132
[표 5-4]	농업인 개별 지급 금액	134
[표 5-5]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2018년)	136
[표 5-6]	충남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추이	136
[표 5-7]	충남도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2018년)	137
[표 5-8]	할증 방식에 따른 농민수당 총액(2018년 기준)	137
[표 5-9]	50만원 기본지급 후 할증방식	138
[표 5-10]	60만원 기본지급 후 할증방식	138
[표 5-11]	충남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따른 지급액(2018년 기준)	139
[표 5-12]	농업경영체 지급기준 충남도 및 시군별 부담금(충남도 40%)	140
[표 5-13]	농업경영체 지급기준 충남도 및 시군별 부담금(충남도 30%)	142
[표 5-14]	농업인 지급기준 충남도 및 시군별 부담금(충남도 40%)	144
[표 5-15]	농업인 지급기준 충남도 및 시군별 부담금(충남도 30%)	146
[표 5-16]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대상 지급시 예산 비교(도비 40% 기준)	148
[표 6-1]	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단계별 추진체계의 역할과 구성	151
[표 6-2]	충남도 농정분야 일몰·축소·통합 대상 사업 발굴 현황	157
[표 6-3]	충남도 농정분야 일몰·축소·통합 대상 사업 세부 내용	159
[표 6-4]	충남도 농정분야 일몰·축소·통합 대상 사업 세부 내용	160

그림 차례

[그림 1-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체계도	4
[그림 1-2] 연구 과정	9
[그림 2-1] 농가소득 변화 그래프	16
[그림 2-2] 2018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분포(좌 1.0ha 미만, 우 10ha 이상)	18
[그림 2-3] 시도별 농가소득 현황 그래프	21
[그림 2-4] 시도별 농가소득 지도(좌 2003년, 우 2018년)	22
[그림 2-5] 충청남도 농가소득 현황 그래프	24
[그림 2-6] 충남 농가소득 소득구간 별 가구 현황	26
[그림 2-7] 충남 농업수입 중 농산물 수입 구조 변화	29
[그림 2-8] 충남 농업소득 구간 별 현황	30
[그림 2-9] 충남 겸업소득 구조 변화	33
[그림 2-10] 충남 사업 외 소득의 평균 값 및 중위 값	38
[그림 2-11] 충남 이전소득 구성 비율 변화	39
[그림 2-12] 충남 이전소득 소득구간별 비율 변화	41
[그림 2-13] 2018년 전국 시도별 농업경영체 비중	48
[그림 2-14] 전국 농업경영체 변화	51
[그림 2-15] 전국 농업인 변화	55
[그림 2-16] 2018년 충남 시군별 농업경영체 비율	56
[그림 2-17] 충남 농업경영체 변화	60
[그림 2-18] 2018년 충남 시군별 농업인 비율	61
[그림 2-19] 충남 농업인 변화	66
[그림 2-20]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체 분석 시사점	69
[그림 3-1] 농가인구 및 고령농 변화 추이	80
[그림 3-2] 도농 간 소득격차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농업전망)	80
[그림 3-4] 연도별 농가당 평균부채 추이	81
[그림 3-3] 연도별 농가당 평균소득 증가 추이	81
[그림 4-1]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시군 협약식	108
[그림 4-2]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도-시군 협약식	110
[그림 4-3]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및 농민수당 지급	113
[그림 4-4] 해남군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 홍보물 및 상품권	113
[그림 4-5] 공익형 직불제 실시 모델	120
[그림 4-6] 재정규모별 직불제 개편 효과	122
[그림 6-1] 충남형 공익형 직불제 실시 모델	156
[그림 6-2] 충남도 농림축산국 사업별 예산 비율	158
[그림 6-3] 충남도 농림축산국 자체사업 예산 비율	158
[그림 6-4] 중앙정부 주도 농민기본소득 실시 모델	162
[그림 6-5] 지자체 주도의 농민기본소득 실시 모델	163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4절 연구 추진체계 및 과정

제5절 기대 효과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농가소득 감소로 농촌공동체 소멸 위험

-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가속화된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감소로 농민의 생존권 위협
- 식량, 생태, 문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촌공동체의 소멸 위험

①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하락

- 전국: 2010년 3,062,956명→2017년 2,422,256명으로 20.9% 감소
- 충남: 2010년 394,324명→2017년 288,800명으로 26.7% 감소
- * 전국 평균의 인구 감소

② 농업인 고령화(65세 이상) 지속 증가

- 전국: 2010년 21.7%→2017년 42.5%로 20.8% 증가
- 충남: 2010년 22.1%→2017년 44.4%로 22.3% 증가
- * 전국에 비해 높은 고령화를 유지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필요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필요

참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관련 법규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 9조, 44조~6조)
 -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 (2)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3)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5) 생태계의 보전
 - (6)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 (1) 안정적 식량 공급

- (2) 토양·물·공기·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 (3) 농촌경관 유지
-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그림 1-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체계도
출처: 팜인사이트(2018.3.9)

2. 연구 필요성

■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정책 마련 필요

- 소수가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업정책이 아니라 농민이면 누구나 생존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농가 소득보전 정책 필요

※ 참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협의 결과 통지(화순, 해남, 함평, 강진)(2019.5 .7)

-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2절 연구 목적

■ 농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

- 상시적인 농산물가격 불안정 문제 해소
- 농가 수입원 감소에 따른 생존권 보장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지속성 마련

- 식량안보, 수자원 함양, 생태계 보전, 공동체문화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252조원(농진청, 2012)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남도 및 15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20년부터
- 과업 수행기간
 - 2019. 5. 8 - 2019. 11. 03
- 내용적 범위
 - 농가소득 감소 현황 및 원인 분석
 - 타 자치단체 유사사례 조사 분석
 - 유사사업 정책분석과 우리도 정책 비교 분석
 - 농촌거주 비농업인과의 상생 방안
 - 도 재정상황을 고려한 적정지원 금액 등

2. 연구 방법

- 통계 분석
 - 농가 인구 및 경영체 현황 분석
 - 농가 소득 및 경영 현황 분석
 - 도농 간, 농가 간 소득격차 분석
- 국내외 분석
 - 전남도, 전북도, 경기도 등 타 광역 지자체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강진, 해남 등 기초 지자체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회 및 현장 토론회

- 충남도의회 및 충남연구원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연구회 개최
- 농민수당추진위원회 등 농민단체와의 토론회 개최
- ※ 착수, 중간, 최종 보고를 통한 각 분야 의견 청취

■ 인터뷰조사 및 분석

- 농민기본소득 관련 핵심그룹 인터뷰조사
- 대상 : 농정담당자, 농민단체 관계자, 의원 등 약 15명
- 조사내용 :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액수, 방법, 추진체계 등

제4절 연구 추진체계 및 과정

1. 연구진 및 역할

■ 전체 연구진

- 3명(박사2, 석사1)

[표 1-1] 연구진 및 담당 분야

참여업무	직위	성명	전 공	주요 담당 분야
연구책임	책임연구원	박경철	사회학	연구책임, 연구총괄 충남농민기본소득 실행 방안 도출
연구 참여	연구위원	강미야	농업경제	농가소득 및 경영체 분석
	연구원	한승석	지리학	연구 간사, 타 지자체 사례조사

2.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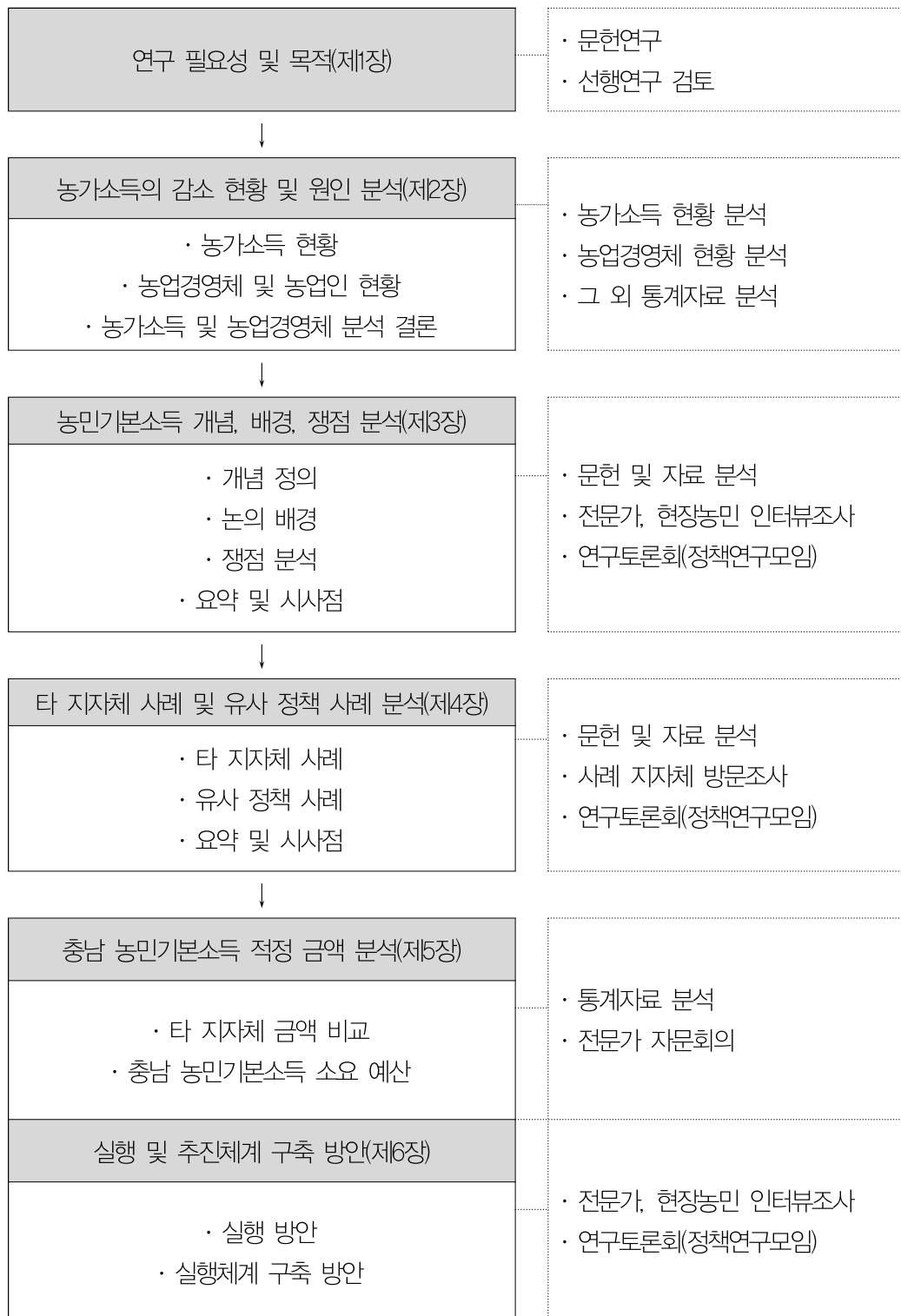
■ 연구기간

- 2019. 5. 8-2019. 11. 03

[표 1-2]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110일)								
세부내용 \ 기 간	15일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	
가.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 구성								
나. 농가경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다. 국내외 농민기본소득 사례 분석 및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도출								
라. 중간보고회								
마. 충남 농민기본소득 세부 실시 방안 도출								
바. 자문회의 및 보완								
사.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3. 연구 과정



[그림 1-2] 연구 과정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표 1-3] 추진 경과

경과 내용	일시	장소
보고회		
착수보고회	2019.05.13. 15:00~17:0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중간보고회	2019.08.28. 15:00~17:0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최종보고회	2019.10.13. 15:00~17:0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토론회 (연구모임)		
제1차 토론회	2019.03.19. 13:30~15:30	충남도의회 회의실
제2차 토론회	2019.04.11. 14:00~16:00	충남도의회 회의실
제3차 토론회	2019.07.29. 14:00~16:00	충남도의회 회의실
제4차 토론회	2019.09.10. 10:00~12:00	충남도의회 회의실
		
제1차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제3차 토론회		제4차 토론회
자문회의		
제1차 자문회의	2019.06.20. 15:00~17:00	충남연구원
제2차 자문회의	2019.06.27. 15:00~17:00	충남연구원
제3차 자문회의	2019.07.4. 15:00~17:00	충남연구원

제4차 자문회의	2019.10.25. 15:00~17:00	충남연구원
		
제1차 자문회의	제2차 자문회의	
		
제3차 자문회의	제4차 자문회의	

현장 및
인터뷰 조사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참석	2019.05.17. 14:00~16:00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
충남도청 식량원예과장 및 담당자 인터뷰	2019.06.13. 14:00~16:00	충남도청 식량원예과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인터뷰 조사	2019.07.03. 14:00~16:00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담당자 인터뷰조사	2019.07.23. 14:00~16:00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기초자치단체 농업직불제 담당자 인터뷰조사	2019.07.18. 10:00~12:00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면지역 농업직불제 담당자 인터뷰조사	2019.07.18. 14:00~16:00	부여군 규암면행정복지센터
면지역 농업직불제 담당자 인터뷰조사	2019.07.18. 16:00~18:00	공주시 이인면행정복지센터
농민수당 사례 지역 조사	2019.07.25. 14:00~16:00	강진군청 친환경농산과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농민수당 사례 지역 조사2	2019.07.26. 10:00~12:00	해남군청 농업정책과
농민수당 사례 지역 농민단체 인터뷰 조사	2019.07.25. 16:00~18:00	강진군청 앞 커피숍
충남 농어가 기본소득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2019.09.06. 14:00~16:00	충남도청 회의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차 컨퍼런스 참석	2019.10.11. 16:00~18:0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차 컨퍼런스 참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차 컨퍼런스 참석	2019.10.22. 14:00~16:00	경기연구원 회의실
충남 농어민수당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참석	2019.10.23. 10:00~12:00	충남도청 회의실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참석	부여군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담당자 인터뷰조사	부여군 규암면사무소 농업직불제 담당자 인터뷰조사
		
공주시 이인면사무소 농업직불제 담당자 인터뷰조사	농민수당 사례 지역 조사: 강진군청	농민수당 사례 지역 조사: 해남군청

제5절 기대 효과

- 충남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농민기본소득 보장액 기준 제시
- 관련 법령 정비의 제안 및 도 조례 제정(안) 마련
- 도 정책담당자에게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책 및 실행과제 제안

제2장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 분석

제1절 농가소득 현황

제2절 농가소득 감소 원인

제3절 농가소득 개선 방안

제2장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분석

제1절 농가소득 현황

1. 농가소득

1) 농가소득 현황

(1) 전체 농가소득 추이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 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계열적 농가소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최근 15년의 농가소득 평균자료를 살펴보았음
-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가장 큰 소득은 ‘농업소득’과 ‘사업 외 소득’으로 2003년 전체 소득의 65.8%를 차지하였고 2008년에는 5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은 2003년에는 26,878천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42,066천원으로 5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농가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소득 중 농업소득, 비경상소득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그 외 겸업소득, 사업 외 소득,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인 소득측면은 이전소득으로 2003년 대비 2018년 16%가 증가하였음
 - 모든 소득부분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증가하였고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이전소득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은 2003년에는 전체 농가소득의 7.6%를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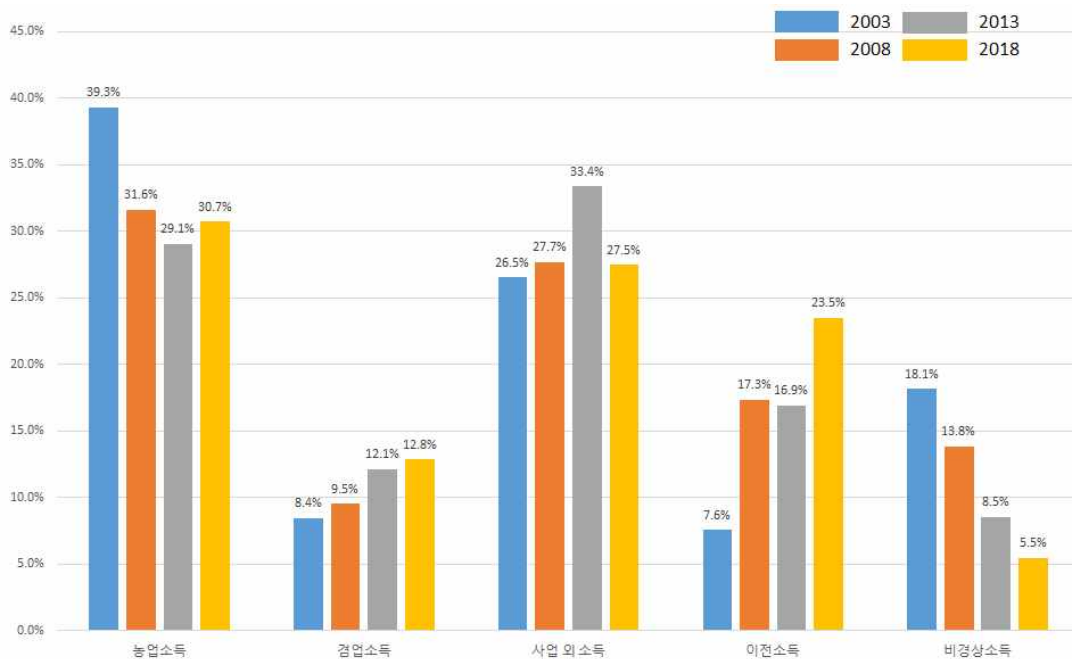
하여 2018년에 23.5%의 비중을 보여 농가소득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하였음

[표 2-1] 전국 농가소득¹⁾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농가소득	26,878 (100%)	30,523 (100%)	34,524 (100%)	42,066 (100%)
농업소득	10,572 (39.3%)	9,654 (31.6%)	10,035 (29.1%)	12,920 (30.7%)
겸업소득	2,266 (8.4%)	2,900 (9.5%)	4,182 (12.1%)	5,398 (12.8%)
사업 외 소득	7,131 (26.5%)	8,453 (27.7%)	11,523 (33.4%)	11,554 (27.5%)
이전소득	2,031 (7.6%)	5,289 (17.3%)	5,844 (16.9%)	9,891 (23.5%)
비경상소득	4,878 (18.1%)	4,227 (13.8%)	2,940 (8.5%)	2,302 (5.5%)

자료 : 통계청



[그림 2-1] 농가소득 변화 그래프

- 1)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나머지
 겸업소득 : 농가 또는 어가 등에서 주된 업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사업 외 소득 : 농가 또는 어가가 사업 외의 활동에서 얻는 소득
 이전소득 : 생산 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닌 소득(정부 연금 혹은 기업의 기여 등)
 비경상소득 :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으로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포함
 출처 : 두산백과

(2)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 농가소득은 경지면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지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 10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소득이 1억 원을 상회하였음
- 반면 1ha 미만의 경지규모를 가지는 농가는 2018년 평균 농가소득의 약 85.2%의 수준으로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작규모가 작을수록 '농업소득' 보다는 '사업 외 소득'의 비중이 큰 상태임

- 1ha 미만의 경지규모 농가는 사업 외 소득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10ha 이상의 경지규모 농가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이전소득의 경우도 경작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2] 경지규모별 평균 농가소득액

(단위 : 천원)

구분		1ha 미만	1~2ha	2~3ha	3~5ha	5~7ha	7~10ha	10ha 이상
2003	농가소득	21,686	26,161	31,333	30,834	34,735	50,875	53,372
	농업소득	3,183	11,106	15,224	16,324	20,405	34,633	35,376
	겸업소득	2,521	1,459	2,501	3,258	2,700	2,016	4,912
	사업외소득	9,274	6,854	6,239	4,353	5,093	4,914	2,511
	이전소득	2,164	1,912	1,803	2,112	1,882	1,993	4,740
	비경상소득	4,546	4,832	5,566	4,787	4,654	7,319	5,834
2008	농가소득	26,868	28,586	35,054	35,924	44,915	63,548	48,032
	농업소득	3,803	10,105	15,370	18,144	19,439	42,839	23,526
	겸업소득	3,328	2,302	3,035	1,829	5,404	4,252	3,492
	사업외소득	10,490	7,157	6,533	6,348	6,071	5,132	8,893
	이전소득	5,204	4,867	5,594	4,962	7,886	8,225	8,183
	비경상소득	4,045	4,156	4,521	4,642	6,114	3,100	3,939
2013	농가소득	30,106	36,199	36,987	41,627	56,577	45,006	53,129
	농업소득	3,395	15,055	16,373	20,095	28,628	21,406	28,840
	겸업소득	4,757	3,192	3,699	4,150	4,644	3,943	1,821
	사업외소득	14,039	8,794	8,473	7,135	9,916	6,745	8,787
	이전소득	5,350	5,716	5,486	7,180	8,208	11,005	11,019
	비경상소득	2,566	3,443	2,956	3,067	5,181	1,906	2,662
2018	농가소득	35,845	42,544	48,660	60,345	61,071	90,157	130,759
	농업소득	5,028	15,539	24,499	36,134	34,206	52,235	86,648
	겸업소득	5,980	4,087	4,146	4,151	5,561	9,397	10,729
	사업외소득	13,194	10,709	8,516	5,871	6,561	8,558	12,279
	이전소득	9,139	10,068	9,724	11,918	12,825	16,028	19,112
	비경상소득	2,505	2,142	1,775	2,271	1,918	3,939	1,991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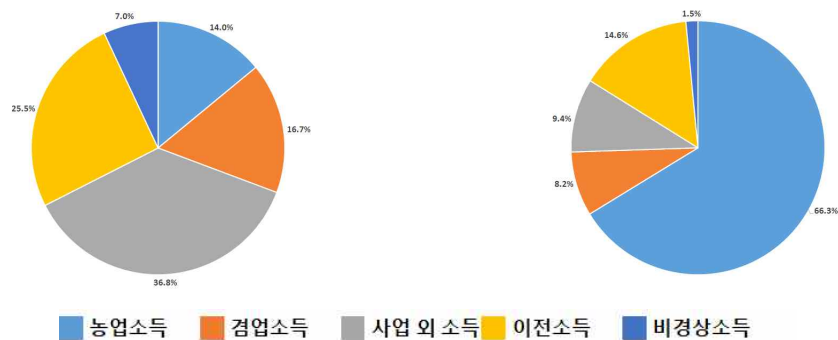
[표 2-3]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분포

구분		1ha 미만	1~2ha	2~3ha	3~5ha	5~7ha	7~10ha	10ha 이상
2003	농가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소득	14.7%	42.5%	48.6%	52.9%	58.7%	68.1%	66.3%
	겸업소득	11.6%	5.6%	8.0%	10.6%	7.8%	4.0%	9.2%
	사업외소득	42.8%	26.2%	19.9%	14.1%	14.7%	9.7%	4.7%
	이전소득	10.0%	7.3%	5.8%	6.8%	5.4%	3.9%	8.9%
	비경상소득	21.0%	18.5%	17.8%	15.5%	13.4%	14.4%	10.9%
2008	농가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소득	14.2%	35.3%	43.8%	50.5%	43.3%	67.4%	49.0%
	겸업소득	12.4%	8.1%	8.7%	5.1%	12.0%	6.7%	7.3%
	사업외소득	39.0%	25.0%	18.6%	17.7%	13.5%	8.1%	18.5%
	이전소득	19.4%	17.0%	16.0%	13.8%	17.6%	12.9%	17.0%
	비경상소득	15.1%	14.5%	12.9%	12.9%	13.6%	4.9%	8.2%
2013	농가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소득	11.3%	41.6%	44.3%	48.3%	50.6%	47.6%	54.3%
	겸업소득	15.8%	8.8%	10.0%	10.0%	8.2%	8.8%	3.4%
	사업외소득	46.6%	24.3%	22.9%	17.1%	17.5%	15.0%	16.5%
	이전소득	17.8%	15.8%	14.8%	17.2%	14.5%	24.5%	20.7%
	비경상소득	8.5%	9.5%	8.0%	7.4%	9.2%	4.2%	5.0%
2018	농가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소득	14.0%	36.5%	50.3%	59.9%	56.0%	57.9%	66.3%
	겸업소득	16.7%	9.6%	8.5%	6.9%	9.1%	10.4%	8.2%
	사업외소득	36.8%	25.2%	17.5%	9.7%	10.7%	9.5%	9.4%
	이전소득	25.5%	23.7%	20.0%	19.7%	21.0%	17.8%	14.6%
	비경상소득	7.0%	5.0%	3.6%	3.8%	3.1%	4.4%	1.5%

자료 : 통계청

■ 2018년 경작규모 1.0ha와 10ha 이상을 비교하면 농가소득은 10ha 이상이 1.0ha 보다 약 4배 정도 큰 상태임

- 전술하였듯이 10ha 이상의 경작규모의 농가는 농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1.0ha 미만의 경작규모 농가는 사업 외 소득의 비중이 가장 큰 상태임



[그림 2-2] 2018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분포(좌 1.0ha 미만, 우 10ha 이상)

(2) 농가부채 현황

- 농가의 실질 소득을 추론하기 위하여 농가의 부채를 분석하였음
- 농가부채는 2003년 농가소득의 99.0%였으나 2018년 79.1%로 다소 완화되었음
 -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을 보게 되면 2008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의 종류는 고정부채가 유동부채에 비해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농업의 규모화 정책과 함께 최근 증가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농지, 거주지의 구매 등의 원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 농가부채 평균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2003	2008	2013	2018
농가부채	26,619 ○ 고정 : 21,694 ○ 유동 : 4,925	25,786 ○ 고정 : 20,798 ○ 유동 : 4,989	27,363 ○ 고정 : 23,446 ○ 유동 : 3,917	33,269 ○ 고정 : 28,856 ○ 유동 : 4,413
농가소득 대비 농가부채 비율	99.0%	84.5%	79.3%	79.1%

자료 : 통계청

(2) 가계소득과 농가소득의 차이

- 농가소득과 전체 가구와의 소득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청 제공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실질)’ 자료와 비교하였음
- 비교한 결과 농가소득은 전국 가계소득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농가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62.7%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8년에는 79.8%로 소득의 격차가 좁혀졌음
 - 하지만, 농가는 3개의 시점에서 60% 정도의 소득 밖에 못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소득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농가소득과 전국 평균 가계소득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이전소득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하다 할 수 있음

[표 2-5] 농가소득과 가계소득 차

(단위 : 천원)

시도	2003	2008	2013	2018
농가소득	26,878	30,523	34,524	42,066
가계소득 ²⁾	42,834	47,268	50,936	52,722
차이	15,956	16,745	16,412	10,656
농가소득의 정도	62.7%	64.6%	67.8%	79.8%

자료 : 통계청

2) 시도별 농가소득

- 조사대상이 된 시도는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8개도와 제주특별자치시로 총 9개임
-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는 전체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경기도와 제주도는 모든 년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는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음
 - 충청남도는 한 시점에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세 시점에서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평균보다 낮은 편임
- 9개 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평균에 가장 높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는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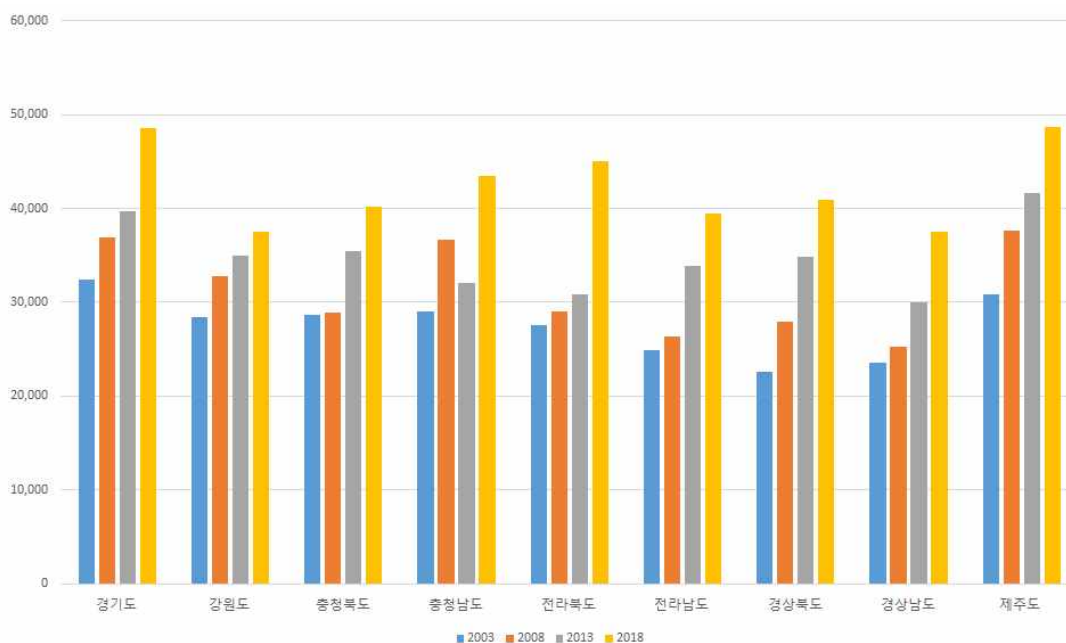
2) 통계표에서 제시한 월평균 금액을 연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통계표 금액의 12배로 계상하였음

[표 2-6] 시도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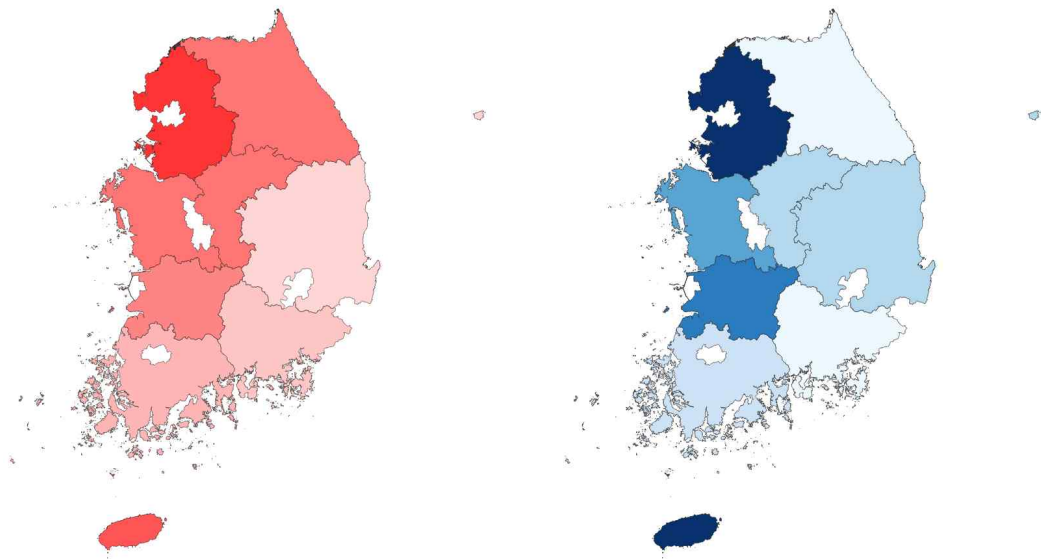
시도	2003	2008	2013	2018
전체	26,878	30,523	34,524	42,066
경기도	32,457 (+) ³⁾	36,928 (+)	39,748 (+)	48,508 (+)
강원도	28,387 (+)	32,822 (+)	34,920 (+)	37,544 (-)
충청북도	28,593 (+)	28,909 (-)	35,418 (+)	40,129 (-)
충청남도	28,973 (+)	36,607 (+)	32,038 (-)	43,510 (+)
전라북도	27,544 (+)	28,959 (-)	30,869 (-)	45,090 (+)
전라남도	24,845 (-)	26,349 (-)	33,858 (-)	39,476 (-)
경상북도	22,628 (-)	27,895 (-)	34,894 (+)	40,921 (-)
경상남도	23,542 (-)	25,194 (-)	29,946 (-)	37,521 (-)
제주도	30,849 (+)	37,672 (+)	41,640 (+)	48,630 (+)

자료 : 통계청



[그림 2-3] 시도별 농가소득 현황 그래프

3) 전체 평균값에 대한 차이



[그림 2-4] 시도별 농가소득 지도(좌 2003년, 우 2018년)

2. 충남도 농가소득

1) 충남도 농가소득 추이

■ 충남도 농가의 소득을 분석하기 위하여 매년 표본조사된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를 활용하였음

- 2018년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4개 시점(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을 조사하였음

[표 2-7] 전체 농가 및 분석대상 농가 수

(단위 : 가구)

구분	2003		2008		2013		2018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충남 전체	164,080	100%	160,374	100%	144,033	100%	123,480	100%
분석대상	354	0.22%	318	0.20%	278	0.19%	337	0.27%

자료 : 통계청

- 농가소득의 경우 2003년에 비해 2018년에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경우 금액과 농가소득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8년 증가하였음
- 겸업소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018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 외 소득의 농가소득 내 비중은 2003년 26.4%에서 2018년 20.0%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전소득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소득 내 비중도 2003년 대비 2018년에 큰 비중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2003년 농가소득 내 6.8%에 불과하였던 비중이 2018년 20.9%로 증가하여 농업 소득 다음으로 큰 소득으로 나타남
- 비경상소득은 이전소득과 반대의 경우로 2003년 농가소득 내에 큰 비중을 차지한 소득 부분이었으나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5%에서 6.4%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표 2-8] 충남 평균 농가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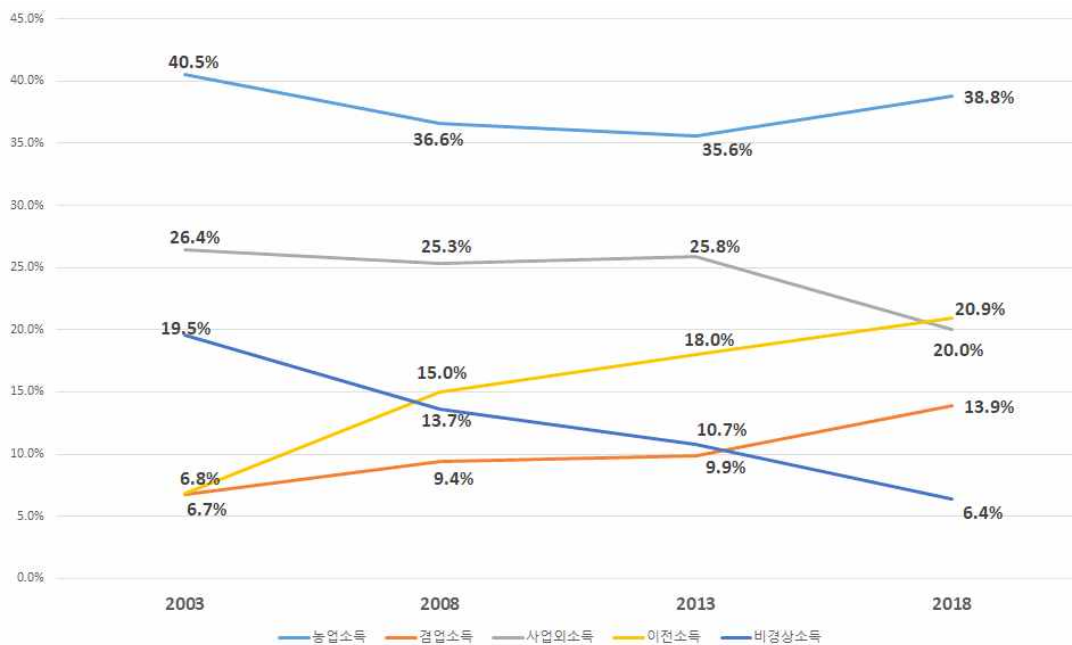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03	28,591	11,581 (40.5%)	1,928 (6.7%)	7,548 (26.4%)	1,945 (6.8%)	5,589 (19.5%)
2008	36,759	13,465 (36.6%)	3,445 (9.4%)	9,302 (25.3%)	5,527 (15.0%)	5,020 (13.7%)
2013	32,503	11,558 (35.6%)	3,207 (9.9%)	8,402 (25.8%)	5,843 (18.0%)	3,493 (10.7%)
2018	46,187	17,927 (38.8%)	6,401 (13.9%)	9,248 (20.0%)	9,664 (20.9%)	2,946 (6.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전체적으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4시점마다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이전소득과 함께 겸업소득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성장하였음
- 사업 외 소득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완만한 하락세라 할 수 있으며 비경상소득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5] 충남도 농가소득 현황 그래프

■ 소득구간 별 가구의 현황은 살펴보면 10백만 원에서 20백만 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가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20 ~ 30백만 원 구간이었으며 전체적으로 10 ~ 40백만 원 구간에 약 50% 정도의 가구가 집중되어 있음
- 연간 평균적으로 10백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가도 매 시점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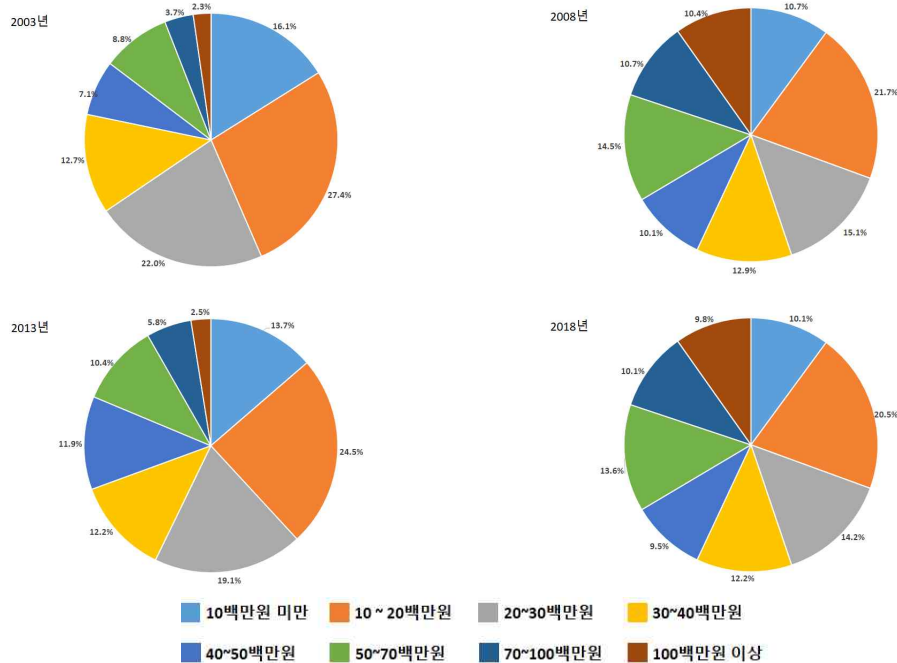
■ 매 시점별 최하위 등급에서 50%가 넘어가는 소득구간을 계상한 결과 20 ~ 30백만 원 구간과 바로 그 위 구간으로 나타남

- 즉, 50% 이상의 농가에서는 매년 평균 40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태임
- 2003년 : 10백만원 미만 ~ 30백만원 65.5%
10백만원 미만 ~ 40백만원 78.2%
- 2008년 : 10백만원 미만 ~ 30백만원 47.5%
10백만원 미만 ~ 40백만원 60.4%
- 2013년 : 10백만원 미만 ~ 30백만원 57.2%
10백만원 미만 ~ 40백만원 69.4%
- 2018년 : 10백만원 미만 ~ 30백만원 44.8%
10백만원 미만 ~ 40백만원 57.0%

[표 2-9] 충남 농가소득의 소득구간 별 가구 현황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0백만원 미만	57	16.1%	34	10.7%	38	13.7%	34	10.1%
10백만원~20백만원	97	27.4%	69	21.7%	68	24.5%	69	20.5%
20백만원~30백만원	78	22.0%	48	15.1%	53	19.1%	48	14.2%
30백만원~40백만원	45	12.7%	41	12.9%	34	12.2%	41	12.2%
40백만원~50백만원	25	7.1%	32	10.1%	33	11.9%	32	9.5%
50백만원~70백만원	31	8.8%	46	14.5%	29	10.4%	46	13.6%
70백만원~100백만원	13	3.7%	34	10.7%	16	5.8%	34	10.1%
100백만원 이상	8	2.3%	33	10.4%	7	2.5%	33	9.8%
총계	354	100%	318	100%	278	100%	337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그림 2-6] 충남 농가소득 소득구간 별 가구 현황

- 평균값과 중위 값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충남도 농가의 소득을 분석하였음
- 충남 농가소득의 평균 및 중위값을 확인한 결과 매 시점에서 중위값이 평균보다 적은 상태로 나타남
 - 중위값은 전체 농가 중 한 가운데에 있는 농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과 중위 값의 차이는 중위값을 중심으로 양 극의 값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함
 - 즉, 충남의 농가소득은 많은 농가의 소득이 적으나 일부 소수의 고소득 농가에 의해 평균값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13년까지는 절반의 농가가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 2018년에는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평균값에 대한 중위 값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더욱 악화되었음

[표 2-10] 충남 농가소득 평균 및 중위값⁴⁾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평균	28,591	36,759	32,503	46,187
중위 값	22,876	27,728	26,122	33,418
평균에 대한 중위 값 비율	80.0%	75.4%	80.4%	72.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4)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데이터 값 (출처 : IT 용어사전)

2) 충남 농가소득 세부내용 분석

(1) 충남도 농업소득

■ 충남도 농업소득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업수입 및 농업경영비를 분석하였음

■ 농업수입은 크게 농작물 수입, 축산수입, 기타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작물 수입의 경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축산수입은 2천만 원 가량 증가하여 축산수입의 증가가 농업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영비의 경우 재료비와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2003년에 비해 2018년 약 23백만 원이 증가하여 수입의 증가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임

[표 2-11] 충남 농업소득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농업소득		11,580,880	13,464,516	11,558,222	17,927,106
농업수입	총 수입	24,872,170	37,616,235	37,336,557	54,697,121
	농작물 수입	19,515,046	23,366,405	25,176,753	29,039,247
	미곡	8,567,622	8,582,324	7,582,814	9,431,371
	맥류	4,896	34,114	8,355	17,962
	잡곡	17,185	22,716	39,951	440,893
	두류	243,932	506,593	1,055,890	696,629
	서류	206,847	538,533	830,385	685,076
	채소	5,700,112	6,827,427	7,137,563	10,638,545
	과실	1,221,871	2,238,849	1,915,966	2,854,879
	화훼	-306	704,585	1,602,540	1,329,841
	특작 및 기타	3,363,406	3,803,687	4,830,268	2,897,108
	농작물부산물	189,481	107,577	173,021	46,943
	축산 수입	5,323,767	12,873,785	12,055,881	24,490,296
	대동물 ⁵⁾	3,090,464	9,891,663	8,051,079	7,823,000
	소동물 ⁶⁾	60,298	1,833,839	351,282	13,533
	축산물	2,168,783	1,147,969	3,641,578	16,652,428
	축산물 부산물	4,222	314	11,942	1,335
	기타 수입	33,357	1,376,045	103,921	1,167,578
	농업피해보상금	15,564	1,302,043	85,471	1,097,727
	농업잡수입 기타	17,793	74,002	18,450	69,851
농업경영비	총 경영비	13,291,290	24,151,720	25,778,336	36,770,015
	재료비	5,579,357	11,503,307	10,713,275	18,551,017
	노무비	913,059	1,564,256	1,478,575	3,101,932
	경비	6,798,875	11,084,157	13,586,486	15,117,067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5) 소, 말, 돼지, 양계 등 산업동물 (출처 : 나무위키)

- 전체 농업수입에서 농작물을 통한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축산을 통한 수입은 증가하고 있음
- 농업피해보상금 및 농업잡수입은 최대 3.7%, 최저 0.1%로 농업수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세부수입 중 농작물 수입에서는 2013년까지 3시점에서 미곡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8년에는 채소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미곡과 채소의 비율이 2003년 73.1%에 해당하였고 2008년 65.9%, 2013년 58.5%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8년 69.1%로 다시 증가하였음
 - 미곡과 채소 다음으로는 특작 및 기타, 과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품목은 10% 미만의 점유를 보이고 있음
 - 즉, 충남의 농업수입 중 농작물의 수입은 미곡과 채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직도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축산물의 경우 대동물에 의한 수입이 가장 큰 편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였고 대신 축산물에 의한 수입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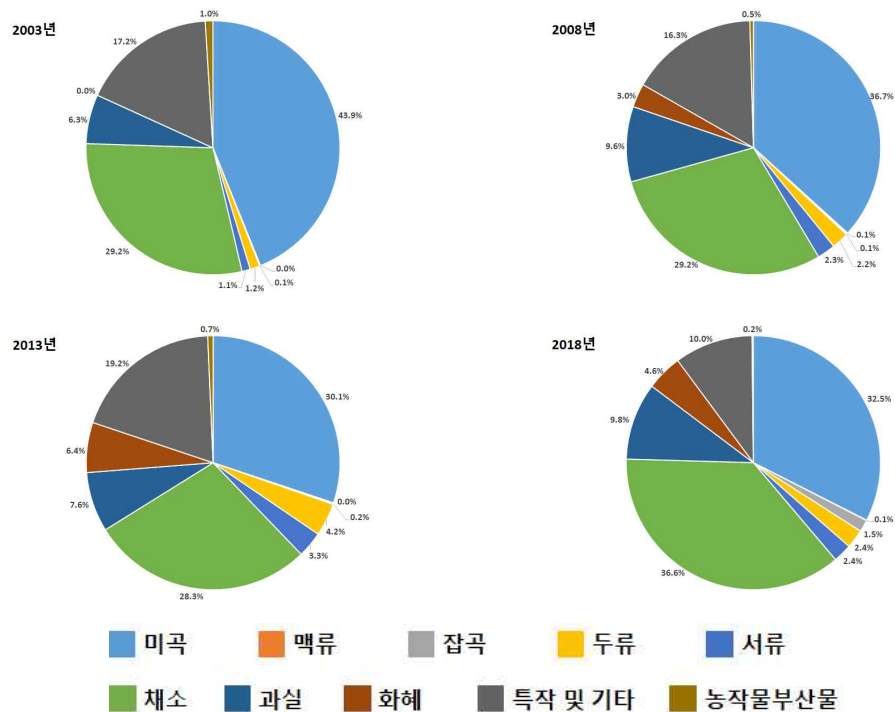
[표 2-12] 충남 농업소득 작목별 비율

구분		2003		2008		2013		2018	
		전체	세부	전체	세부	전체	세부	전체	세부
농업수입	농작물 총 수입	78.5%	100%	62.1%	100%	67.4%	100%	53.1%	100%
	미곡	34.4%	43.9%	22.8%	36.7%	20.3%	30.1%	17.2%	32.5%
	맥류	0.0%	0.0%	0.1%	0.1%	0.0%	0.0%	0.0%	0.1%
	잡곡	0.1%	0.1%	0.1%	0.1%	0.1%	0.2%	0.8%	1.5%
	두류	1.0%	1.2%	1.3%	2.2%	2.8%	4.2%	1.3%	2.4%
	서류	0.8%	1.1%	1.4%	2.3%	2.2%	3.3%	1.3%	2.4%
	채소	22.9%	29.2%	18.2%	29.2%	19.1%	28.3%	19.4%	36.6%
	과실	4.9%	6.3%	6.0%	9.6%	5.1%	7.6%	5.2%	9.8%
	화훼	0.0%	0.0%	1.9%	3.0%	4.3%	6.4%	2.4%	4.6%
	특작 및 기타	13.5%	17.2%	10.1%	16.3%	12.9%	19.2%	5.3%	10.0%
	농작물부산물	0.8%	1.0%	0.3%	0.5%	0.5%	0.7%	0.1%	0.2%
	축산 총 수입	21.4%	100%	34.2%	100%	32.3%	100%	44.8%	100%
	대동물	12.4%	58.1%	26.3%	76.8%	21.6%	66.8%	14.3%	31.9%
	소동물	0.2%	1.1%	4.9%	14.2%	0.9%	2.9%	0.0%	0.1%
	축산물	8.7%	40.7%	3.1%	8.9%	9.8%	30.2%	30.4%	68.0%
	축산물 부산물	0.0%	0.1%	0.0%	0.0%	0.0%	0.1%	0.0%	0.0%
	기타 총 수입	0.1%	100%	3.7%	100%	0.3%	100%	2.1%	100%
	농업피해보상금	0.1%	46.7%	3.5%	94.6%	0.2%	82.2%	2.0%	94.0%
	농업잡수입 기타	0.1%	53.3%	0.2%	5.4%	0.0%	17.8%	0.1%	6.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6) 반려동물로 취급되는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 (출처 : 나무위키)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 분석



[그림 2-7] 충남 농업수입 중 농산물 수입 구조 변화

■ 농업소득의 소득구간을 살펴 본 결과 10백만 원 미만의 소득을 보이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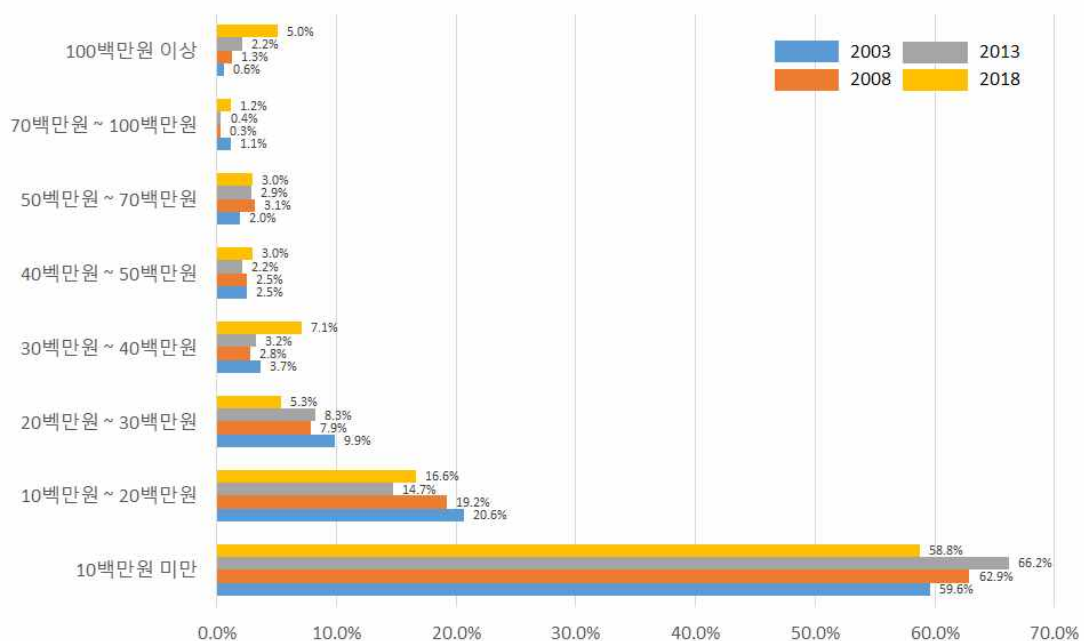
- 10백만 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은 10 ~ 20백만 원 구간으로 소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하는 가구는 적어지고 있음

[표 2-13] 충남 농업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0백만원 미만	211	59.6%	200	62.9%	184	66.2%	198	58.8%
10백만원~20백만원	73	20.6%	61	19.2%	41	14.7%	56	16.6%
20백만원~30백만원	35	9.9%	25	7.9%	23	8.3%	18	5.3%
30백만원~40백만원	13	3.7%	9	2.8%	9	3.2%	24	7.1%
40백만원~50백만원	9	2.5%	8	2.5%	6	2.2%	10	3.0%
50백만원~70백만원	7	2.0%	10	3.1%	8	2.9%	10	3.0%
70백만원~100백만원	4	1.1%	1	0.3%	1	0.4%	4	1.2%
100백만원 이상	2	0.6%	4	1.3%	6	2.2%	17	5.0%
총계	354	100%	318	100%	278	100%	337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10백만 원 미만의 소득구간의 농가 비중은 분석 시점인 4시점 중 전기인 3시점에서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마지막 시점은 2018년에 다소 낮아졌음
 - 하지만, 2018년 역시 58.8%의 농가에서는 10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다소 무리한 상황임
- 20백만 원 이하의 농업소득을 보이고 있는 농가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20백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 비중 : 80.2%
 - 2008년 20백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 비중 : 82.1%
 - 2013년 20백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 비중 : 80.9%
 - 2018년 20백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 비중 : 75.4%
- 30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농가의 비중은 각 구간별 큰 차이는 없는 상황으로 2018년 40 ~ 50백만 원의 비중이 7.1%로 크게 증가하였음
 - 100백만 원 이상 소득 농가도 2003년 0.8%에서 2018년 5.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농업소득은 2013년까지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2018년에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2-8] 충남 농업소득 구간 별 현황

- 보다 현실적인 농업소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평균과 중위값을 비교하였음
- 비교한 결과 2003년 평균값에 중위 값의 비율은 58.8%이었으나 2018년 37.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수가 증가한 반면 하위 농가의 농업소득은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함
- 농가의 중요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이와 같이 평균값에 대한 중위값의 비율 차이로 인해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농업현장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14] 충남 농업소득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평균	11,581	13,465	11,558	17,927
중위값	6,806	6,634	5,436	6,627
평균에 대한 중위값 비율	58.8%	49.3%	47.0%	37.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2) 충남도 겸업소득

- 겸업소득은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겸업으로 구분됨
 - 기타겸업에는 농업서비스,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로 구분될 수 있으며 2018년에는 조사된 수치가 있으나 앞의 세 시점은 조사된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2018년 기타겸업의 소득은 다음과 같음(겸업수입에서 겸업지출 차감)
 - 농업서비스 : 873,875원 - 337,127원 = 536,748원
 - 음식숙박 : 2,204,496원 - 1,437,139원 = 767,357원
 - 도소매 : 6,115,172원 - 5,962,089원 = 153,083원
 - 기타 : 3,206,339원 - 1,205,772원 = 2,000,567원
- 겸업소득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약 5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을 보인 주요 부문은 제조업과 기타겸업으로 농산업의 융복합화를 해당 시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로 사료됨

[표 2-15] 충남 겸업소득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겸업소득		1,928,008	3,445,099	3,207,082	6,401,231
겸업수입	총 수입	5,639,543	6,690,279	5,804,941	19,898,591
	임업 및 어업	145,445	432,183	678,613	931,215
	제조업	225,246	463,327	245,939	6,113,413
	건설업	935,709	1,791,399	882,755	454,080
	기타겸업	4,333,142	4,003,369	3,997,634	12,399,882
겸업지출	총 지출	3,711,535	3,245,180	2,597,941	13,497,360
	임업 및 어업	14,674	32,926	199,645	154,511
	제조업	102,859	211,969	103,535	4,227,252
	건설업	587,880	891,859	147,935	173,469
	기타겸업	3,006,122	2,108,425	2,146,745	8,942,127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겸업소득 내에서 기타겸업의 비율이 가장 큰 상태로 2003년에는 68.8%로 가장 높았고 2018년에는 54.0%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은 2003년 6.3%로 가장 낮은 부문이었음
- 반대로 건설업은 2003년 겸업소득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전체적으로 기타겸업의 비중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매 시점마다 50% 이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조업의 성장세와 건설업의 하향세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음

[표 2-16] 충남 겸업소득 부문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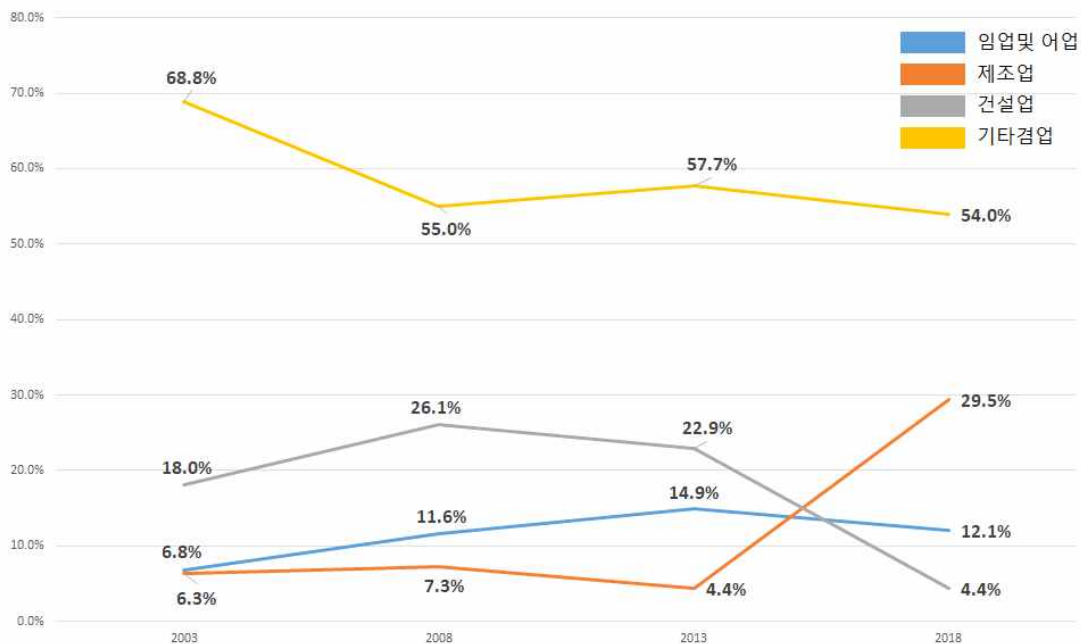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부문별 겸업소득	임업 및 어업	130,771	399,257	478,968	776,704
	제조업	122,387	251,358	142,404	1,886,161
	건설업	347,829	899,540	734,820	280,611
	기타겸업	1,327,020	1,894,944	1,850,889	3,457,755
부문별 겸업소득 비율	임업 및 어업	6.8%	11.6%	14.9%	12.1%
	제조업	6.3%	7.3%	4.4%	29.5%
	건설업	18.0%	26.1%	22.9%	4.4%
	기타겸업	68.8%	55.0%	57.7%	54.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 분석

- 임업 및 어업의 경우 2003년 6.8%에서 2018년 12.1%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크지 않은 상황임
- 앞서 설명한 제조업은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2018년 갑자기 반등하였음



[그림 2-9] 충남 점업소득 구조 변화

- 기타점업 소득에 대하여 세부적인 수치가 공개된 2018년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점업이 포함된 기타가 57.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음
- 다음으로 음식 및 숙박업이 22.2%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서비스가 15.5%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2-17] 2018년 충남 점업소득 중 기타점업 세부 비율

(단위 : 원)

구분	농업서비스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소득액	536,748	767,357	153,083	2,000,567
기타점업소득 내 비율	15.5%	22.2%	4.4%	57.9%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충남 농가의 소득구간별 분포 정도를 확인한 결과 겸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의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백만 원 이상의 농가에는 겸업을 시행하지 않는 농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겸업소득이 '0'원인 농가는 2003년 142농가(40.1%), 2008년 78농가(24.5%), 2013년 83농가(29.9%), 2018년 179농가(53.1%)로 나타남
- 2008년과 2013년에는 겸업을 시행하는 농가가 높게 나타나고 2003년과 2018년에 낮게 나타난 이유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농산업융복합화 전략에 의한 것으로 다량으로 발생하였던 겸업농가가 저소득의 이유로 폐업이 이어지고 고소득의 농가만 겸업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됨

■ 겸업소득이 10백만 원 이상을 보이고 있는 농가는 전체의 10% 정도의 수준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10백만 원 이내의 소득을 보이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10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13.1%로 높게 나타났으나 0 ~ 1백만 원의 농가가 19.9%로 역시나 소득이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2-18] 충남 겸업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0원	142	40.1%	78	24.5%	83	29.9%	179	53.1%
0원~1백만원	135	38.1%	151	47.5%	113	40.6%	67	19.9%
1백만원~2백만원	12	3.4%	24	7.5%	17	6.1%	12	3.6%
2백만원~3백만원	8	2.3%	11	3.5%	11	4.0%	6	1.8%
3백만원~4백만원	9	2.5%	7	2.2%	3	1.1%	3	0.9%
4백만원~5백만원	4	1.1%	8	2.5%	4	1.4%	6	1.8%
5백만원~7백만원	6	1.7%	7	2.2%	11	4.0%	9	2.7%
7백만원~10백만원	12	3.4%	6	1.9%	14	5.0%	11	3.3%
10백만원 이상	26	7.3%	26	8.2%	22	7.9%	44	13.1%
총계	354	100%	318	100%	278	100%	337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3) 충남도 사업 외 소득

- 사업 외 소득은 근로수입 및 자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수입은 농업 외의 근로를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과 함께 농업을 통해 얻어지는 농업노임에 대한 소득으로 구분되며 2003년 보다 2018년 1.6백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본수입은 농지임대와 기타 자본수입으로 구분되며 기타 자본소득에는 이자소득을 비롯한 임대 소득 등으로 구분됨
 - 자본수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임
- 전체 사업 외 소득의 증가는 근로수입의 증가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근로수입의 증가분과 사업 외 소득 증가분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
- 사업 외 지출의 경우 농외취업비용과 자본수입 관련 비용이 포함되나 수입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을 보임

[표 2-19] 충남 사업 외 소득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사업 외 소득		7,548,019	9,301,826	8,401,557	9,248,288
사업 외 수입	총 수입	7,605,162	9,360,943	8,505,662	9,340,479
	근로수입	6,671,296	7,985,274	7,235,585	8,210,536
	급료수입	6,240,074	7,608,493	6,769,559	7,980,803
	농업노임	450,622	376,781	466,026	229,733
	자본수입	913,866	1,375,669	1,270,077	1,129,943
	농지임대 수입	156,320	201,949	293,014	305,454
	기타 자본수입	758,247	1,173,721	977,063	824,489
사업 외 지출	총 지출	57,143	59,117	104,105	92,192
	농외취업비용	16,663	15,509	13,932	59,837
	자본수입 관련 비용	40,480	43,609	90,173	32,355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부문별 사업 외 소득의 비중을 확인한 결과 근로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근로수입 중에서도 급료수입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노임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8년에는 전체 수입의 2.5%, 근로수입의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자본수입은 전체 사업 외 수입의 12 ~ 14%를 차지하고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
 - 특히 농지임대 수입은 전체의 3% 수준으로 미미한 상태라 할 수 있음

[표 2-20] 충남 사업 외 소득 부문별 비율

구분		2003		2008		2013		2018	
		전체	세부	전체	세부	전체	세부	전체	세부
사업 외 수입	근로수입	87.7%	100%	85.3%	100%	85.1%	100%	87.9%	100%
	급료수입	82.1%	93.5%	81.3%	95.3%	79.6%	93.6%	85.4%	97.2%
	농업노임	5.9%	6.8%	4.0%	4.7%	5.5%	6.4%	2.5%	2.8%
	자본수입	12.0%	100%	12.0%	100%	14.9%	100%	12.1%	100%
	농지임대 수입	2.1%	17.1%	2.1%	14.7%	3.4%	23.1%	3.3%	27.0%
	기타 자본수입	9.97%	83.0%	10.0%	85.3%	11.5%	76.9%	8.8%	73.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사업 외 소득의 구간 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사업 외 소득이 없는 가구가 2003년 9.6%로 나타났다
 - 사업 외 소득이 0원을 포함한 5백만 원 미만인 가구는 2003년 60.5%, 2008년 59.7%, 2013년 62.6%, 2018년 65.6%로 대다수의 농가에서 적은 사업 외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이 0 ~ 5백만 원 미만으로 2018년 50%를 넘지 못하였으나 매 시점마다 50 ~ 60%의 가구들이 해당되었음
- 0 ~ 5백만 원의 구간에 포함된 가구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표 2-21] 충남 사업 외 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0원	34	9.6%	14	4.4%	8	2.9%	53	15.7%
0원~5백만원 미만	180	50.8%	176	55.3%	166	59.7%	168	49.9%
5백만원~10백만원	46	13.0%	31	9.7%	32	11.5%	24	7.1%
10백만원~15백만원	29	8.2%	26	8.2%	16	5.8%	17	5.0%
15백만원~20백만원	21	5.9%	21	6.6%	12	4.3%	18	5.3%
20백만원~25백만원	7	2.0%	11	3.5%	10	3.6%	12	3.6%
25백만원~30백만원	13	3.7%	9	2.8%	12	4.3%	5	1.5%
30백만원~50백만원	20	5.6%	22	6.9%	18	6.5%	27	8.0%
50백만원 이상	5	1.4%	8	2.5%	4	1.4%	13	3.9%
총계	354	100%	318	100%	278	100%	337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사업 외 소득에 대한 평균값과 중위 값을 비교한 결과 중위값이 평균값에 못 미치는 상황임

- 2018년의 경우 평균값은 9백만 원 수준으로 2003년에 비해 22.5%가 증가하였으나 중위값은 45.7%가 감소하였음

■ 2003년 사업 외 소득의 중위값은 2.7백만 원 수준으로 평균값의 36.3%의 비율을 보임

- 중위값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8년 16.1%까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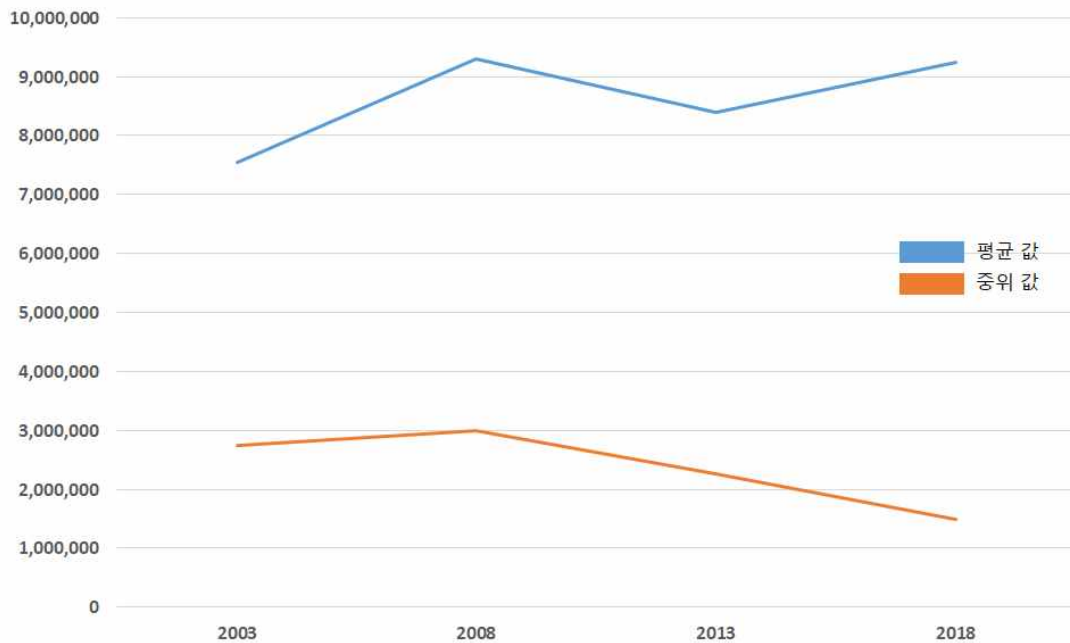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결과로 사업 외 소득은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평균값 이하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표 2-22] 충남 사업 외 소득 평균 및 중위 값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평균	7,548	9,301	8,402	9,248
중위값	2,736	2,992	2,265	1,485
평균에 대한 중위값 비율	36.3%	32.2%	27.0%	16.1%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그림 2-10] 충남 사업 외 소득의 평균 값 및 중위 값

(4) 충남도 이전소득

■ 이전소득은 공적보조와 사적보조로 구분됨

- 공적보조에는 농업보조금과 기타공적보조금이 해당되며 사적보조에는 출타가족, 친인척, 사기업 등이 포함됨

■ 이전소득은 매 시점마다 증가하여 2003년 1.9백만 원 수준에서 2018년 9.6백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이전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공적보조로 이루어졌으며 사적보조의 경우 2번째 분석 시점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외 시점에서는 감소하였음

■ 농가소득의 증가는 이전소득의 큰 증가로 인하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23] 충남 이전소득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이전소득		1,944,770	5,527,011	5,843,000	9,663,863
이전소득	공적보조	1,430,889	3,626,162	5,486,643	9,164,633
	농업보조금	482,837	1,256,550	1,529,501	2,430,529
	기타공적보조금	948,052	2,369,612	3,957,501	6,734,105
	사적보조	513,882	1,900,849	356,356	499,23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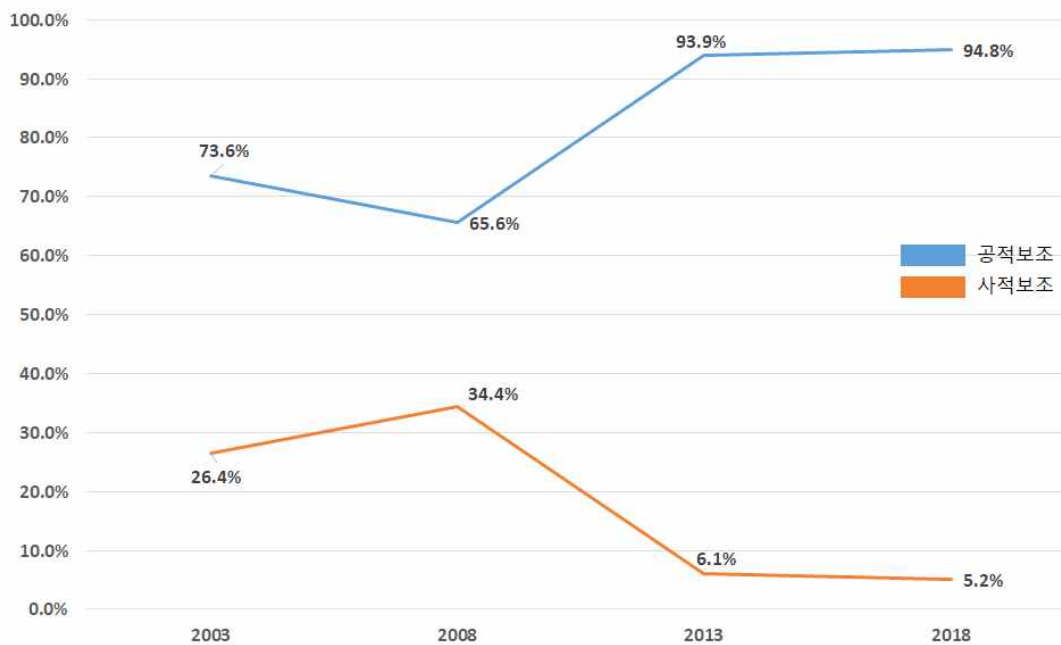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 분석

- 전체 이전소득액에 대한 부분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공적보조가 사적보조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보조 내에서도 농업보조도 큰 부분을 차지하나 기타공적보조의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사적보조의 비율은 2003년 26.4%에서 2018년 5.2%까지 하락하였음

[표 2-24] 충남 이전소득 부문별 비율

구분		2003		2008		2013		2018	
		전체	세부	전체	세부	전체	세부	전체	세부
이전소득	공적보조	73.6%	100%	65.6%	100%	93.9%	100%	94.8%	100%
	농업보조금	24.8%	33.7%	22.7%	34.7%	26.2%	27.9%	25.2%	26.5%
	기타공적보조금	48.7%	66.3%	42.9%	65.3%	67.7%	72.1%	69.7%	73.5%
	사적보조	26.4%	—	34.4%	—	6.1%	—	5.2%	—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그림 2-11] 충남 이전소득 구성 비율 변화

- 구간별 소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3년에는 1백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비중이 52.8%이었으나 2018년 6.5%로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전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 역시 2003년 27가구에서 2008년 4가구, 2013년 8가구, 2018년 3가구로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 2003년의 경우 최하 소득구간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전소득의 비중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부터는 균등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음

- 2018년에는 오히려 최상위 소득구간인 10백만 원 이상의 가구 비중이 30.9%로 나타나고 최하위 1백만 원이 6.5%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임
- 2008년과 2013년의 각 소득구간별 농가의 비중은 가장 균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 최하 소득구간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
- 2018년에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비중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임

■ 이전소득은 농업소득, 사업 이 소득 등의 타 소득등과 달리 소득의 불균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타 소득의 경우 최저 소득에 가까울수록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전소득은 그와 달리 2018년에는 역전의 상황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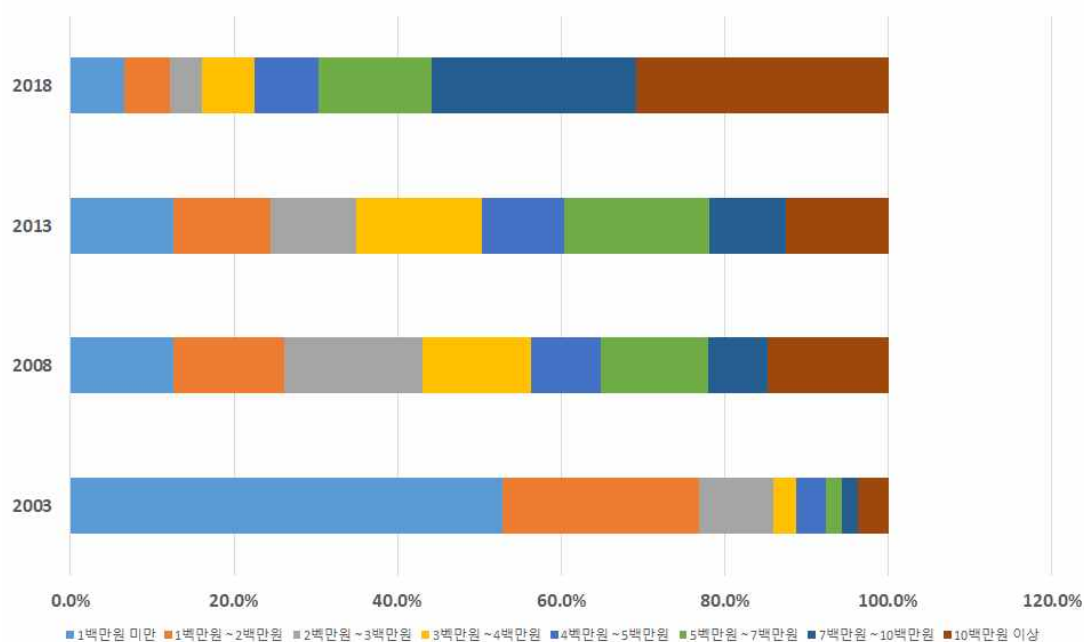
■ 농가마다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이전소득이 결과는 다른 소득의 저소득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음

- 타 소득의 경우 저소득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전소득은 각 소득구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균등하다 할 수 있음

[표 2-25] 충남 이전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백만원 미만	187	52.8%	40	12.6%	35	12.6%	22	6.5%
1백만원~2백만원	85	24.0%	43	13.5%	33	11.9%	19	5.6%
2백만원~3백만원	32	9.0%	54	17.0%	29	10.4%	13	3.9%
3백만원~4백만원	10	2.8%	42	13.2%	43	15.5%	22	6.5%
4백만원~5백만원	13	3.7%	27	8.5%	28	10.1%	26	7.7%
5백만원~7백만원	7	2.0%	42	13.2%	49	17.6%	47	13.9%
7백만원~10백만원	7	2.0%	23	7.2%	26	9.4%	84	24.9%
10백만원 이상	13	3.7%	47	14.8%	35	12.6%	104	30.9%
총계	354	100%	318	100%	278	100%	337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그림 2-12] 충남 이전소득 소득구간별 비율 변화

- 이전소득의 평균과 중위 값을 비교한 결과 중위 값이 평균값에 거의 근접하지 못하고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부 가구의 이전소득의 규모가 타 가구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함
 - 하지만, 중위값의 비율이 2003년 46.3%에서 2018년 79.4%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이전소득 부분의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함
- 금전적으로 이전소득은 2003년 1.9백만 원에서 2018년 9.7백만 원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음
 - 단순 비율면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증가하여 농가의 소득부분의 큰 축으로 성장하였음

[표 2-26] 충남 이전소득 평균 및 중위 값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평균	1,945	5,527	5,843	9,664
중위값	901	3,356	3,985	7,674
평균에 대한 중위 값 비율	46.3%	60.7%	68.2%	79.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5) 충남도 비경상소득

- 비경상소득은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기타로 구성되어 2003년과 2008년은 조사된 결과가 있으나 2013년과 2018년에는 세부적인 조사 값이 없음
 - 비경상소득은 비정기적 소득으로 자산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얻어진 일시적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됨
- 비경상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3년에 비해 2018년 약 2.5백만 원이 감소하였음
- 2008년까지는 비경상소득 중 기타를 제외하고 경조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는 데이터의 부재로 확인할 수 없음

[표 2-27] 충남 농업소득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비경상소득		5,588,912	5,027,011	3,492,914	2,946,049
비경상소득	경조수입	1,530,949	1,303,129	—	—
	퇴직일시금	311,676	36,551		
	재산수증	228,176	813,514		
	사고보상금	253,708	79,771		
	기타	3,264,404	2,787,513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비경상소득의 구간 별 가구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최하 구간인 1백만 원의 비중이 2003년 30.2%에서 2018년 54.3%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최상위 구간인 10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인 가구는 2003년 14.7%에서 2018년 3.9%로 대폭 감소하였음
- 비교대상이 된 모든 시점에서 2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는 가구가 전체의 40 ~ 70%대를 보이고 있음
 - 2003년과 2008년에는 40%대를 보였으나 2013년과 2018년은 50%를 넘겼으며 특히, 2018년에는 77.4%가 이 구간에 해당하였음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 분석

- 전체적으로 비경상소득은 농가소득 내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가소득 내의 중요도 역시 감소하고 있음

[표 2-28] 충남 비경상소득 구간 별 가구 현황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백만원 미만	107	30.2%	81	25.5%	113	40.6%	183	54.3%
1백만원~2백만원	50	14.1%	57	17.9%	52	18.7%	78	23.1%
2백만원~3백만원	56	15.8%	53	16.7%	31	11.2%	24	7.1%
3백만원~4백만원	26	7.3%	31	9.7%	27	9.7%	20	5.9%
4백만원~5백만원	24	6.8%	19	6.0%	9	3.2%	8	2.4%
5백만원~7백만원	24	6.8%	27	8.5%	14	5.0%	7	2.1%
7백만원~10백만원	15	4.2%	14	4.4%	8	2.9%	4	1.2%
10백만원 이상	52	14.7%	36	11.3%	24	8.6%	13	3.9%
총계	354	100%	318	100%	278	100%	337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평균과 중위 값을 비교한 결과 평균에 대한 중위 값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비율이 45.9%로 좁혀졌으나 2018년에는 27.5%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격차가 커졌음
- 비경상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균에 대한 중위 값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비경상소득의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비경상소득이 농가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표 2-29] 충남 비경상소득 평균 및 중위 값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평균	5,589	5,027	3,493	2,946
중위값	2,327	2,307	1,437	811
평균에 대한 중위값 비율	41.6%	45.9%	41.2%	27.5%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3. 농가소득 분석 소결

1) 전국 농가소득 분석결과

■ 농가소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은 농업소득

- 2013년을 제외하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항상 30% 이상을 유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농업소득의 경우 농산물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이라 할 수 없음

■ 농업소득과 사업 외 소득이 농가소득의 60% 가량 차지

- 농업소득과 사업 외 소득의 총 점유율이 2013년 65.8%, 2008년 59.3%, 2013년 62.5%, 2018년 58.2%로 매년 6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 증가

-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중 겸업소득과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감소하였으나 겸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하였음
- 하지만 겸업소득의 비율은 2018년 12.8%로 크지 않았고 이전소득은 2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지규모가 적을수록 사업 외 소득,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 비중 증가

- 경지규모에 따라 소득이 적을수록 대체 소득원으로 사업 외 소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지규모가 큰 중대형농가의 경우 농업을 통해 대부분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가계소득 기준 농가수준은 79.8% 정도

-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에 농가소득은 79.8%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비교 시점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미진한 수준임

■ 농가소득 고지역(경기, 제주, 전북), 중간지역(충남, 충북, 경북), 저지역(강원, 전남, 경남)으로 분류

- 수도권 지역인 경기와 골과 같은 소득이 보장되는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제주, 대규모 평야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에서는 농가소득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그 외 충남, 충북, 경북의 경우 평균소득보다 높은 시점이 있었으며 낮은 시

점도 있어 확실한 농가소득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음

- 그 외 지역의 경우 매 시점별 농가소득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충남 농가소득 분석결과

■ 증감을 반복하는 농업소득, 하락하는 사업 외 소득 및 비경상소득, 증가하는 이전소득 및 겸업소득

- 충남도 역시 전국의 농가소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소득과 겸업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 하지만, 전국의 경우 2018년까지 이전소득은 3 ~ 4번째 수준을 머무르고 있었으나 충남의 경우 2018년 이전소득이 사업 외 소득을 역전하여 농업소득 다음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음
- 즉, 충남의 농가는 사업 외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전소득이 사업 외 소득 감소분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농작물 수입이 농업수입의 53.1%, 축산물 수입이 44.8%

- 충남의 농업소득을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농업수입은 농작물 수입과 축산물 수입, 기타수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축산물 수입이 44.8%를 기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축산물 수입은 2003년 농업수입의 21.4%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작물 수입의 증가율인 -25.4%를 고려할 때 체감적 증가분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축산업을 시행하지 않는 농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

■ 2018년 농업소득 농작물 수입 중 미곡, 채소를 통한 소득이 69.1%

- 농작물을 통한 수입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러 작물 중 미곡과 채소의 비중이 절대적임
- 특히 미곡의 경우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 농작물 수입 중 30 ~ 4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채소의 성장이 큰 편으로 2003년 전체 농작물 중 29.2%의 비율에서 2018년 36.6%로 증가하였음
- 충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작물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경우 미곡과 채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다 많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특작, 과

실, 화훼 등으로 다품종화 시키지 못하고 소품종 생산을 유지하고 있음

■ 모든 소득에서 평균값에 못 미치는 중위값

- 모든 소득면에서 중위값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겸업소득의 경우 수치가 작아 비교에서 제외하였음
- 70%를 넘기는 소득부문은 농가소득과 이전소득이 전부이며 가장 심한 편차를 보이는 소득은 사업 외 소득임
- 이와 같은 평균과 중위 값의 차이는 많은 농가의 소득과 평균과는 괴리가 있는 것을 의미함
- 모든 부문에서 시점이 지날수록 평균과 중위 값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으나 이전 소득의 경우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0] 충남 농가소득 및 세부항목의 평균 및 중위 값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8	2013	2018
농가소득	평균	28,591	36,759	32,503	46,187
	중위 값	22,876	27,728	26,122	33,418
	평균에 대한 중위 값 비율	80.0%	75.4%	80.4%	72.4%
농업소득	평균	11,581	13,465	11,558	17,927
	중위 값	6,806	6,634	5,436	6,627
	평균에 대한 중위 값 비율	58.8%	49.3%	47.0%	37.0%
사업 외 소득	평균	7,548	9,302	8,402	9,248
	중위 값	2,736	2,992	2,265	1,485
	평균에 대한 중위 값 비율	36.3%	32.2%	27.0%	16.1%
이전소득	평균	1,945	5,527	5,843	9,664
	중위 값	901	3,356	3,985	7,674
	평균에 대한 중위 값 비율	46.3%	60.7%	68.2%	79.4%
비경상 소득	평균	5,589	5,027	3,493	2,946
	중위 값	2,327	2,307	1,437	811
	평균에 대한 중위 값 비율	41.6%	45.9%	41.2%	27.5%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 모든 소득에서 저소득층이 절대적 비중

- 평균과 중위 값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결과 값과 각 소득부문별 소득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다수의 농가에서 평균치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각 부문별 고소득을 올리는 가구와 저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차이가 큰 상태로 농가 내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음

제2절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1. 전국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1) 농업경영체 현황

(1) 농업경영체 전체 현황

■ 2018년 현재 전국의 농업경영체는 총 1,658,627개로 조사되었으며 최초 통계자료가 제시된 2015년 1,589,795개보다 68,832개 늘어나 4.3%의 증가세를 보였음

■ 가장 많은 경영체는 경상북도였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에서 가장 적은 경영체가 등록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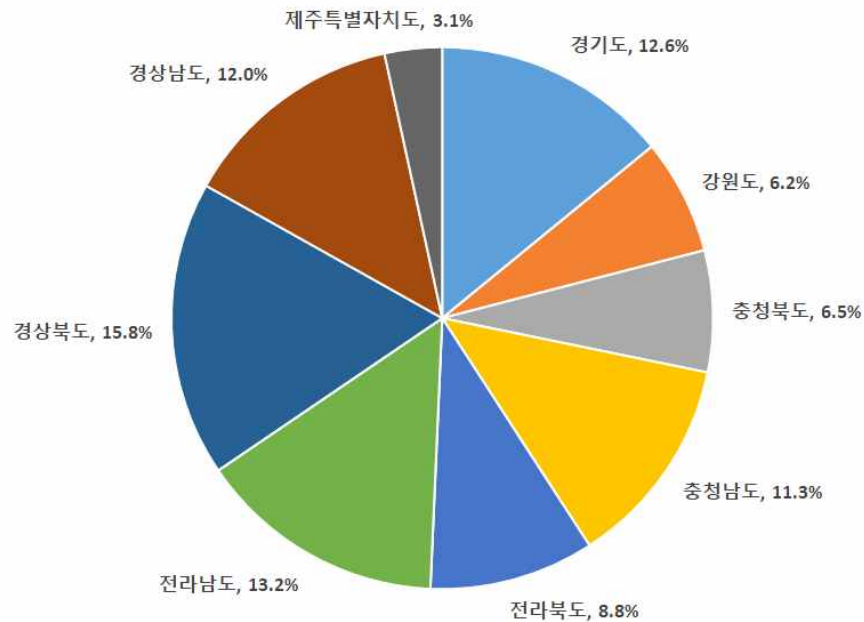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적은 경영체를 보인 지역은 강원도로 경상북도와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2-31] 전국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시도	2015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14,443	0.9%	16,022	1.0%	17,078	1.0%	18,336	1.1%
부산광역시	17,465	1.1%	17,974	1.1%	18,431	1.1%	18,932	1.1%
대구광역시	30,172	1.9%	31,372	1.9%	32,733	2.0%	33,928	2.0%
인천광역시	21,880	1.4%	22,273	1.4%	22,617	1.4%	22,713	1.4%
광주광역시	22,794	1.4%	23,669	1.5%	24,302	1.5%	24,992	1.5%
대전광역시	19,793	1.2%	20,311	1.3%	21,113	1.3%	21,682	1.3%
울산광역시	22,975	1.4%	23,708	1.5%	24,166	1.5%	24,518	1.5%
세종특별자치시	9,712	0.6%	10,069	0.6%	10,614	0.6%	11,180	0.7%
경기도	203,440	12.8%	207,206	12.8%	209,265	12.7%	208,775	12.6%
강원도	98,866	6.2%	100,311	6.2%	102,072	6.2%	102,019	6.2%
충청북도	103,223	6.5%	105,444	6.5%	106,913	6.5%	107,422	6.5%
충청남도	182,357	11.5%	184,184	11.4%	186,342	11.3%	187,312	11.3%
전라북도	14,117	8.9%	143,007	8.8%	145,328	8.8%	145,984	8.8%
전라남도	213,446	13.4%	215,407	13.3%	217,290	13.2%	219,465	13.2%
경상북도	249,744	15.7%	254,390	15.7%	258,869	15.7%	261,312	15.8%
경상남도	191,544	12.0%	194,762	12.0%	198,122	12.0%	199,249	12.0%
제주특별자치도	46,824	2.9%	48,245	3.0%	49,644	3.0%	50,808	3.1%
총 계	1,589,795	100%	1,618,354	100%	1,644,899	100%	1,658,627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9개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농업경영체의 전체 경영체에 대한 비중은 매년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그림 2-13] 2018년 전국 시도별 농업경영체 비중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와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현황을 비교하였음
-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자료로 도시나 농촌지역의 거주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 행위를 시행하는 농업인이 등록한 농업경영체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인 차이는 2015년 501,277의 차이를 보였으나 격차는 점차 벌어져 2018년 현재 637,789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모든 시도에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1만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와 농가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가 84,927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특별시 및 광역시 보다 그 외 시도지역이 큰 편임

[표 2-32] 전국 농업경영체 및 농가 현황 및 차이

시도	2015		2016		2017		2018	
	농업 경영체	통계청	농업 경영체	통계청	농업 경영체	통계청	농업 경영체	통계청
서울특별시	14,443	3,911	16,022	3,550	17,078	3,410	18,336	3,130
차이	10,532		12,472		13,668		15,206	
부산광역시	17,465	8,068	17,974	8,159	18,431	7,716	18,932	7,487
차이	9,397		9,815		10,715		11,445	
대구광역시	30,172	16,571	31,372	16,750	32,733	16,554	33,928	15,833
차이	13,601		14,622		16,179		18,095	
인천광역시	21,880	13,081	22,273	12,347	22,617	11,962	22,713	11,440
차이	8,799		9,926		10,655		11,273	
광주광역시	22,794	12,036	23,669	12,126	24,302	10,940	24,992	10,380
차이	10,758		11,543		13,362		14,612	
대전광역시	19,793	9,428	20,311	9,398	21,113	9,127	21,682	8,852
차이	10,365		10,913		11,986		12,830	
울산광역시	22,975	12,385	23,708	12,451	24,166	12,070	24,518	11,772
차이	10,590		11,257		12,096		12,746	
세종특별자치시	9,712	6,571	10,069	6,304	10,614	5,918	11,180	5,789
차이	3,141		3,765		4,696		5,391	
경기도	203,440	126,679	207,206	120,317	209,265	117,225	208,775	113,288
차이	76,761		86,889		92,040		95,487	
강원도	98,866	73,082	100,311	72,624	102,072	68,750	102,019	67,809
차이	25,784		27,687		33,322		34,210	
충청북도	103,223	74,611	105,444	74,292	106,913	72,811	107,422	70,874
차이	28,612		31,152		34,102		36,548	
충청남도	182,357	132,008	184,184	128,275	186,342	125,886	187,312	123,480
차이	50,349		55,909		60,456		63,832	
전라북도	141,117	100,362	143,007	98,930	145,328	96,780	145,984	94,935
차이	40,755		44,077		48,548		51,049	
전라남도	213,446	150,141	215,407	151,059	217,290	146,481	219,465	145,223
차이	63,305		64,348		70,809		74,242	
경상북도	249,744	184,642	254,390	181,067	258,869	179,321	261,312	176,385
차이	65,102		73,323		79,548		84,927	
경상남도	191,544	131,455	194,762	127,515	198,122	124,865	199,249	122,953
차이	60,089		67,247		73,257		76,296	
제주특별자치도	46,824	33,487	48,245	33,109	49,644	32,200	50,808	31,208
차이	13,337		15,136		17,444		19,600	
총 계	1,589,795	1,088,518	1,618,354	1,088,274	1,644,899	1,042,017	1,658,627	1,020,838
차이	501,277		550,080		602,882		637,78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통계청

(2) 농업경영체 변화 추이

■ 농업경영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5 ~ 2016년 사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2017년과 2018년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각 490, 53개의 경영체가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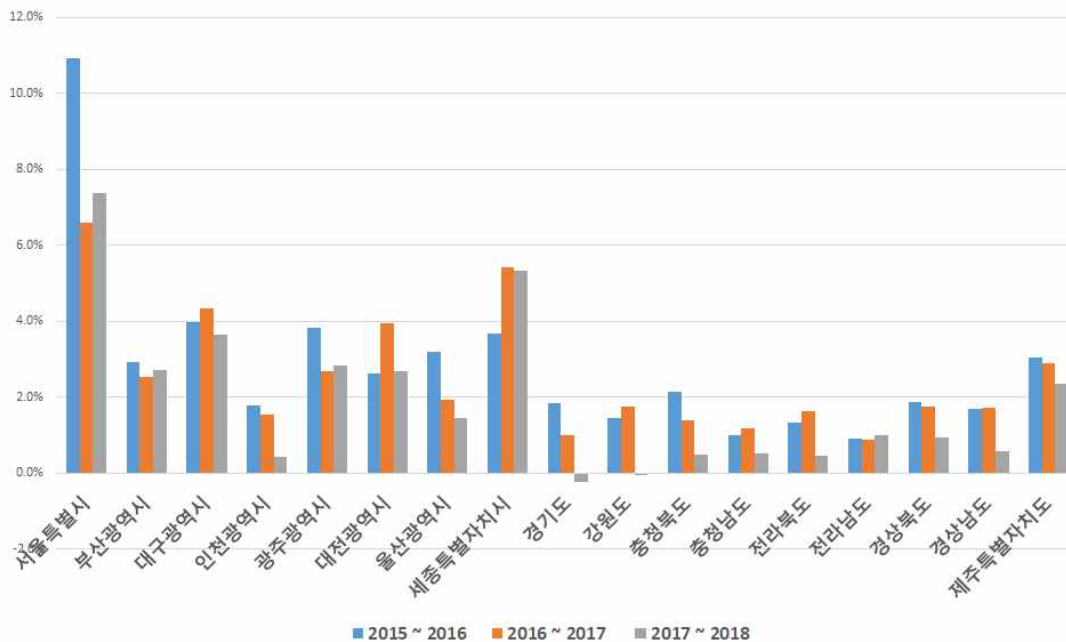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27.0%의 농업경영체가 증가하였음

- 4년간의 변화를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거의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주요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시도 지역은 증가세가 크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5%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절대적인 농가의 수는 적지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움직임이 절대적인 농가의 수가 많은 시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33] 전국 농업경영체 변화

시도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5~2018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서울특별시	1,579	10.9%	1,056	6.6%	1,258	7.4%	3,893	27.0%
부산광역시	509	2.9%	457	2.5%	501	2.7%	1,467	8.4%
대구광역시	1,200	4.0%	1,361	4.3%	1,195	3.7%	3,756	12.4%
인천광역시	393	1.8%	344	1.5%	96	0.4%	833	3.8%
광주광역시	875	3.8%	633	2.7%	690	2.8%	2,198	9.6%
대전광역시	518	2.6%	802	3.9%	569	2.7%	1,889	9.5%
울산광역시	733	3.2%	458	1.9%	352	1.5%	1,543	6.7%
세종특별자치시	357	3.7%	545	5.4%	566	5.3%	1,468	15.1%
경기도	3,766	1.9%	2,059	1.0%	-490	-0.2%	5,335	2.6%
강원도	1,445	1.5%	1,761	1.8%	-53	-0.1%	3,153	3.2%
충청북도	2,221	2.2%	1,469	1.4%	509	0.5%	4,199	4.1%
충청남도	1,827	1.0%	2,158	1.2%	970	0.5%	4,955	2.7%
전라북도	1,890	1.3%	2,321	1.6%	656	0.5%	4,867	3.4%
전라남도	1,961	0.9%	1,883	0.9%	2,175	1.0%	6,019	2.8%
경상북도	4,646	1.9%	4,479	1.8%	2,443	0.9%	11,568	4.6%
경상남도	3,218	1.7%	3,360	1.7%	1,127	0.6%	7,705	4.0%
제주특별자치도	1,421	3.0%	1,399	2.9%	1,164	2.3%	3,984	8.5%
총 계	28,559	1.8%	26,545	1.6%	13,728	0.8%	68,832	4.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그림 2-14] 전국 농업경영체 변화

2) 농업인 현황

(1) 농업인 전체 현황

- 2018년 현재 등록된 농업인은 2,442,966명으로 2015년의 농업인 2,582,915명에 비해 139,949명 감소하였음
- 가장 많은 농업인이 등록된 곳은 경상북도로 2015년에는 전체의 16.1%의 비율을 보였으며 매년 그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반대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체의 1%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1%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8개도의 경우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매년 6.5% 수준을 유지하여 8개도에서 적은 농업인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34] 전국 농업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19,801	0.8%	20,261	0.8%	20,905	0.8%	21,796	0.9%
부산광역시	26,747	1.0%	25,627	1.0%	25,469	1.0%	25,666	1.1%
대구광역시	49,234	1.9%	48,509	1.9%	48,540	2.0%	49,319	2.0%
인천광역시	35,965	1.4%	35,149	1.4%	33,665	1.4%	32,690	1.3%
광주광역시	33,195	1.3%	32,733	1.3%	32,456	1.3%	32,758	1.3%
대전광역시	30,535	1.2%	29,865	1.2%	29,528	1.2%	29,347	1.2%
울산광역시	39,527	1.5%	37,778	1.5%	36,188	1.5%	35,858	1.5%
세종특별자치시	16,378	0.6%	16,249	0.6%	16,062	0.7%	16,584	0.7%
경기도	314,582	12.2%	310,807	12.2%	300,993	12.2%	294,401	12.1%
강원도	167,295	6.5%	161,158	6.3%	156,038	6.3%	152,558	6.2%
충청북도	168,796	6.5%	165,891	6.5%	160,500	6.5%	158,962	6.5%
충청남도	301,324	11.7%	296,724	11.7%	284,791	11.5%	282,152	11.5%
전라북도	233,832	9.1%	230,874	9.1%	221,414	9.0%	218,918	9.0%
전라남도	344,239	13.3%	339,610	13.3%	326,041	13.2%	323,967	13.3%
경상북도	414,976	16.1%	411,835	16.2%	399,968	16.2%	397,962	16.3%
경상남도	311,508	12.1%	307,032	12.1%	298,523	12.1%	294,619	12.1%
제주특별자치도	74,981	2.9%	75,423	3.0%	74,816	3.0%	75,409	3.1%
총 계	2,582,915	100%	2,545,525	100%	2,465,897	100%	2,442,966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 연령별 농업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2015년 52.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54.0%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은 2015년 47.4%였으나 2018년 46.0%로 다소 감소하였음

[표 2-35] 농업인 성별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성	1,357,633	52.6%	1,350,216	53.0%	1,325,598	53.8%	1,320,254	54.0%
여성	1,224,379	47.4%	1,195,309	47.0%	1,140,299	46.2%	1,122,712	46.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 연령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30세 이하의 경우 채 1%의 비율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 30 ~ 65세는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로 50%를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음
 - 50% 이상의 가장 많은 농업인에 해당하나 매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65세 이상은 50% 이하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40%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44.0%의 비율에서 출발하여 2018년 49.0%를 차지하여 점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65세 이하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나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농업인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표 2-36] 농업인 연령별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30세 이하		30~65세		65세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5	16,569	0.6%	1,429,918	55.4%	1,135,525	44.0%
2016	14,226	0.6%	1,381,815	54.3%	1,149,484	45.2%
2017	11,956	0.5%	1,273,094	51.6%	1,180,847	47.9%
2018	11,790	0.5%	1,233,337	50.5%	1,197,839	49.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2) 농업인 변화 추이

- 전국 농업인은 매년 감소 추세로 2015년에 비해 2018년 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139,949명의 농업인이 감소하여 258만명 수준의 농업인이 244만 명대로 감소하였음
- 일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농업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뉘었으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곳은 변화율이 미미한 상태임
 - 서울특별시의 경우 10.1%의 큰 증가를 보였으며 농업인이 증가한 대구광역시, 세

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0.2%, 1.3%, 0.6%의 증가하였음

■ 대표 농업지역이라 할 수 있는 8개도의 경우 감소폭이 5%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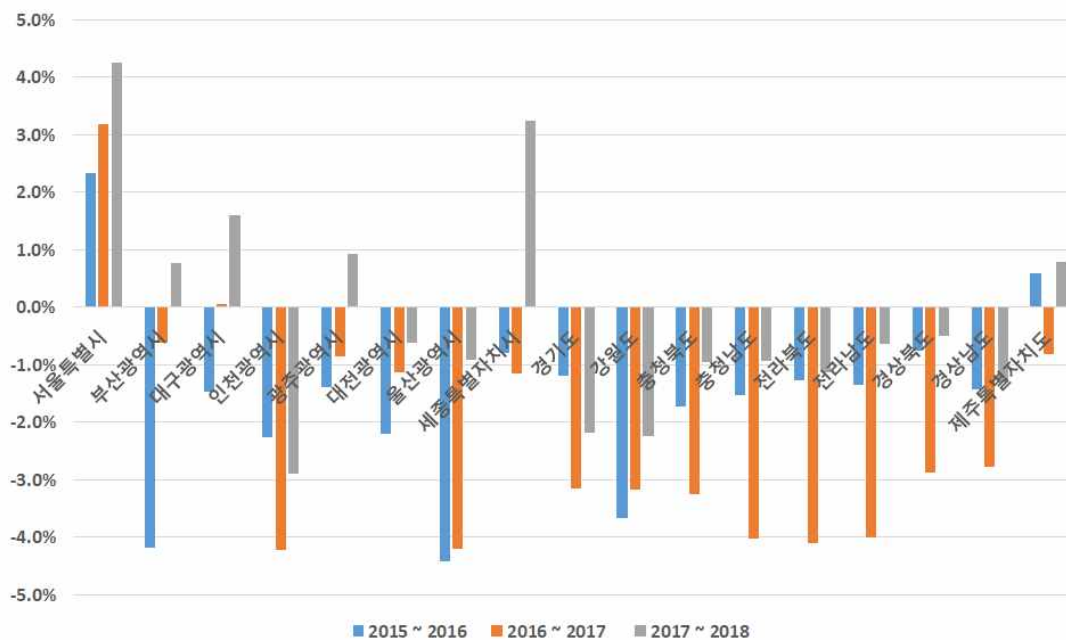
-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지역은 강원도로 4년 사이 8.8%의 농업인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경기도, 충청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표 2-37】 전국 농업인 변화

(단위 : 명)

시도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5~2018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서울특별시	460	2.3%	644	3.2%	891	4.3%	1,995	10.1%
부산광역시	-1,120	-4.2%	-158	-0.6%	197	0.8%	-1,081	-4.0%
대구광역시	-725	-1.5%	31	0.1%	779	1.6%	85	0.2%
인천광역시	-816	-2.3%	-1,484	-4.2%	-975	-2.9%	-3,275	-9.1%
광주광역시	-462	-1.4%	-277	-0.8%	302	0.9%	-437	-1.3%
대전광역시	-670	-2.2%	-337	-1.1%	-181	-0.6%	-1,188	-3.9%
울산광역시	-1,749	-4.4%	-1,590	-4.2%	-330	-0.9%	-3,669	-9.3%
세종특별자치시	-129	-0.8%	-187	-1.2%	522	3.2%	206	1.3%
경기도	-3,775	-1.2%	-9,814	-3.2%	-6,592	-2.2%	-20,181	-6.4%
강원도	-6,137	-3.7%	-5,120	-3.2%	-3,480	-2.2%	-14,737	-8.8%
충청북도	-2,905	-1.7%	-5,391	-3.2%	-1,538	-1.0%	-9,834	-5.8%
충청남도	-4,600	-1.5%	-11,933	-4.0%	-2,639	-0.9%	-19,172	-6.4%
전라북도	-2,958	-1.3%	-9,460	-4.1%	-2,496	-1.1%	-14,914	-6.4%
전라남도	-4,629	-1.3%	-13,569	-4.0%	-2,074	-0.6%	-20,272	-5.9%
경상북도	-3,141	-0.8%	-11,867	-2.9%	-2,006	-0.5%	-17,014	-4.1%
경상남도	-4,476	-1.4%	-8,509	-2.8%	-3,904	-1.3%	-16,889	-5.4%
제주특별자치도	442	0.6%	-607	-0.8%	593	0.8%	428	0.6%
총 계	-37,390	-1.4%	-79,628	-3.1%	-22,931	-0.9%	-139,949	-5.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그림 2-15] 전국 농업인 변화

2. 충남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1) 충남 농업경영체 현황

(1) 충남 농업경영체 전체 현황

- 2018년 기준 충남 시군의 농업경영체는 천안시에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서산시, 당진시 순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천안시 다음으로 당진시가 많았으나 2018년 역전되어 서산시가 두 번째로 많은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적은 농업경영체는 계룡시로 0.5 ~ 0.6%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음으로 청양군, 서천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5% 이하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충남도의 농업경영체는 고른 분포를 하고 있음
 - 모든 시군의 경영체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 상황으로 한곳에 편중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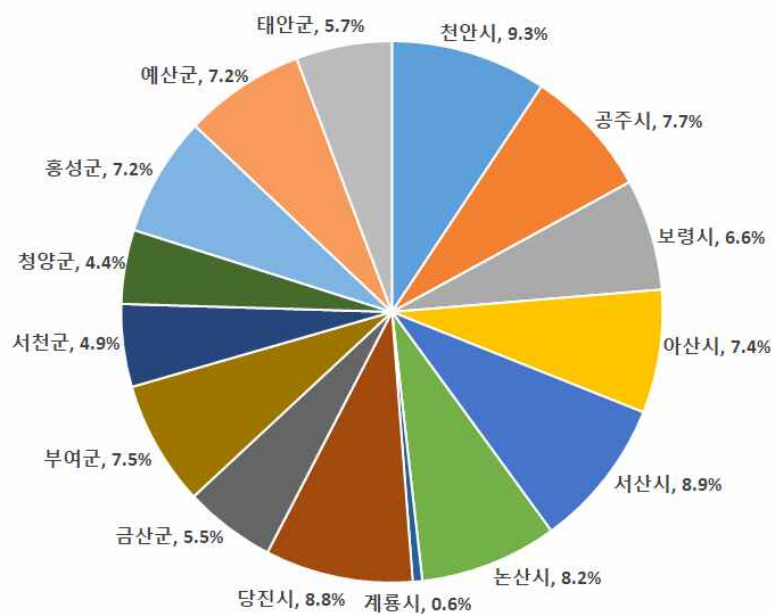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표 2-38] 충남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단위 : 개)

시도	2015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천안시	17,241	9.5%	17,295	9.4%	17,472	9.4%	17,464	9.3%
공주시	14,181	7.8%	14,294	7.8%	14,358	7.7%	14,467	7.7%
보령시	11,654	6.4%	11,883	6.5%	12,181	6.5%	12,430	6.6%
아산시	13,597	7.5%	13,534	7.3%	13,784	7.4%	13,783	7.4%
서산시	16,215	8.9%	16,482	8.9%	16,636	8.9%	16,746	8.9%
논산시	14,800	8.1%	15,046	8.2%	15,348	8.2%	15,395	8.2%
계룡시	955	0.5%	1,011	0.5%	1,063	0.6%	1,071	0.6%
당진시	16,670	9.1%	16,734	9.1%	16,747	9.0%	16,541	8.8%
금산군	9,880	5.4%	10,143	5.5%	10,244	5.5%	10,239	5.5%
부여군	13,581	7.4%	13,629	7.4%	13,729	7.4%	13,985	7.5%
서천군	9,066	5.0%	9,111	4.9%	9,181	4.9%	9,241	4.9%
청양군	7,757	4.3%	7,930	4.3%	8,146	4.4%	8,291	4.4%
홍성군	13,081	7.2%	13,185	7.2%	13,357	7.2%	13,419	7.2%
예산군	13,240	7.3%	13,357	7.3%	13,452	7.2%	13,511	7.2%
태안군	10,438	5.7%	10,550	5.7%	10,644	5.7%	10,729	5.7%
총 계	182,357	100%	184,184	100%	186,342	100%	187,312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그림 2-16] 2018년 충남 시군별 농업경영체 비율

- 충남 가구의 비중과 농업경영체를 비교한 결과 가구 수와 농업경영체와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와 농업경영체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이나 전체 가구의 비율은 2018년 29.0%였으나 농업경영체의 비율은 9.3%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
 - 천안시는 전체 가구의 비율은 4년 동안 3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농업경영체는 10% 정도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가구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의 충남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농업경영체는 일부 시군에 집중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업경영체를 실제 농업을 시행하는 가구로 가정하여 전체 가구 수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았음
 - 우선 충남 전체의 경우 2015년 20.6%, 2016년 20.4%, 2017년 20.2%, 2018년 19.9%로 나타남
 - 청양군의 경우 전체 가구의 50% 정도가 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군단위의 경우 시단위보다 농업경영체의 비중이 높은 상태임
 - 시 단위도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에서도 20 ~ 3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시군의 농업경영체 비중은 경감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체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표 2-39] 충남 가구 및 농업경영체 비중 비교

(단위 : 호 개)

시군	2015		2016		2017		2018	
	가구	농업 경영체	가구	농업 경영체	가구	농업 경영체	가구	농업 경영체
천안시	28.0%	9.5%	28.2%	9.4%	28.5%	9.4%	29.0%	9.3%
농업경영체 비율	7.0%		6.8%		6.6%		6.4%	
공주시	5.5%	7.8%	5.4%	7.8%	5.3%	7.7%	5.3%	7.7%
농업경영체 비율	29.2%		29.3%		29.1%		28.9%	
보령시	5.3%	6.4%	5.2%	6.5%	5.1%	6.5%	5.1%	6.6%
농업경영체 비율	24.9%		25.3%		25.7%		26.1%	
아산시	13.8%	7.5%	13.8%	7.3%	14.0%	7.4%	14.0%	7.4%
농업경영체 비율	11.1%		10.9%		10.7%		10.4%	
서산시	7.9%	8.9%	7.9%	8.9%	7.8%	8.9%	8.0%	8.9%
농업경영체 비율	23.2%		23.2%		23.0%		22.3%	
논산시	6.3%	8.1%	6.2%	8.2%	6.1%	8.2%	6.0%	8.2%
농업경영체 비율	26.4%		26.7%		27.1%		27.1%	
계룡시	1.6%	0.5%	1.6%	0.5%	1.7%	0.6%	1.7%	0.6%
농업경영체 비율	6.6%		6.8%		6.8%		6.8%	
당진시	8.1%	9.1%	8.1%	9.1%	8.1%	9.0%	8.0%	8.8%
농업경영체 비율	23.1%		22.8%		22.5%		21.9%	
금산군	2.8%	5.4%	2.8%	5.5%	2.8%	5.5%	2.7%	5.5%
농업경영체 비율	39.3%		40.0%		40.3%		40.0%	
부여군	3.7%	7.4%	3.6%	7.4%	3.6%	7.4%	3.5%	7.5%
농업경영체 비율	41.5%		41.4%		41.6%		42.1%	
서천군	3.0%	5.0%	2.9%	4.9%	2.9%	4.9%	2.8%	4.9%
농업경영체 비율	34.1%		34.3%		34.6%		35.0%	
청양군	1.7%	4.3%	1.7%	4.3%	1.7%	4.4%	1.7%	4.4%
농업경영체 비율	50.9%		50.6%		50.4%		50.9%	
홍성군	4.6%	7.2%	4.8%	7.2%	4.9%	7.2%	4.8%	7.2%
농업경영체 비율	31.9%		30.3%		29.8%		29.6%	
예산군	4.2%	7.3%	4.1%	7.3%	4.1%	7.2%	4.0%	7.2%
농업경영체 비율	35.3%		35.9%		35.9%		35.5%	
태안군	3.4%	5.7%	3.4%	5.7%	3.4%	5.7%	3.4%	5.7%
농업경영체 비율	34.8%		34.5%		34.1%		33.9%	
충남 전체 농업경영체 비율	20.6%		20.4%		20.2%		19.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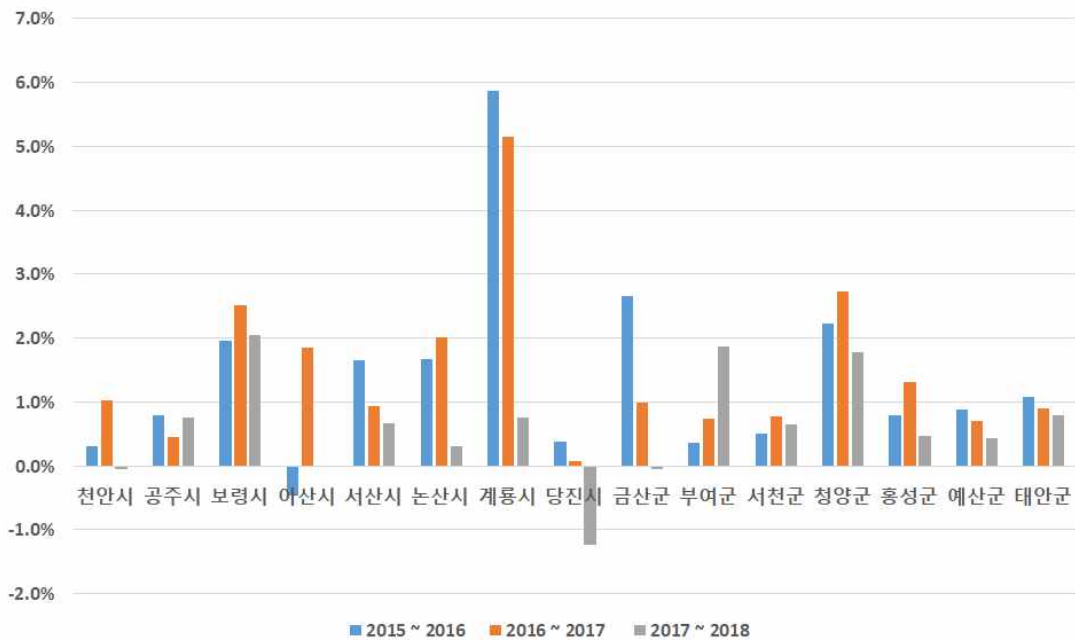
(2) 충남 농업경영체 변화 추이

- 충남의 농업경영체는 2015년에 비하여 2018년 4,955개가 증가하였으며 변화율은 2.7%를 보임
 - 년마다는 1% 내외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2016 ~ 2017년에 1.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017 ~ 2018년에 0.5%로 가장 적게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충남의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인 4.3%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1.6%의 변화율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군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체가 증가하였으나 당진시의 경우 0.8% 감소하였음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8년 대거 감소하였음
-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지역은 계룡시로 12.1% 증가하였고 다음은 청양군과 보령시로 각각 6.9%, 6.7% 증가하였음
 - 두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증가세가 크지 않고 1 ~ 3% 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표 2-40] 충남 농업경영체 변화

시군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5~2018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천안시	54	0.3%	177	1.0%	-8	0.0%	223	1.3%
공주시	113	0.8%	64	0.4%	109	0.8%	286	2.0%
보령시	229	2.0%	298	2.5%	249	2.0%	776	6.7%
아산시	-63	-0.5%	250	1.8%	-1	0.0%	186	1.4%
서산시	267	1.6%	154	0.9%	110	0.7%	531	3.3%
논산시	246	1.7%	302	2.0%	47	0.3%	595	4.0%
계룡시	56	5.9%	52	5.1%	8	0.8%	116	12.1%
당진시	64	0.4%	13	0.1%	-206	-1.2%	-129	-0.8%
금산군	263	2.7%	101	1.0%	-5	0.0%	359	3.6%
부여군	48	0.4%	100	0.7%	256	1.9%	404	3.0%
서천군	45	0.5%	70	0.8%	60	0.7%	175	1.9%
청양군	173	2.2%	216	2.7%	145	1.8%	534	6.9%
홍성군	104	0.8%	172	1.3%	62	0.5%	338	2.6%
예산군	117	0.9%	95	0.7%	59	0.4%	271	2.0%
태안군	112	1.1%	94	0.9%	85	0.8%	291	2.8%
총 계	1,827	1.0%	2,158	1.2%	970	0.5%	4,955	2.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그림 2-17] 충남 농업경영체 변화

2) 충남 농업인 현황

(1) 충남 농업인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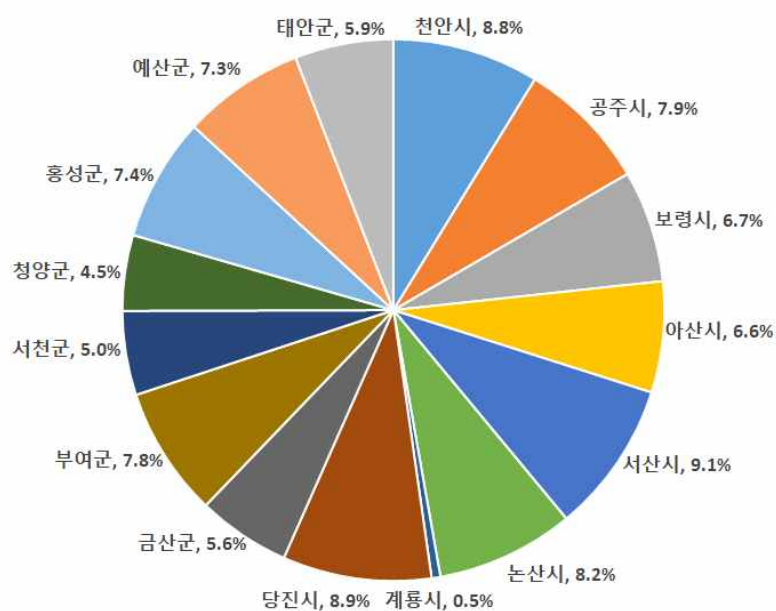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충남의 농업인은 서산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천안시, 당진시 등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천안시에 가장 많은 농업인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서산시가 천안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등록되어 있었음
- 가장 적은 농업인이 분포하고 있는 시군은 계룡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양군, 서천군이었음
 - 서천군과 청양군은 매년 5% 이하의 농업인이 등록되어 있었음
 -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단위 지역에 군단위 지역보다 많은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과 유사하게 충남 각 시군의 농업인 비중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41] 충남 농업인 등록 현황

(단위 : 개)

시도	2015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천안시	27,524	9.1%	25,977	8.8%	25,265	8.9%	24,695	8.8%
공주시	24,215	8.0%	23,271	7.8%	22,320	7.8%	22,162	7.9%
보령시	19,917	6.6%	19,710	6.6%	18,827	6.6%	18,856	6.7%
아산시	19,311	6.4%	18,646	6.3%	18,624	6.5%	18,703	6.6%
서산시	27,497	9.1%	27,252	9.2%	25,834	9.1%	25,579	9.1%
논산시	24,176	8.0%	24,043	8.1%	23,510	8.3%	23,235	8.2%
계룡시	1,513	0.5%	1,512	0.5%	1,497	0.5%	1,483	0.5%
당진시	28,215	9.4%	27,944	9.4%	25,931	9.1%	25,056	8.9%
금산군	16,325	5.4%	16,609	5.6%	15,990	5.6%	15,678	5.6%
부여군	22,967	7.6%	22,685	7.6%	21,724	7.6%	21,880	7.8%
서천군	15,208	5.0%	14,726	5.0%	14,217	5.0%	14,171	5.0%
청양군	12,917	4.3%	13,133	4.4%	12,642	4.4%	12,732	4.5%
홍성군	22,189	7.4%	22,024	7.4%	20,991	7.4%	20,800	7.4%
예산군	21,861	7.3%	21,786	7.3%	20,706	7.3%	20,527	7.3%
태안군	17,488	5.8%	17,406	5.9%	16,713	5.9%	16,595	5.9%
총 계	301,323	100%	296,724	100%	284,791	100%	282,152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그림 2-18] 2018년 충남 시군별 농업인 비율

- 충청도 시군의 인구비율과 농업인의 비율을 비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시군의 농업인 비율을 확인하였음
- 인구비율 확인 결과 천안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이었으며 다음으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의 순으로 충남 북부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가장 많은 농업인 비율도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인구는 제일 많은 비율이 30% 정도의 수준으로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 충남 전체에 대한 농업인의 비율과 해당 시군 인구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시단위에서는 농업인의 비율이 해당 시의 인구비율 보다 낮게 나타남
 -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시는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로 해당 시의 산업구조 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시군 인구대비 농업인의 비율은 청양군이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여군이 30%대, 나머지 군과 공주시는 2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시군의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함

[표 2-42] 충남 인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인구 비중 비교

(단위 : 호 개)

시군	2015		2016		2017		2018	
	인구	농업인	인구	농업인	인구	농업인	인구	농업인
천안시	29.2%	9.1%	29.5%	8.8%	29.8%	8.9%	30.4%	8.8%
농업인 비율	4.5%		4.2%		4.0%		3.8%	
공주시	5.4%	8.0%	5.2%	7.8%	5.1%	7.8%	5.1%	7.9%
농업인 비율	21.8%		21.2%		20.6%		20.6%	
보령시	5.0%	6.6%	5.0%	6.6%	4.9%	6.6%	4.8%	6.7%
농업인 비율	19.0%		19.0%		18.2%		18.5%	
아산시	14.3%	6.4%	14.4%	6.3%	14.7%	6.5%	14.7%	6.6%
농업인 비율	6.5%		6.2%		6.0%		6.0%	
서산시	8.2%	9.1%	8.1%	9.2%	8.1%	9.1%	8.2%	9.1%
농업인 비율	16.2%		16.0%		15.0%		14.7%	
논산시	6.0%	8.0%	5.9%	8.1%	5.8%	8.3%	5.7%	8.2%
농업인 비율	19.5%		19.5%		19.2%		19.3%	
계룡시	2.0%	0.5%	2.0%	0.5%	2.1%	0.5%	2.1%	0.5%
농업인 비율	3.6%		3.5%		3.4%		3.4%	
당진시	7.9%	9.4%	7.9%	9.4%	7.9%	9.1%	7.9%	8.9%
농업인 비율	17.1%		16.8%		15.5%		14.9%	
금산군	2.6%	5.4%	2.6%	5.6%	2.5%	5.6%	2.5%	5.6%
농업인 비율	29.7%		30.4%		29.7%		29.5%	
부여군	3.4%	7.6%	3.3%	7.6%	3.3%	7.6%	3.2%	7.8%
농업인 비율	32.3%		32.3%		31.4%		32.1%	
서천군	2.7%	5.0%	2.7%	5.0%	2.6%	5.0%	2.5%	5.0%
농업인 비율	26.7%		26.3%		25.8%		26.3%	
청양군	1.6%	4.3%	1.6%	4.4%	1.6%	4.4%	1.5%	4.5%
농업인 비율	39.8%		40.1%		38.5%		39.4%	
홍성군	4.6%	7.4%	4.8%	7.4%	4.8%	7.4%	4.8%	7.4%
농업인 비율	23.5%		22.0%		20.7%		20.6%	
예산군	4.0%	7.3%	3.9%	7.3%	3.8%	7.3%	3.8%	7.3%
농업인 비율	26.2%		26.8%		25.8%		25.6%	
태안군	3.1%	5.8%	3.0%	5.9%	3.0%	5.9%	3.0%	5.9%
농업인 비율	27.5%		27.2%		26.1%		26.2%	
충남 전체 농업인 비율	14.5%		14.2%		13.5%		13.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 등록된 농업인의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농업인과 남성 농업인의 차이는 2015년 5%에서 2018년 7.1%로 벌어져 남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표 2-43] 충남 농업인 성별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성	158,153	52.5%	156,545	52.8%	152,878	53.7%	152,089	53.9%
여성	143,089	47.5%	140,179	47.2%	131,913	46.3%	130,063	46.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 농업인의 연령별 현황은 30세 미만의 농업인은 매년 0.5 ~ 0.6%의 수준으로 극히 낮은 상황임

- 또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3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중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 30 ~ 65세 농업인의 비율은 2015년 52.2%로 절반 이상이였으나 2017년 50% 밑으로 내려갔으며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65세 고령농은 2015년 47.1%의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 52.7%로 절반 이상이 고령농에 해당되었음

■ 절대적인 수치 역시 30세 미만, 30 ~ 65세 미만의 농업인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2-44] 충남 농업인 연령별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30세 이하		30~65세		65세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5	1,924	0.6%	157,378	52.2%	141,940	47.1%
2016	1,673	0.6%	150,842	50.8%	144,209	48.6%
2017	1,325	0.5%	136,506	47.9%	146,960	51.6%
2018	1,291	0.5%	132,040	46.8%	148,821	52.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2) 충남 농업인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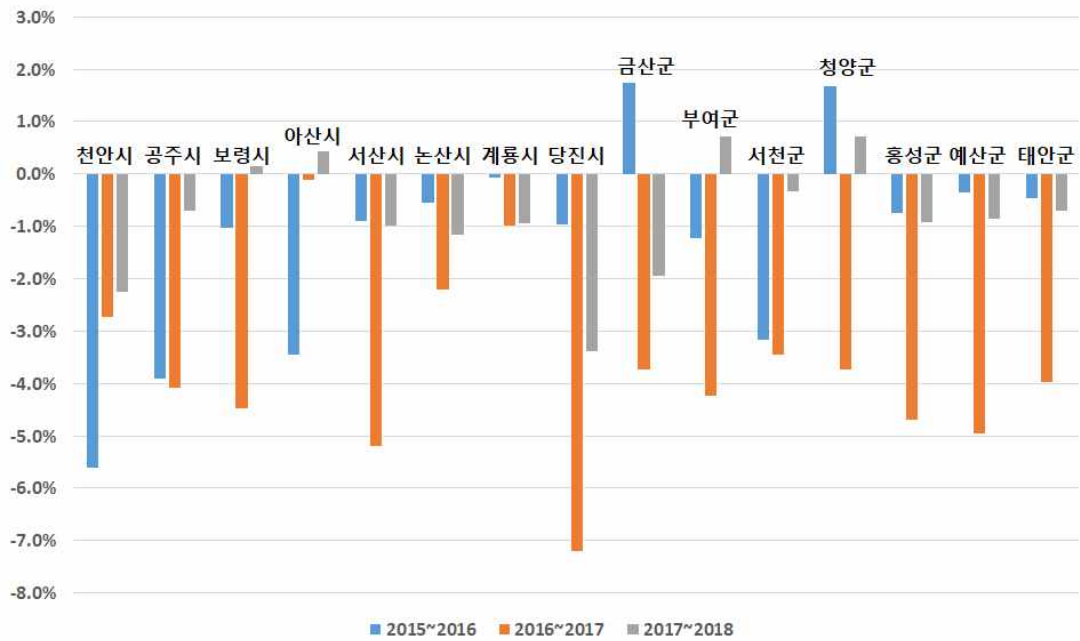
- 충남 농업인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6.8%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감소율은 전국 감소율인 -5.4% 보다 큰 수치로 충남의 농업인 감소가 전국에서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충남의 모든 시군에서 농업인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진시가 12.6% 감소로 감소폭이 가장 큰 상황임
- 전국적의 농업인 증감에서는 일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증가 현상이 보였으나 충남의 시군에서는 증가한 지역 없이 지속적인 감소현상만 나타나고 있음
- 감소율이 가장 작은 지역은 청양군으로 2016년과 2018년에 증가현상을 보였으나 2017년의 감소폭을 상쇄시키지 못하여 4년간의 변화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5] 충남 농업인 변화

시군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5~2018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변화율
천안시	-1,547	-5.6%	-712	-2.7%	-570	-2.3%	-2,829	-11.5%
공주시	-944	-3.9%	-951	-4.1%	-158	-0.7%	-2,053	-9.3%
보령시	-207	-1.0%	-883	-4.5%	29	0.2%	-1,061	-5.6%
아산시	-665	-3.4%	-22	-0.1%	79	0.4%	-608	-3.3%
서산시	-245	-0.9%	-1,418	-5.2%	-255	-1.0%	-1,918	-7.5%
논산시	-133	-0.6%	-533	-2.2%	-275	-1.2%	-941	-4.0%
계룡시	-1	-0.1%	-15	-1.0%	-14	-0.9%	-30	-2.0%
당진시	-271	-1.0%	-2,013	-7.2%	-875	-3.4%	-3,159	-12.6%
금산군	284	1.7%	-619	-3.7%	-312	-2.0%	-647	-4.1%
부여군	-282	-1.2%	-961	-4.2%	156	0.7%	-1,087	-5.0%
서천군	-482	-3.2%	-509	-3.5%	-46	-0.3%	-1,037	-7.3%
청양군	216	1.7%	-491	-3.7%	90	0.7%	-185	-1.5%
홍성군	-165	-0.7%	-1,033	-4.7%	-191	-0.9%	-1,389	-6.7%
예산군	-75	-0.3%	-1,080	-5.0%	-179	-0.9%	-1,334	-6.5%
태안군	-82	-0.5%	-693	-4.0%	-118	-0.7%	-893	-5.4%
총 계	-4,599	-1.5%	-11,933	-4.0%	-2,639	-0.9%	-19,171	-6.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그림 2-19] 충남 농업인 변화

3.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분석 소결

1) 전국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분석결과

■ 통계청 생산 농가와 농업경영체와 괴리 발생

-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국 농가와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가 많은 상황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통계청 생산 농가의 경우 농촌지역의 가구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됨

■ 대도시 중심으로 늘어나는 농업경영체

- 주요 농업지역이라 할 수 있는 8개도의 경우 증가량이 2 ~ 4% 수준이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는 10% 이상의 증가량을 보이는 곳이 존재함
- 8개 도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증가율인 4.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곳은 경상북도 밖에 없으며 그 외는 특별시 및 광역시로 조사됨

■ 8개도에 집중되어 있는 농업인

- 농업인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5개도에서 전국 전체 농업인 10% 이상이 등록되어 있음

■ 농업인 연령의 고령화

-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2015년 44.0%에서 2018년 49.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부 시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농업인 감소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8개 도 중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강원도이며 전체 감소율은 5.4%였음

2) 충남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분석결과

■ 시군별 고른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분포

- 충남도의 경우 인구 및 가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의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의 경우 모든 시군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임

■ 군단위 지역이 큰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비율

-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로 갈수록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농업경영체의 경우 청양군의 전체 가구의 50%가 넘는 상황이며 농업인이 역시 청양군의 인구 중 약 40%가 해당됨

■ 전국의 농업경영체 증가 및 농업인 감소보다 적은 충남도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농업경영체는 총 68,832개, 4.3%가 증가하였으나 충남의 경우 4,955개 2.7% 증가하는데 그쳤음
- 농업인 역시 전국은 동기간 동안 5.4%가 감소한 반면 충남은 6.4% 감소하여 전국적인 평균치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보다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는 충남도 농업인

- 연령별 농업인의 경우 전국은 2018년 49%로 아직 50%가 되지 않았으나 충남의 경우 2017년 50%를 넘겼으며 2018년 현재 52.7%를 보이고 있어 전국보다 고령화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제3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체 분석 결론

	농가소득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전체 현황	• 농업소득과 사업 외 소득에 치중 • 이전소득 비율 증가 • 경지규모에 따른 소득규모 차이 • 가계소득의 79.8% 수준 • 지역에 따른 소득 차이	• 통계청 생산 농가와 괴리 • 대도시 중심으로 증가한 농업경영체 • 8개도에 집중되어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연령 고령화 • 대부분의 지역 농업인 감소
충남 현황	• 축산물 수입 비중의 증가 • 증가하는 겸업소득 및 이전소득 • 미곡과 채소에 집중된 농업소득 • 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 시군별 고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분포 • 군단위의 큰 농업경영체/농업인 비중 • 전국 농업경영체 증가 및 농업인 감소폭 보다 큰 충남 • 전국보다 큰 고령화율
시사점	• 이전소득 보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 도모 • 적극적인 농가소득의 양극화 해결 노력 • 농가소득 보장을 통한 지역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농업경영체 중심의 정책을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 고령화 되어 가는 농업인을 고려한 정책 결정 및 진행	

[그림 2-20]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체 분석 시사점

■ 이전소득 보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 도모

- 현재 전체 가구소득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각 소득별 50% 이상의 농가가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노력이 필요함
- 농가소득을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 및 사업 외 소득이 농가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대다수의 농가가 정책의 혜택을 받는데 한계점이 있음
- 이전소득의 경우 보편적으로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전소득의 보장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적극적인 농가소득의 양극화 해결 노력

- 현재 농가의 소득의 중위값이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
- 농업소득 면에서 일부 농가가 진행하고 있는 축산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실제 미곡을 비롯한 채소 등의 경종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과는 괴리가 있음

- 즉, 농가 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미곡 및 채소의 재배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대부분인 상황으로 현재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시작할 적기라 할 수 있음

■ 농가소득 보장을 통한 지역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농업인의 도시 이주, 농업의 포기는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결과물로써 중소농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이러한 소득보전의 정책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정주만족도를 증진시켜 허물어져가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중심의 정책을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 농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통계와 농업경영체 관련 통계는 차이가 큰 상황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업 및 농촌 정책에 활용하여야 함
- 실질적 농업 정보라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인을 고려한 정책 결정 및 진행

- 농업경영체 정보에 따른 농업인의 고령화는 충남의 경우 이미 50%가 넘는 상황으로 이들을 고려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함
-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 노동생산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고령농이 필수불가결하게 겪어야 하는 소득의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제3장

농민기본소득 개념, 배경, 쟁점 분석

제1절 개념 정의

제2절 논의 배경

제3절 쟁점 분석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농민기본소득 개념, 배경, 쟁점 분석

제1절 개념 정의

1. 기본소득(basic income)

1) 개념 정의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득, 직업 여부에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 유사 개념 및 제도
 - 시민소득, 사회배당, 보장소득, 국가보너스
 - 범주형 기본소득: 참가소득(예, 농민기본소득), NIT(negative income tax: 음의 소득세), 사회적 지분 참여, 사회수당 등

2) 논의 배경⁷⁾

- 불평등한 복지국가
 - 승자독식의 사회, 1%와 10% 점유율 확대,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노동중심(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계
- 기술의 진보와 일자리의 불안
 -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종말⁸⁾
 -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 불안정 노동(프레카리아트: precariat)의 확산,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 임시적, 일시적, 불안정, 배제적 사회 고착
- 공유부에 대한 배당
 - 4차산업 자본주의 → 인지/정동자본주의: 생산의 원료가 된 빅데이터
 - 개인과 사회의 생산, 소비, 여가, 일상생활, 공동체적 놀이가 가치 생산, 그 소유

7) 김교성(2019).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컨퍼런스 발표 자료.

8)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도 있음.

권에 대한 의문 발생

3) 6대 원칙

■ 보편성

- 사회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함.

■ 개별성

- 가족, 단체 등의 일부 혹은 대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함.

■ 무조건성

- 조건을 두지 않아야 함. 만약 조건을 두더라도 최소한으로 두어야 함.

■ 정기성

- 한 번 주고 끝나거나 예측 가능하게 일정한 주기별로 지급해야 함.

■ 현금성

- 물품 등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충분성

- 최근에 추가되는 원칙임. 가급적 충분하게 지급해야 함.

4) 기본 이념

-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2.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1) 개념 정의

- 모든 농민에게 영농규모,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

2) 6대 원칙

■ 보편성

- 경종, 축산, 임업 등 모든 농업 종사자에게 지급함.
- 단, 환경오염을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형 축산은 제외

■ 개별성

- 가족단위, 농업경영체 단위 지급이 아니라 개별 농민에게 지급함.

■ 무조건성

- 지급을 위한 조건을 두지 않음. 부득이하게 조건을 두더라도 공익적 목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둠.

■ 정기성

- 한 번 주고 끝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일정한 주기별로 지급해야 함.

■ 현금성

- 물품 등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현재 지자체에서 지급되거나 지급 계획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상품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금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충분성

- 가급적 충분하게 지급해야 함.
-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기본적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해야 함.

3) 성격

■ 농민기본소득 측면: 취약계층인 농민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보편적 권리로써의 기본소득

- 공업화와 도시화 우선 정책으로 배제되고 희생되어 왔으며 빠른 시장 개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농민계층은 이제 노인, 장애인, 청년, 아동처럼 취약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함.

- 지역 간의 소득 균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민수당 측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약 166조원(농진청, 2012)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9항
 - 식량의 안정적 공급
 -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생태계의 보전
 -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노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논의 배경

1. 무분별한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삶 파탄

1) 농업시장 개방의 가속화

■ GATT체제 하에서의 농산물시장 개방 결정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 1993년 UR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 확정
-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음.

■ 이후 WTO체제가 출범하고 이후 FTA가 추진

- WTO/DDA와 같이 다자간 무역협상이 어렵게 되자 양자간 무역자유무역 협상인 FTA가 급속하게 확산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5건, 총 54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즉,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 EU 등 농업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2) 농촌사회 붕괴 가속화

■ 자유무역협정의 가속화로 농촌사회는 빠르게 붕괴

- 오랜 기간 동안 농업의 기반을 충실히 다져온 서구와 달리 농업의 기본적인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은 농가경제와 농촌사회의 붕괴를 가져옴.
- UR 농산물협상 이전인 1980년 농가인구는 1,083만 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31만 명으로 약 1/4로 감소함.
- 충남도 농가인구는 2010년 394천명, 2015년 308천명, 2017년 289천명, 2018년 27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농가 고령화율을 보면, 1980년에는 6.7%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44.7%로 크게 상승함. 더욱이 실제 농촌 고령화율은 이보다도 더 심각해 농촌사회는 빠르게 붕괴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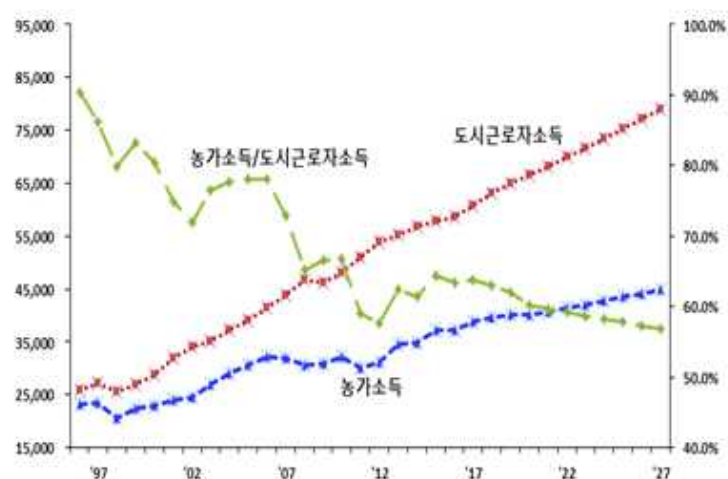
[그림 3-1] 농가인구 및 고령농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이수행 외(2019), <유럽 농업직불제 사례와 시사점> 참고

2. 도농 간 소득불평등 심화

1) 도농 간 소득 격차 지속 확대

■ UR 이후 도농 간 소득 격차 본격화

- UR 이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약 90%(도시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었으나 2000년에는 80.5%, 2005년 78.2%, 2010년 66.8%, 2017년 63.5%, 2017년 64.1%로 하락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8에 따르면 2027년 도농 간 소득격차는 57%로 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3-2] 도농 간 소득격차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농업전망)

2) 농가소득 정체 지속

■ 최근 10년 사이 농가 소득은 큰 변화가 없음

- 2010년 농가 평균소득은 3,212만원, 2017년에는 3,824만원으로 농가소득은 큰 변화가 없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평균소득은 4,20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 평균소득 증가 원인 분석 결과, 통계청 농가조사 샘플이 바뀐 이유도 있고 논농업직불금 가운데 변동직불금이 포함된 수치여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임.
- 예를 들어, 농가부채 통계를 보면 2017년에는 2,636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3,327만 원으로 소득보다는 부채가 더 증가함.



[그림 3-3] 연도별 농가당 평균소득 증가 추이



[그림 3-4] 연도별 농가당 평균부채 추이

3. 농업직불금 수령액 양극화 심화

1) 면적 중심의 농업직불제 한계 봉착

■ 농업직불제의 종류는 많지만 농가 소득보전에는 한계

- 우리나라는 1993년 UR 농산물협상 이후 농가소득보전과 농업환경보호를 위해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그동안 10가지의 다양한 농업직불제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농업소득 보전에는 한계
- 농업직불제의 종류가 많지만 농가가 수령할 수 있는 직불제 종류는 많아야 2 ~ 3개로 한정이 되어 있음.
- 농업직불금의 규모가 크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직불제를 실시하다 보니 행정비

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 면적 중심의 근본적 한계 농정

- 농업직불제는 무엇보다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지 면적이 큰 대농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일정 부분 마을단위로 지급되어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직불제는 농가당 면적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농에게 유리한 제도임.

2) 소농과 대농 간 차이 심화⁹⁾

■ 소농과 중대농 간 농업직불금 수령액 양극화 심화

- 2017년 기준, 쌀 직불금의 경우 전체 농가의 71.6%를 차지하는 1ha 미만 농가의 평균 직불금은 40만 원에 불과
- 반면, 전체 농가의 11.8%를 차지하는 2ha 이상 농가의 평균 직불금은 440만 원이며 전체 직불금의 약 50% 차지

3) 작목 간, 지역 간 직불제 편중 심화

■ 농업직불금이 쌀 직불금으로 편중

- 전체 직불금의 82.6%가 쌀 직불금으로 편중되어 있음.
- 논농업에 직불금이 편중되다 보니 쌀생산의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초래.
- 물론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5% 수준이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직불금이 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 작목전환이 쉽지 않음.
- 최근 정부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밭작물의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중산간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불리

- 농업직불금이 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 평야지의 대농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농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산간지역 농가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함.

9) 자료: 김현권 국회의원실 2018년 국정감사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2018. 10. 10 보도 자료

- 밭이 많은 중산간지역의 농업직불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농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중산간 지역에서의 농가인구 감소는 심화되고 있음.

4. 농가 간 소득 양극화 심화

1) 소농과 대농 간 소득 격차 심화

■ 하위 20% 농가의 소득은 감소 내지 정체

- 2005년 기준, 하위 20% 농가의 소득은 7,348천 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6,310천 원, 2015년에는 6,864천 원으로 감소 내지 정체 상태임.
- 영세 소농의 몰락으로 인해 농가 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

■ 상위 20% 농가의 소득은 지속 상승

- 2005년 기준, 상위 20% 농가의 소득은 73,086천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99,413천 원으로 크게 증가함.
- 정부의 규모화 정책으로 인해 대농의 농가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 간 소득 격차는 14.5배

- 두 그룹 간 소득 격차도 2005년 10.1배에서 2015년 14.5배로 크게 확대됨
- 두 그룹 간 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15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3-1] 농가소득 5분위별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배)

구분	2005	2010	2015
1분위	7,348	6,310	6,864
2분위	16,565	16,040	18,059
3분위	25,401	24,775	27,811
4분위	37,596	37,582	43,047
5분위	73,366	78,086	99,413
5분위 배율	10.1	12.4	14.5
농가 평균	30,503	32,121	37,215

2) 유럽은 농업직불금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 유럽은 면적 기준의 직불금이 곧 '기본소득' 역할

- 유럽은 농가당 평균 경작 규모가 40 ~ 80ha로 크기 때문에 농지 면적당 직불제를 실시하면 이러한 직불금이 곧 기본소득의 역할을 담당함.
- 여기에 친환경농업, 경관농업 등 가산형 직불제를 통해 직불금을 받으면 농가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농촌에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경작 규모가 1.5ha로 적기 때문에 면적 기준의 직불금 액수는 미미한 상태임.

■ 유럽은 농업직불금을 통해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

- 농업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을 보면, 유럽은 50 ~ 80%이나 우리나라는 약 10 ~ 20%에 불과함.
- 농가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을 보면, 유럽은 약 30%이나 우리나라는 약 4%에 불과함.
- 농업예산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을 보면, EU 71.7%(2016), 스위스 85.5%(2016), 일본 33%이나 우리나라는 17%(2018년 추정)에 불과함. 이마저도 변동직불금이 포함된 비중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 안팎으로 추정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업직불금은 규모나 비중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어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표 3-2] 각국의 농업예산과 농업직불금 비교

구분	우리나라	유럽
농업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약 10~20%	50~70%
농업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약 4%	약 30%
농업예산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17%(2018년 추정치)	EU 71.7%(2016) 참고: 스위스 85.5%(2016), 일본 33%(2016)

■ 유럽은 소농직불금을 통해 소농의 생존권 보장

- 유럽은 면적 단위 직불금 이외 규모가 작은 소농에게 별도의 직불금을 지급함.
- 이는 마을공동체 유지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
-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농을 위한 직불금은 없는 상태임.

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 필요

1) 관련 법률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내 농업·농촌 공익기능 관련 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9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1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9조, 제46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9항: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 식량의 안정적 공급
-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생태계의 보전
-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2항: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는 다양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방법과 평가액은 다양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평가 방법, 평가 범위 설정에 따라 편차가 큼.
- 오세익 외(2001)는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총 10조 673억 원으로 평가함. 양승룡 외(2011)의 연구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총 86조 2,907억 원으로 평가함.
- 농진청(2012)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가 총 2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함. 이중 산업적 가치는 86조 원이고 공익적 가치는 166조 원으로 평가함. 공익적 가치 중에서는 환경보전이 146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관문화는 16조 원, 농촌활력은 9,800억 원, 식량안보는 2조 원으로 평가함.

[표 3-3]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연구·평가 결과

연구자	평가대상	평가결과
오세익 외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10조 673억원 - 식량안보 1조 7,084억원 - 경관기능 1조 1,214억원 - 농촌활력 8,165억원 - 환경보전 6조 4,210억원
양승룡 외 (2011)	농업의 다원적 가치	총 86조 2,907억원 - 환경보전 79조 6,178억원 - 문화경관 3조 6,357억원 - 농촌활력 9,822억원 - 식량안보 2조 550억원 * 임업 75조 6,913억원, 어업 3조 7,130억원
농진청(2012)	농업·농촌의 가치	총 252조원 산업적 가치: 86조원 공익적 가치: 166조원 환경보전: 146조 5천억원 경관·문화: 16조원 농촌활력: 9,800억원 식량안보: 2조원
공기서 외(2013)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4조 3,715억원
김용렬 외 (2014)	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9조 3,272억원 - 식량안보 2조 3,090억원 - 환경보전 2조 207억원 - 지역사회경제 1조 6,317억원 - 문화경관 1조 9,598억원 - 국격제고 1조 4,080억원

자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원 프로그램 연구(전북연구원, 2016), 재정리

제3절 쟁점 분석

1. 농민기본소득의 목적 및 대상

1) 주요 목적

■ 접근 시각의 차이: 기본소득 vs 수당

- 농민기본소득의 목적을 ‘기본소득’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당’ 개념으로 볼 것인지 등 접근 방식에 차이가 존재함.
- 기본소득적 접근은 취약계층인 농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을 보장하기 위함.
- 수당적 접근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목적임.
- 기본소득적 접근과 수당적 접근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함.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 [표 3-4]와 같음

[표 3-4]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차이 및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수당 개념	• 지급 목적의 명확화 • 정책 추진의 용이성 • 정책의 빠른 확대	• 의미의 축소 • 사람 중심이 아닌 농업가치 중심 • 농정의 근본적 개혁 한계
기본소득 개념	• 기본소득의 원칙 충실 • 여성 등 가족농민의 권리 신장 • 사람 중심의 근본적 농정 개혁	• 개념 및 목적의 경계 모호 • 정책 추진동력의 약화 • 예산 확대에 인한 어려움

■ 3가지 주요 목적

- 첫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민수당적 관점
-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적 보장 → 농민수당적 관점
- 셋째,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 농민기본소득적 관점
-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은 하나로 통합 가능함.
- 그 외 최근 지자체와 농민단체 조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추가하고 있음.
- 세 번째 목적은 ‘기본권/생존권’ 대신 ‘삶의 질 향상’으로 대신할 수 있음.

[표 3-5] 각 지자체 및 농민단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조례(안) 내 목적

지자체명	조례 목적	주요 특징
충청남도 (농민회)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업인 기본권 지역경제 활성화
전라남도 (농민회, 민중당)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지역경제 활성화
부여군 (입법예고)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 증진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어업 포함 2021년부터는 개별 지급
해남군 (2019.12.28.)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최초 제정 소득안정 도모

2) 지급 대상

■ 농업경영체별 지급 VS 농민 개별 지급

-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의 경영주 1인으로 할 것인지 경영주 및 농업종사자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 논쟁 중에 있음.
- 현재 해남군, 강진군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경영주 1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민단체, 특히 여성농민단체에서는 액수가 적더라도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의거해 농민수당의 개별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따라 부여군은 2021년부터 개별 지급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함. 이러한 개별 지급 원칙은 향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기준(부여군농산품품질관리원 담당자 인터뷰 내용)

- 농업인경영체 등록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법적으로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하고 보통 등록한 사람이 경영주가 됨.(부부 공동경영주 가능)
- 농업경영체의 최초 등록 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실제 경작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경영주 외 농업인의 경우는 더 많은 조건이 있음: ①경영주인 농업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6개월 이상 등록, ②비농촌의 경우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를 농지의 이장(이장에게 못 받을 경우 이웃 주민 2명)의 확인, ③직장을 다니지 않는 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 해당할 경우 등

록 안 됨(보통 세 번째 조건에서 가장 많이 탈락함)

- 가족이 아닌 경우 고용 체결 후 90일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통장사본 확인, 가족의 경우 6개월을 확인 함)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3년 이상 미변경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음. 즉, 3년에 한번은 무조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통계상으로 보면 농업경영체의 수는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각종 수당의 수급을 위해 새롭게 분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함

■ 실거주자, 실경작자, 실사육자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수령을 희망자는 해당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면서 실경작과 실사육해야 함.
- 축산업을 포함하지만 기업형 축산업은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기업형 축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보다는 환경오염의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전북도의 경우 축산업 종사자는 제외함.

■ 임업종사자

- 임업도 농업의 일종이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상의 임업농가 또는 산림청의 임업경영체 등록(진행 중)한 임가를 포함함.

■ 농업법인체 종사자(제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등에서 2년 이상 근무자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하지만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실시 초기 단계에서는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업법인체 종사자 포함 여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1,000㎡ 이하 소규모 농가/농업인(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인)으로 한정할 경우 1000㎡ 이하 소규모 자경농(은퇴농, 고령농)은 배제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생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현재 소규모 농사를 짓거나 품을 팔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는 것은 도덕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함.
- 사실 이러한 분들이 그동안 농업·농촌을 유지하며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왔는데 법적 자격 요건 미달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수급 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

성에 있어 문제가 있음.

-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완화될 경우, 즉 자격 조건에 예외를 둘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그렇게 된다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제도 자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 단계부터 원칙적인 법적용이 필요.
- 결국 1000㎡ 이하 소규모 농업인도 본인이 농민수당 수급을 원할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본인과 마을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거주 및 영농 기간

1) 거주 기간

■ 1년 이상 도내 실거주자

- 거주 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존재하나 기존 농업인과 귀농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 수령 자격을 농민수당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실거주, 실경작(사육) 농업인으로 한정함.
- 전북도의 경우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농인의 농촌 유입 및 영농적응을 위해 거주 기간은 1년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영농 기간

■ 영농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대체해도 무방함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이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하지만 귀농인이 농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수령을 위한 자격을 굳이 영농 기간으로 두기보다는 영농준비 기간을 포함한 거주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지급액

1) 전제

■ 초기에는 지자체 형편에 따라 지급하되 일정 수준 보장

-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의 시작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예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 형편에 따라 지급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실시를 위해서는 농가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확대

- 농민기본소득의 시작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예산 형편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시행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농민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농민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2) 개별 농민단위 지급 시

■ 연간 50 ~ 60만 원이 적정

- 개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인당 최소 연간 50 ~ 60만 원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자체 예산 형편이 이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어려울 경우 처음엔 다소 낮더라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개별 농민당 매월 2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근거로는, 도시가주의 가구당 최저생활비가 약 167만 원 수준임에 비해, 농가의 가구당 최저생활비는 150만 원으로 책정할 경우 50만 원은 농업소득, 50만 원은 농외소득, 나머지 50만 원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충당함.
- 이 정도 수준으로 경우 농업인이 농촌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3)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단위 지급 시

■ 연간 100 ~ 120만 원이 적정

- 지자체 예산 형편을 감안해 농민기본소득 실시 초기 농가당 연간 100 ~ 12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농가당 매월 최소 5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농촌에서 농가가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판단됨. 그 근거는 위의 2)번에 적시함.
- 농가단위로 지급하면 농업경영체 분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기본

소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개별 농민단위 지급이 필요함.

<참고1> 농민 개별 지급 요구 증가

- 전남도의 경우 처음에는 김영록 도지사가 농어가당 연간 100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공약했으나 현재는 예산의 제한으로 22개 시군 단체장과 협의해 2020년부터 농어가 당 연간 60만 원 지급을 결정함.
- 그러나 농민단체 및 지역 정당(민중당, 정의당)은 액수가 줄어든 것도 문제이지만 농어민 개별 지급이 아니라 농어가 단위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잠정적으로 2023년부터 개별 농민당 60만 원 지급에 합의함.
- 전북도는 14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2020년부터 농가당 연간 60만 원 지급을 확정함.

<참고2>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 전남도와 전북도의 농(어)민수당의 제안 안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실시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이들 지자체와 액수를 맞추는 것이 좋을지는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함.
- 하지만 전남도와 전북도 농민단체는 지급 방식과 함께 지급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좀 더 높게 지급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남 강진군의 경우 2018년부터 농가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함평군의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농어가당 연간 120만 원의 절반인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남도와 22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 간 협의를 통해 2020년부터 연간 60만 원으로 통일 지급을 합의함으로써 이 지역 농민단체들은 불만을 제기함.

4. 지급 제외 대상자 및 지급 방법

1) 지급 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현 상황에서 농업인을 입증할 가장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는 농업경영체 등록임.

■ 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직불제 기준)

-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농가인 경우는 농업이 주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에서는 제외함.
- 해남군의 경우 더 많은 농업인이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 직전 연

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로 상향 조정함.

- 신청 직전 연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농가)
 - 아래 해남군의 사례에서 신청 직전 연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 기타: 지자체 자체적으로 규정

<참고>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서의 지원 제외 대상자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前)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전(前)연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2) 지급 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최우선 순위
 -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인 지자체 대부분은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
- 현금+지역화폐(상품권)
 - 전남 강진군의 경우, 2018년에는 현금+지역화폐(강진사랑상품권)를 50:50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함.
- 지역화폐(체크카드)
 - 경기도 청년수당의 경우 지역화폐(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음. 농민수당도 도입 초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제도가 정착된다면 체크카드 도입도 고려할만함.
- 현금
 - 행정 비용 최소화와 사용 범위의 무제한으로 사용면에서는 편한 방법이지만 지역 외 유출 용이, 현금 지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해 가급적 권장되지 않고 있음.

[표 3-6]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급 방식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지역화폐(상품권)	• 간편한 사용 • 지역내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선호 • 고령자에게 유리	• 발행 비용 부담 • 1회성 사용 • 사용 범위 협소
현금+상품권	• 선택권 확대 • 도(현금), 시군(상품권) 역할 분담 • 사용 범위 확대	• 행정 비용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감소
지역화폐(체크카드)	• 발행 비용 절감 • 장기 사용 가능 • 휴대 편리	• 사용 범위 협소 • 고령인 사용 불편 • 분실 시 재발급 등 관리비 증가
현금	• 빠른 전달 • 사용 편리 • 사용처 다양	• 지역외 유출 용이 • 지역활성화 명분 약화 • 현금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

5. 지급 시기 및 이행 조건

1) 지급 시기

■ 연간 2회: 상하반기

■ 이유: 적절한 예산 지출 통제 및 수급자 확인

- 농민수당 지급 횟수를 자주하면 행정비용이 증가한 반면, 1회 일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인플레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연간 2회 지급은 지역화폐 지출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 창출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대상자의 확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2) 이행 조건

■ 공익 목적의 이행 조건을 두되 자율 실천 유도

- 농민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제를 실시할 경우 무조건 지급을 원칙으로 함.
- 하지만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행 조건 부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이행조건을 부여하더라도 강제 혹은 의무 조건이 아니라 농촌마을 공동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 자문위원 의견조사 결과>

- 이행 조건을 부여하더라도 이행점검이 어려움.
- 이행조건을 부여하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해야 가능함.
- '의무'라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민수당 목적 자체를 퇴색시킬 수 있음.
- 적은 액수의 농민수당으로는 이행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움.
- 이행조건으로 환경농업 실천 의무가 들어간다면 이는 농민수당보다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1>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 내 이행조건

-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의 이행조건은 의무 및 강제 사항이라기보다는 농민의 공익활동을 명기함으로써 도시민의 농민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큼.
- 또한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의 의무사항은 농민이라면 지켜야하는 당연한 사항을 적시함으로써 농민의 역할을 스스로 지켜나가길 기대하는 차원임.
- 이 때문에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의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는 적시하지 않고 있음. 다른 지자체 조례안도 이와 비슷함.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의무 이행>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3. 농지·산지 훼손 금지
4.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6.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7.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8.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참여 등 이행조건 부여

- 일부 지자체 혹은 단체의 조례안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교육 참여를 부여하고 있음. 그 이유는 농촌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역할 및 의무를 부여하자는 취지임.
- 하지만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교육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규정할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일부 지자체 조례안의 경우 수급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참여 활동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3-7]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참여를 규정하는 농민수당 조례의 예

지자체명	조례 내용	핵심 내용
충청남도 (농민회)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	마을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존
전라남도 (도청)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령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촌·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령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전라남도 (농민회, 민중당)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마을별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과 회의 및 공동실천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과 회의, 공동실천 활동 참여

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여부

1)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

■ 사전협의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26호, 협의와 조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제2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

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협의결과는 위원회 보고 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통보(시행일 2017. 12. 29)

■ 협의 없이 지급 시 패널티 부여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사업비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 이에 따라 농민수당 실시 예정인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침.

■ 「사회보장기본법(제26호)」에 대한 찬반 존재

- 「사회보장기본법(제26호)」에 근거해 지자체의 선심성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조정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해 자율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제한다는 비판도 있음.
-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끝에 서울시는 기준과 내용 완화 후 승인, 성남시는 전면 시행함.
-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보장기본법(제26호)」는 정책 조연 중심으로 운영: 동의/부동의에서 협상완료/재협의, 협의 제외 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예외 조항 포함 여부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인정액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일부 질병치료 비용,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소득(50%), 자활사업소득(30%), 장애인, 노인, 대학생 근로사업소득(30%),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농업직불금
- 현재 농업직불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예외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도 이와 같은 기준 적용 기대

■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이 복지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농정제도’라고 주장

-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도이자 개방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농정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하지만 강진군, 해남군, 광양시, 함평군 등 지자체는 농민수당 제도 실시 이전에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한 제도 실시를 준비함.

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결과: 강진군 사례

■ 신설제도: 강진군 논밭경영안정자금

■ 신청 시기: 2019. 4. 4 / 협의 결과 통보: 2019. 5. 3

■ 협의 결과: 협의완료(조건부)

- 강진군의 협의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늦어지자 강진군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협의 결과 회신을 요청하면서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농업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함.

■ 주요 검토 의견: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연계해 시범 추진

-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2020년(안))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 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함.

강진군 논밭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결과

□ 검토 결과: 협의 완료(조건부)

□ 검토 의견

-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

- 다만, 농가소득이 많은 가구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될 경우 소득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수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

* 또한 사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 대응 필요

- 현재로선 중앙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없으나, 공익형 직불제 시행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복 문제 제기 가능

* 특히, 전남도의 유사사업 도입 시 제도 간 중복 제외 필요

- 연간 총 소요 예산이 자체 농업분야 예산 대비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재정 부담이 상당하므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소득수준별 또는 경영규모별 지원수준의 조정 등

-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20년(안))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아래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여부 판단

* ① 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결과

- ※ 단, 현재 지자체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농업인구 유지율,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농가소득 향상, 만족도 등)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로 수정·보완하여 적용
- ②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수준별 농가/비농가 현황, 경영규모별 농가소득 수준 등 객관적 통계 자료
 - ③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 이전·이후 재정여건 변화 및 타 사회복지 또는 농어촌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등 현황
 - ④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간 통합·조정 필요성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1) 개념 정립: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

■ 농민수당: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정책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향상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약 166조(농진청, 2012)

■ 농민기본소득: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농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

-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 우선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는 농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따름.
-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칙을 따름.

■ 농민기본소득의 개념을 바탕으로 농민수당 추진

- 충남도가 농민기본소득 개념으로 할지 농민수당 개념으로 할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농민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농민수당의 개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지급 방식: 농가 단위 또는 농민 단위

■ 지자체에서는 농가 단위 지급 선호

- 지자체에서는 농가통계 사용의 용이, 예산의 부족, 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이유로 농민수당의 농가 단위 지급을 선호함.
- 현재 전남도, 전북도, 강진군, 해남군 등 농민수당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중인

지자체 대부분은 농가단위로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 기본소득 연구자, 농민단체, 특히 여성농민단체는 개별 지급을 요구

- 기본소득의 원칙 중의 하나는 지급 단위의 개별성임.
- 개별성은 개개인에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존엄성, 권리,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임.
- 따라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도 농민에 대한 존엄성, 권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그동안 농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여성농민의 권리 시장을 위해 개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함.

■ 그 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지급 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화가 지역 안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농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비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오히려 그들을 농업·농촌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우호세력으로 만들 수 있음.

2. 시사점

1)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농정 추진

■ 보편적 권리 보장을 통해 사람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실현하는 정책임.
- 규모화, 기계화,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소수가 혜택 받는 농정에서 벗어나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영세중소농을 살리는 농정임.

■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

- 농민기본소득은 도농 간 불평등, 농가 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임.
- 농가 내 부익부 빈익빈을 문제를 심화시키는 농업직불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임.

2) 새로운 농업·농민정책

■ 새로운 농업·농민정책

- 농민기본소득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농업정책임.
-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가치)에 대해 차별적 보상이 아니라 농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농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으로 농민의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민기본소득은 복지적 성격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음.
- 결국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에서는 농업정책이지만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희생되어온 농업인에 대한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복지 정책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음.

■ 소농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농업정책

- 면적을 중심으로 한 유럽 특성의 농업직불제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은 소농의 가치가 증시되는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농업정책임.
- 소농은 농업과 생태계,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고유한 전통문화와 공동체문화를 계승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

3) 농민과 지역을 살리는 상생정책

■ 농업은 지역산업의 근간이며 농민은 지역의 주체

- 오늘날 많은 지역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업적 특성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은 농업이 지역의 근간산업임.
- 농업이 지역의 근간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농민은 지역의 핵심 주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민은 정책적으로 배제되고 차별을 받아옴.
-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지역의 주체로 다시 내세우는 한편 지역의 근간산업인 농업을 살리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화폐를 통해 농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순환경제 실현

- 그동안 농업·농촌정책이 직접보조보다는 간접보조 방식으로 투입되다 보니 보조금 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이 농업과 농촌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재화의 대부분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옴.

- 이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에게 지역화폐(상품권)를 지급하면 지역 내 순환경제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
-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비농업인으로부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지지 획득 가능

제4장

타 지자체 사례 및 유사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타 지자체 사례

제2절 유사 정책 사례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타 지자체 사례 및 유사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타 지자체 사례

1. 전남도(2019년 7월 25일 도-시군 합의 내용 기준)

1) 실시 배경 및 과정

■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 사항

- 김영록 도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 후보 시절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
- 도지사 당선 후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명칭 및 대상 등에 관한 논쟁 발생
- 전남도에서는 전남도의 취약계층 즉, 청년, 농어민,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 하지만 농민단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지급 대상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어민에 한정된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적극 요구

■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위’를 구성해 시행안 마련

- 전남도는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의 일환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위’(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논의 시작
- 사업의 명칭, 지급 대상과 범위, 지급액, 실시 방법 등을 논의
- 한편으로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통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계획안을 마련
- 이러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남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 수렴

■ 2019년 7월 25일, 농어민 공익수당 실시 합의

- 전남도는 22개 시·군 단체장, 농민단체 간 농어민 공익수당 실시 합의
- 전남도 여성농민회 측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2년까지는 농업경영체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023년부터는 개별 농어민 지급에 합의

■ 도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통과

- 2019년 9월 30일,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
- 농민단체에서는 조례안 통과 전부터 개별 농어민 단위 공익수당 지급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지난 9월 30일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 반대함



[그림 4-1]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시군 협약식
(전남도청, 07.25) 사진(농어민신문)

2)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시작은 농어업경영체로, 이후 개별 농어민 단위 지급으로 전환

- 농어업 경영체 243,122개(농업 219,495개, 어업 23,675개)
- 농어업인: 374,727명(농업 323,967명, 어업 50,760명)
- 2020-22년 농어업경영체 단위 지급, 2023년부터 개별 농어민 단위 지급 노력

■ 농어가당 연간 60만 원으로 시작

-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연간 60만 원의 공익수당 지급
- 이후 2023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 개인에게 연간 60만 원 지급

3) 재정분담 비율 및 지급액 통일화 방안

■ 도·시·군 간 재정분담은 4:6으로 합의

- 시군 지자체에서는 도·시·군 간 분담비율을 5:5로 요구했으나 전남도에서는 재정

부담의 이유로 4:6으로 요구

- 전남도지사와 시·군 대표(담양군수, 곡성군수, 나주시장) 간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분담 비율을 4:6으로 결정
- 전남도가 2020년부터 농어가당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경우 전체 예산은 1,459억 원이 소요
- 도-시·군 간 재정 분담을 4:6으로 할 경우 전남도는 584억 원, 시·군은 875억 원의 예산이 소요

■ 2020년부터 시·군 통일 지급

- 전남도와 시·군 간 합의에 따라 2020년부터 전남도내 22개 시·군 모두에서 농가당 60만 원 지급
- 2019년까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 강진 70만 원, 함평 120만 원
- 2018년부터 70만 원을 지급했던 강진군의 경우 2020년부터는 60만 원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농민들은 기존 농민수당(논밭 경영안정자금) 70만 원 지급을 주장

4) 지급 방법

■ 연 2회, 지역화폐 + 자율

-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도) + 자율(시·군) 병행 지급

2. 전북도(2019년 7월 1일 도-시군 합의 내용 기준)

1) 배경 및 과정

■ 민선 7기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 사항

-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의 농민수당 공약 사항으로 추진

■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TF’ 구성을 통해 추진

- 전북도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TF’를 구성하고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
-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를 통해 도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진행

■ 2019년 7월 1일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합의

- 전라북도는 도청과 14개 시·군, 농민단체가 함께 2020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으로 연간 60만원 지급에 합의함
-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지급방식과 지급액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구함



[그림 4-2]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도-시군 협약식
(전북도청, 07.01) 사진(전북도청)

■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통과

- 2019년 9월 26일, 전북도의회는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농민 공익수당)>을 통과시킴
-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농민 개별 지급과 지급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2)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로 한정
- 단, 축산농가는 제외: 축산업은 최근 규모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제외

■ 농가당 60만 원 지급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60만 원 지급
- 농가당 60만 원 지급 시 전체 소요 예산은 613억 원

3) 재정분담 및 지급 방식

■ 도-시·군 간 재정분담은 4:6

- 도-시·군 간 재정분담을 4:6으로 할 경우 도비는 245억 원, 시·군비는 368억 원 소요

■ 현금과 지역화폐 병행지급

- 지급 방식은 연1회, 현금(도) 50% + 지역화폐(시·군) 50% 병행 지급

4) 지급 조건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이행 조건 부여

-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 이행 조건을 통과한 농가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행 점검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존재

3. 전남 강진군

1) 배경 및 과정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

- 2017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농민회에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함.
- 또한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훨씬 어렵고 품이 많이 가지만 직불금 액수는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 특히 면적이 큰 대농, 농업법인 위주의 농업 지원 정책이 집중되다 보니 중소영세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였음.

■ 군수와 농민회의 합의로 추진

- 쌀값 하락, 밭작물 차별, 영세소농가의 어려움 등을 타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농민수당 성격의 '논밭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함.
- 지원근거: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2017년 당시 농민회의 강한 요구, 군수의 정책 결단으로 시작하게 됨.

2) 지급 대상 및 지급액: 2018년 기준

■ 지급대상: 6,938농가

-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로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논+밭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 지급액: 48억 5,590만 원(농가당 70만 원, 현금 1/2, 상품권 1/2)

- 공무원 및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비농업인 제외
- 현금과 상품권을 각각 절반씩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선택권 보장

■ 지급 방식: 강진사랑상품권 배부: 2018년 4월 10일부터 농가 수령

- 명단 통보(군→읍면, 농협) → 상품권 수령(농가 → 지역농협)
- 지역농협에서는 지급 대상 명단 정보를 확인하고 경영주에 지급

3) 상품권 사용 결과

■ 수령농가: 6,540농가

- 미수령 농가: 336농가(2018. 5. 24 기준)
- 미수령 사유: 장기 출타, 입원, 주소지와 실거주지 상이 등

■ 주요 사용처는 농협

- 1)농협(농자재, 유류, 마트), 2)개인 농자재업체, 3)옷가게, 4)식당 순
- 농협에 편중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강진군에서는 자체 홍보를 통해 상품권의 고른 사용을 독려하고 있음.

■ 부당사용 사례 발생

- 고령농가에서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장 등에게 상품권과 현금 교환 요구 (예: 1:1 또는 상품권 35만 원을 현금 30만 원으로 교환)
- 마트 등에서 5만 원권 상품권으로 2만 원 사용 후 3만 원 현금 지급 요구
- 취급업소의 상품권 환전 수수료(1%) 차감, 천 원 미만 잔액 미지급 등

4) 개선 방향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상품권 배부 시기 조정

- 농협, 농업인단체, 상가번영회 등과 배포 시기 사전 협의 후 농가에 지급

- 상품권의 사용 방법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업체 간 자율경쟁 유도
- 상품권 취급업소 관리감독 강화
- 수수료 부당전가 및 잔액 정산 부실 사례 등 적발 시 취급 업소 해제 예정

4. 전남 해남군

1) 배경 및 과정

- 농민단체 요구와 단체장의 결정으로 시작
 - 민선 7기 지자체 선거 당시 농민단체는 농가소득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공약 요구
 - 당시 명현관 군수 후보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민수당 도입을 공약함.
- 농민수당 최초 실현
 - 해남군은 농가의 경영 형태와 경작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임. 또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 (2018. 12. 26)함.
 - 강진군은 해남군보다 1년 앞서서 농민수당(논밭 경영안정자금)을 실시했으나 지급 대상 범위를 농작물재배업에 국한했으며 경작 면적도 3ha 미만 농가로 한정했기 때문에 해남군보다 주목을 덜 받음.



[그림 4-3]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및 농민수당 지급



[그림 4-4] 해남군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 홍보물 및 상품권

2) 지급 대상 및 지급액: 2019년 기준

■ 지급대상: 15,212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종사자
- 2019년 상반기 신청 결과, 전체 15,212농가 가운데 농민수당 신청농가는 13,688농가로 전체의 90.0%가 신청함.
- 이 가운데 자격조건이 안 되는 농가를 제외해 최종적으로 12,487농가가 선정됨. 이는 신청농가의 91.2%가 해당됨.

■ 지급액: 약 75억 원(추정)(농가당 60만 원, 상품권 100%)

- 2019년 1년 농민수당 예산은 총 90억 원임.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상반기 신청결과 최종적으로 12,487농가가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소요 예산은 37억 4,610만 원이 됨.

참고: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분석

☐ 전체 제외 대상자: 1,201명

☐ 제외 사유 및 대상 수

① 주소 요건 미 충족	156명	② 농업경영체 등록 미충족	397명
③ 실제 미 경작 농업인	328명	④ 실제 한세대 중복 신청	109명
⑤ 농외소득 5천만 원 이상	56명	⑥ 보조금 부정수급	1명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4명	⑧ 산지관리법 위반	7명
⑨ 복지급여 대상	115명	⑩ 읍면 간 중복 신청	13명
⑪ 기타(사망 말소, 법인 신청 등)	15명		

3) 지급 대상 선정 시 확인사항

■ 주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민수당 지급 시까지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2018년 4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승계자 별도 확인 등)
- 실제 경작 및 사육하는 농업인 여부 확인
 - 직불금, 가축사육업 등록 등 공부 확인 또는 전년도 영농기록 확인 등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중복신청 여부 확인
 - 예: 실제 부부이면서 2명 모두 신청한 경우 등
-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조례 제14조 / 신청 전년도 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 복지급여 대상자 포함 시 지급동의서 징구(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본인 경감 의료비 지원 등
- 읍·면 간 중복 신청 여부 확인
 - 예: 동일인이 주소지(해남읍)와 농지소재지(옥천면) 2개 읍면에 신청한 경우 등

4) 개선 방향

- 어업인 포함은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과 연계 추진
 - 해남지역 어업인 또한 어민수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민수당은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과 연계 추진 예정
- 농지·산지 관련 불법행위자 지급 제외 사항은 재검토 필요
 -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서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농지·산지 관련한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반기 신규 신청자 소급 지원
 - 해남군 농민수당이 올해 처음 실시된 점을 감안해 금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60만 원)
 - 상반기 신청자는 지급대상 중 주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 후 지급(30만 원)

5. 기타 지자체

1) 광역 자치단체

■ 전남, 전북, 충남 등은 2019년 전면 도입, 그 외 지역은 현재 논의 중

- 광주광역시: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 도입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추진
- 강원도 : 2020년부터 소농·고령농업인(65세) 우선 농민수당 도입 준비 중
- 경기도 : 이천, 여주, 안성, 양평에 우선 도입 후 확산 계획
- 경남도 :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주도로 도입 요구
- 경북도 : 농민단체(전농), 정당(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논의 중
- 전남도 :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예정
- 전북도 : 2020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도입 예정
- 충청남도 :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또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논의 중
- 충청북도 : 농민수당 개념의 농민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위한 제도 마련 중
- 제주도 : 농민회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 논의 중

■ 경기도, 개별 단위 농민기본소득 단계별 도입

- 경기도는 기본소득 원칙에 맞게 개별단위 농민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임
- 따라서 2020년에는 6개 지자체, 2021년에는 15개 지자체, 2020년에는 31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임
- 농민기본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하나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2) 기초 자치단체

■ 전남

- 강원 : 춘천, 양구, 홍천, 정선
- 경기 : 여주, 이천, 안성, 양평, 평택, 가평, 포천
- 경남 : 산청, 의령, 양산, 거창, 함안
- 경북 : 봉화, 상주, 청송, 성주, 영천, 안동
- 전남 : 2020년 22개 전 지자체 도입, 강진(2018), 해남, 화순, 함평(2019)

- 전북 : 2020년 14개 전 지자체 도입, 고창(2019)
 - 충남 : 2020년 15개 전 지자체 도입, 부여(2018)
 - 충북 : 청주, 옥천, 단양
- * 굵은 색 표시 지자체는 도입 확정이거나 실시 중인 지역이고 나머지는 논의지역임. 현재까지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실시 중에 있거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제2절 유사 정책 사례

1. 충청도 농업환경실천사업

1) 사업 개요: 2018년 기준

■ 도입 경위: 맞춤형 비료와 벼 경영안정직불금을 통합해 지급

- 충청도는 그동안 농가에 지급되었던 맞춤형비료('02 ~ '16) 지원사업과 벼 재배 농가에 지급했던 경영안정직불금('11 ~ '16) 지원 사업을 충청도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통합함.
- 충청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은 2016년 8월 충청도와 9개 주요 농민단체 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원 대상: 141,762호

- 지원 대상은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가는 2018년 기준 141,762호임.

■ 사업비: 총 522억 원(2018년 기준)

- 총 사업비 552억 원 중 도비 156.6억 원, 시군비 365.4억 원임
- 도와 시군 사업비 비율은 3:7임.

■ 실천 과제: 비료 적정시비 등

- 본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실천 과제로 질소질 비료의 적정 시비를 부여함. 이는 의무 실천이라기보다는 농가의 자율적 실천 사업임.
- 2019년에는 추가 사업비를 책정해 벼짚환원사업을 시작함. 농가는 3년에 한번 벼짚을 본인의 논에 환원할 경우 ha당 일정한 사업비를 보상 받는 제도임.
-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벼짚환원사업으로 인한 차등지원보다는 모든 농가에 균등 지급하는 기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제안해 벼짚환원사업비 전액을 농업환경실천사업 비로 통합해 지급키로 함.

■ 지원 단가: 농가당 36만 8천 원(2018년 기준)

- 비료 적정시비에 관한 마을별 협약사항 자율실천 확인 후 농가별 지급

2) 사업 성과

■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확대

- 행정기관과 마을 간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협약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
- '17년 138,683농가에서 '18년 141,762농가로 확대

■ 농가당 지원 금액 증가

-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 증가
- '17년 35만 원에서 '18년 36만 8천 원으로 증가
- '19년에는 당초 39만 원이었으나 벚짚환원사업비를 농가당 균등 지급으로 전환해 47만 원이 지급될 예정임.

[표 4-1]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 소요 예산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비고
				당초	변경	
농가당 지원액		350천원	368천원	390천원	470천원	
사업비	계	485억원	522억원	560억원	667억원	107억원(2019년 벚짚환원사업비)
	도비	145	157	168	200	
	시군비	340	365	392	467	

자료: 충남도청 식량원예과 내부 자료

■ 화학비료 판매량 감소

-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 시작 전인 '16년 충남도내 화학비료 판매량은 전체 140,789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128,166톤으로 전년대비 8.6% 감소했으며, 다시 '18년에는 122,240톤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함
- 화학비료 시비량을 보면, '16년 1ha당 643.5kg에서 '17년 597.2kg으로 46.3kg 감소했으며, 다시 '18년 573.2kg으로 24kg 감소함.

2. 농식품부 공익형 농업직불제

1) 사업 배경 및 경과

■ 쌀 생산 과잉,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해결책 제시

- 차기(2018 ~ 22) 쌀 목표가격의 변경과 함께 쌀 과잉 생산, 그리고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농업직불제의 근본 개혁 추진

■ 쌀 목표가격 변경과 연계한 직불제 개편 논의

-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변경을 위한 동의안(188,192원/80kg)을 국회에 제출하며 직불제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도 병행할 것을 제안(2018. 11. 2)

■ 정부와 여당 간 협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계획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차기 쌀 목표가격 설정을 계기로 쌀 생산 과잉과 농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업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함.(2018. 11. 8)

2) 주요 내용

■ 논, 밭 구분 없이 동일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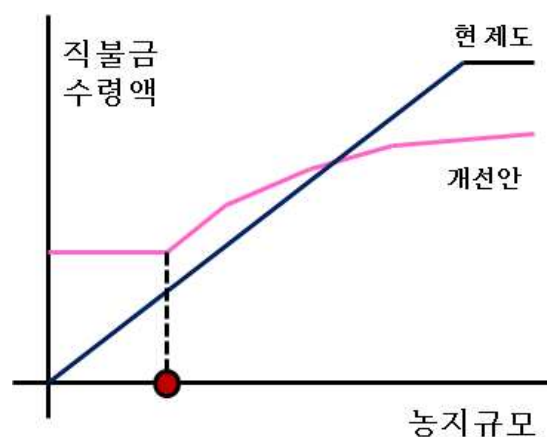
- 쌀 직불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
- 생산과 가격을 연계하지 않음.

■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정 금액 지급

- 경영 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지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직불 형태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
- 현재 정부안은 0.5ha 미만 농가에 대해 농가당 연간 100만 원 지급

■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 의무 강화

-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균등하게 직불금을 지급하되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 의무 강화



[그림 4-5] 공익형 직불제 실시 모델

3) 기대 효과

■ 면적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의 직불제 개편

- 기존 면적 중심의 농업직불제에서 사람중심의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소득 재분배에 기여

■ 쌀 수급 균형 회복 및 곡물 자급률 증대

- 쌀 생산면적 감소로 쌀 수급 균형을 회복
- 밭작물 재배 여건 개선 및 재배 확대로 곡물자급률 향상
-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 가능성 증대

■ 벼 농가와 밭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증대로 논·밭 작물 재배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현재 논농업 고정 직불금은 1ha당 100만 원인데 반해, 밭고정 직불금은 1ha당 50만 원으로 논농업 직불금에 비해 절반 수준임.

■ 영세 소농의 소득 안정 도모

-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기본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안정 도모

■ 공익형 직불제 규모가 최소 2.4조 원일 때 대다수 농가에 혜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의 규모가 현재와 같이 1.8조 원 규모일 때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더라도 0.5ha 미만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약 2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농가는 수령액이 감소함.
- 공익형 직불제 예산 규모가 2.4조 원일 경우, 4ha 미만 농가는 혜택을 받지만 그 이상의 농지 규모를 가진 농가는 수령액이 감소함.
-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최소 3.01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함.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 개편 전보다 수량예감소

재정규모별 직불제 개편효과 단위:톤

구분		개편 전 (2017년)	재정규모별 평균 수량예					
			1.35조	1.59조	1.83조	2.13조	2.4조	3.01조
0.5ha 미만	논	43만						
	밭	11만	70만	80만	90만	100만	100만	120만
	논·밭	40만						
0.5~1ha	논	112만	87만	109만	119만	141만	163만	196만
	밭	34만	53만	66만	73만	86만	99만	119만
	논·밭	83만	76만	95만	105만	124만	143만	171만
1~2ha	논	225만	166만	198만	231만	274만	317만	376만
	밭	68만	98만	117만	136만	162만	187만	222만
	논·밭	168만	146만	175만	203만	241만	278만	331만
2~4ha	논	466만	296만	339만	414만	489만	576만	712만
	밭	134만	167만	192만	234만	288만	326만	401만
	논·밭	362만	263만	303만	368만	442만	511만	627만
4~30ha	논	1351만	609만	725만	822만	971만	1202만	1700만
	밭	253만	266만	312만	367만	462만	522만	701만
	논·밭	1029만	544만	644만	738만	875만	1071만	1490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4-6] 재정규모별 직불제 개편 효과
자료: 농민신문 2019. 3. 1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1) 광역지자체 실시 계획 비교

■ 전남도: 어민을 포함

- 전남도는 도와 22개 시·군이 합의해 2020년부터 도내 전역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실시 예정
- 전남도는 어민 인구가 많은 만큼 농민과 어민을 포함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실시
- 2020년부터 농어가당 60만 원의 공익수당 지급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개별 지급을 약속함.
- 강진군, 해남군, 화순군, 함평군처럼 2020년 이전 실시 지자체는 도의 실시 조례에 맞춰 실시하기로 합의함.

■ 전북도: 축산농민 제외

- 전북도는 14개 시·군 단체장과 협의해 2020년부터 일괄 도입키로 합의함.
- 지급대상에서 축산업은 공익가치보다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많아 농민 공익수당에서 제외함.
-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조건으로 논·밭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부여하고 미이행지 지급 중지 및 환수 조건을 둠
- 하지만 이행점검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표 4-2] 광역지자체 농민수당 실시 계획 비교

비교	전남도	전북도
명칭	농어민 공익수당	농민 공익수당
실시년도	2020년	2020년
실시 지역	도내 22개 지자체 전역	도내 14개 지자체 전역
지급 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주 - 경종업, 축산업, 임업, 어업 포함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주 - 경종업 - 축산업은 배제
금액	농어가당 60만 원	농가당 60만원

소요예산 (2020)	1,459억 원 (도비 875억 원, 시군비 584억 원)	613억 원 (도비 245억 원, 시군비 368억 원)
도-시군 분담비율	4:6	4:6
지급 시기 및 방법	연 2회 도-전액 지역화폐, 시군-자율(대부분 상품권 선호)	연 1회 현금 50%, 지역화폐 50%

2) 기초지자체 실시 계획 비교

■ 강진군: 농민수당의 토대가 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논밭 구분 없이 3ha 미만 모든 농가에게 연간 7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 즉 농민수당을 지급
- 최초 현금 50%,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50%를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는 지역화폐로 100%로 지급

■ 해남군: 최초 농민수당 실시

- 논밭 구분은 물론 영농 규모, 영농 형태에 관계없이 군내 모든 농가에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
- 100% 지역화폐(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군내 농협, 축협, 임협, 수협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함.

■ 함평군: 처음으로 어가를 포함한 농어가수당 지급

- 함평군은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어가를 포함한 농어가수당 지급
- 기초지자체로서는 가장 많은 액수는 농어가당 연간 120만 원의 수당 지급

■ 부여군: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비에 추가해 지급

- 농가당 약 36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에 14만 원을 추가해 연가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
- 2021년부터는 농어민 개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

[표 4-3] 기초지자체 농민수당 실시(계획) 비교

비교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부여군
명칭	논밭경영안전자금	농민수당	농어가수당	농민수당
실시년도	2018	2019	2019	2020
지급 대상	경종업 종사자	경종업, 축산업, 임업 종사자	경종업, 축산업, 임업, 어업 종사자	경종업, 축산업, 임업, 어업 종사자
금액(연간)	농기당 70만 원	농기당 60만 원	농어가당 120만 원	농어가당 14만 원
지급 시기 및 방법	연 1회 지역화폐	연 2회 지역화폐	연 2회 지역화폐	연 1 또는 2회 지역화폐
위원회 운영	없음	위원장 부군수 위원: 15명 주요사항 심의 의결	위원장 부군수 위원: 15명 주요사항 심의 의결	위원장 부군수 위원: 15명 주요사항 심의 의결

2. 유사 정책 비교

1) 농가소득 안정, 생태·환경 보존 도모

■ 세 유사정책은 모두 농업인 소득 보장과 생태·환경 보존 등을 목적으로 추진

-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 공익형 직불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모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농업환경 개선, 생태·환경 보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가 내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

-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 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을 하후 상박(下厚上薄), 즉, 면적이 적은 농가에게는 많이 지급하고 면적이 많은 농가에게는 덜 지급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
- 농민기본소득은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업인에 균등한 지급을 지향하고 있어 농가 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행정단위별 특성 다양, 이후 통합 가능성 존재

■ 행정단위별 다른 특성의 농민수당 혹은 이와 유사 정책 추진

- 충청도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형태의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실시
- 정부(농식품부)는 기존 농업직불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도입

■ 향후 어느 정도 통합 가능성 존재

- 세 정책이 농업인 소득보장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생태·환경과 공익적 기능 유지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정책이 하나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일방적인 제도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 각 행정단위별 시행 경험과 개선을 통해 점차 하나의 정책으로 수렴될 것으로 판단됨.

[표 4-4] 농민수당 유사 정책 비교

비교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	공익형 직불제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목적	농업인 소득보장 농업환경 개선 (화학비료 경감 사용)	쌀 위주 농정 탈피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생태·환경 보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증진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농민의 기본권 보장
주체	충남도+각 시군	농식품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작 연도	2017년	2020년 예정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 시작 2020년부터 광역지자체로 확산
금액(연간)	47만 원 (2019년 예상)	0.5ha미만 농가에게 균등하 게 100만원 지급. 그 이상 은 점증 지급(정부안)	농가당 연간 60~120만원
지급 방식	농가당 균등 지급	일정 규모 이하(0.5ha) 균 등 지급 그 이상은 비례 지급	농가당 균등 지급 (일부 지자체 농민당 균등 지급 준비)
지급 형태	현금	현금	지역화폐 (일부 현금)
향후 전망 및 관건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도 입 시 개편 예상	국회 관련법 통과 시 가능 기재부 예산(2.4조원) 지원 시 가능	지자체 중심으로 계속 확산 농민 개별 지급 요구 확대

제5장

충남 농민기본소득 적정 금액 분석

제1절 타 지자체 금액 비교

제2절 충남 농민기본소득 소요 예산

제5장 농민기본소득 적정 금액 분석

제1절 타 지자체 금액 비교

1. 타 지자체 금액 현황 및 쟁점

1) 타 지자체 금액 현황

■ 각 지자체별로 농가당 60 ~ 120만 원까지 다양

-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의 농(어)민수당의 금액은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다양함.
- 부여군의 경우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의 지급액 36만 원에 14만 원을 추가하는 형태로 총 50만 원 안팎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임

■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

-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 예정인 농(어)민 수당은 대부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 강진군의 경우 2018년 첫 번째 시행 때 현금과 상품권을 절반씩 나눠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는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함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지역 내 순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농(어)민 수당에 대한 비농업인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방식임

2) 농민단체는 개별단위 지급 요구

■ 농민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업종사자 개인 단위 지급 요구

- 농민단체, 특히 여성농업인과 진보정당에서는 농어업경영체 단위 지급이 아니라 개별 농어민 단위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가 대부분 남성 위주인 상태에서 농(어)민수당 또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1인에게 지급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내 여성과 청년 등 가족 구성원은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농민 개별 지급이 기본소득 원칙에 부합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중요 원칙 중의 하나인 개별성을 강요하고 있어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에도 부합함.
- 여성농민단체와 진보 정당의 강한 요구로 의해 현재 전남도는 2023년부터, 부여군은 2012년부터 농어민 개별 지급을 협약한 상태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개별 지급을 고려하고 있음.

[표 5-1] 각 지자체 및 단체의 농(어)민수당 지급액 비교(연간)

비교		금액	실시 연도	특기사항
광역	전남도	60만원/농어가	2020	농어민 공익수당 2023년부터 농어민 개별 60만원
	전북도	60만원/농가	2020	농민 공익수당 2019.7.1. 협의했으나 농민단체 요구로 재협의 중
기초	강진군	70만원/농가	2018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명목 3ha 미만 농가 대상
	해남군	60만원/농가	2019	최초 농민수당
	광양군	60만원/농가	2019	
	화순군	120만원/농가	2019	
	함평군	120만원/농어가	2019	농어가 수당
	고창군	60만원/농가	2019	
	부여군	14만원/농가	2020	2021년부터 개별 지급
	안성시/여주시	60만원/농가	2020	
	청송군	60만원/농가	2020	당해연도 사용 상품권 지급
	봉화군	50만원/농가	2019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명목
농민단체 및 정당	A농민단체	240만원/농가	2020	월 20만원
	A정당	120만원/1인	2020	월 10만원

제2절 충남 농민기본소득 예산

1. 지급대상

-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혹은 등록 농업인
 - 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확인한 결과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지급하였고 지급 후 신규 등록자가 10% 증가하였으나 지급 탈락자의 비율 역시 10% 정도 되었다고 함
- 기존의 충남 해당 시군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의 증감율을 확인하여 향후 2년간 지급 대상자 추정
- 각 해당시군의 4년간의 평균 증감율을 적용한 결과 농업경영체는 당진시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인의 경우 모든 시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 2018~2020년 지급대상 선정 결과

시군	농업경영체				농업인			
	증감율	2018	2019	2020	증감율	2018	2019	2020
천안시	0.4%	17,464	17,540	17,616	-3.5%	24,695	23,822	22,981
공주시	0.7%	14,467	14,563	14,661	-2.9%	22,162	21,519	20,895
보령시	2.2%	12,430	12,699	12,974	-1.8%	18,856	18,523	18,196
아산시	0.4%	13,783	13,843	13,903	-1.0%	18,703	18,510	18,318
서산시	1.1%	16,746	16,925	17,105	-2.4%	25,579	24,974	24,383
논산시	1.3%	15,395	15,600	15,808	-1.3%	23,235	22,925	22,620
계룡시	3.9%	1,071	1,113	1,157	-0.7%	1,483	1,473	1,463
당진시	-0.2%	16,541	16,502	16,464	-3.9%	25,056	24,087	23,156
금산군	1.2%	10,239	10,365	10,493	-1.3%	15,678	15,469	15,263
부여군	1.0%	13,985	14,125	14,266	-1.6%	21,880	21,537	21,200
서천군	0.7%	9,241	9,303	9,365	-2.3%	14,171	13,840	13,517
청양군	2.2%	8,291	8,476	8,665	-0.4%	12,732	12,677	12,622
홍성군	0.9%	13,419	13,535	13,653	-2.1%	20,800	20,363	19,936
예산군	0.7%	13,511	13,601	13,692	-2.1%	20,527	20,103	19,687
태안군	0.9%	10,729	10,829	10,930	-1.7%	16,595	16,307	16,025
총 계	0.9%	187,312	188,998	190,699	-2.1%	282,152	276,133	270,24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2. 지급액

1) 지급액 분석

(1) 농업경영체 대상 지급

■ 도출된 지급대상을 활용하여 각 지급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 지급액은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여 1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를 적용하여 총 6구간을 살펴보았음

■ 계산 결과 최소금액인 농업경영체당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때 2018년에는 937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에는 954억 원 소요

■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때는 현재 수준에서는 1,873억 원, 2020년에는 1,907억 원 소요

■ 해가 지날수록 농업경영체의 증가에 따른 지급금액 증가

[표 5-3] 농업경영체 지급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2018	천안시	8,732	10,478	12,225	13,971	15,718	17,464
	공주시	7,234	8,680	10,127	11,574	13,020	14,467
	보령시	6,215	7,458	8,701	9,944	11,187	12,430
	아산시	6,892	8,270	9,648	11,026	12,405	13,783
	서산시	8,373	10,048	11,722	13,397	15,071	16,746
	논산시	7,698	9,237	10,777	12,316	13,856	15,395
	계룡시	536	643	750	857	964	1,071
	당진시	8,271	9,925	11,579	13,233	14,887	16,541
	금산군	5,120	6,143	7,167	8,191	9,215	10,239
	부여군	6,993	8,391	9,790	11,188	12,587	13,985
	서천군	4,621	5,545	6,469	7,393	8,317	9,241
	청양군	4,146	4,975	5,804	6,633	7,462	8,291
	홍성군	6,710	8,051	9,393	10,735	12,077	13,419
	예산군	6,756	8,107	9,458	10,809	12,160	13,511
	태안군	5,365	6,437	7,510	8,583	9,656	10,729
	총 계	93,656	112,387	131,118	149,850	168,581	187,312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2019	천안시	8,770	10,524	12,278	14,032	15,786	17,540
	공주시	7,282	8,738	10,194	11,650	13,107	14,563
	보령시	6,350	7,619	8,889	10,159	11,429	12,699
	아산시	6,922	8,306	9,690	11,074	12,459	13,843
	서산시	8,463	10,155	11,848	13,540	15,233	16,925
	논산시	7,800	9,360	10,920	12,480	14,040	15,600
	계룡시	557	668	779	890	1,002	1,113
	당진시	8,251	9,901	11,551	13,202	14,852	16,502
	금산군	5,183	6,219	7,256	8,292	9,329	10,365
	부여군	7,063	8,475	9,888	11,300	12,713	14,125
	서천군	4,652	5,582	6,512	7,442	8,373	9,303
	청양군	4,238	5,086	5,933	6,781	7,628	8,476
	홍성군	6,768	8,121	9,475	10,828	12,182	13,535
	예산군	6,801	8,161	9,521	10,881	12,241	13,601
	태안군	5,415	6,497	7,580	8,663	9,746	10,829
	총 계	94,499	113,399	132,299	151,198	170,098	188,998
2020	천안시	8,808	10,570	12,331	14,093	15,854	17,616
	공주시	7,331	8,797	10,263	11,729	13,195	14,661
	보령시	6,487	7,784	9,082	10,379	11,677	12,974
	아산시	6,952	8,342	9,732	11,122	12,513	13,903
	서산시	8,553	10,263	11,974	13,684	15,395	17,105
	논산시	7,904	9,485	11,066	12,646	14,227	15,808
	계룡시	579	694	810	926	1,041	1,157
	당진시	8,232	9,878	11,525	13,171	14,818	16,464
	금산군	5,247	6,296	7,345	8,394	9,444	10,493
	부여군	7,133	8,560	9,986	11,413	12,839	14,266
	서천군	4,683	5,619	6,556	7,492	8,429	9,365
	청양군	4,333	5,199	6,066	6,932	7,799	8,665
	홍성군	6,827	8,192	9,557	10,922	12,288	13,653
	예산군	6,846	8,215	9,584	10,954	12,323	13,692
	태안군	5,465	6,558	7,651	8,744	9,837	10,930
	총 계	95,350	114,419	133,489	152,559	171,629	190,699

(2) 농업인 개별 지급

-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가 아닌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가장 큰 예산은 현재 수준 100만 원 지급
 - 현재 수준의 농업인 개인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로 총 2,822억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적은 구간은 2020년 50만 원으로 지급 시 총 소요 예산 1,351억 원
 - 2018년 현재 수준에서는 총 지급금액이 1,411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60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가 지날수록 지급 총액이 증가하는 반면 농업인 대상의 경우 감소
 - 농업인 전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4] 농업인 개별 지급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2018	천안시	12,348	14,817	17,287	19,756	22,226	24,695
	공주시	11,081	13,297	15,513	17,730	19,946	22,162
	보령시	9,428	11,314	13,199	15,085	16,970	18,856
	아산시	9,352	11,222	13,092	14,962	16,833	18,703
	서산시	12,790	15,347	17,905	20,463	23,021	25,579
	논산시	11,618	13,941	16,265	18,588	20,912	23,235
	계룡시	742	890	1,038	1,186	1,335	1,483
	당진시	12,528	15,034	17,539	20,045	22,550	25,056
	금산군	7,839	9,407	10,975	12,542	14,110	15,678
	부여군	10,940	13,128	15,316	17,504	19,692	21,880
	서천군	7,086	8,503	9,920	11,337	12,754	14,171
	청양군	6,366	7,639	8,912	10,186	11,459	12,732
	홍성군	10,400	12,480	14,560	16,640	18,720	20,800
	예산군	10,264	12,316	14,369	16,422	18,474	20,527
	태안군	8,298	9,957	11,617	13,276	14,936	16,595
	총 계	141,076	169,291	197,506	225,722	253,937	282,152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2019	천안시	11,911	14,293	16,675	19,058	21,440	23,822
	공주시	10,760	12,911	15,063	17,215	19,367	21,519
	보령시	9,262	11,114	12,966	14,818	16,671	18,523
	아산시	9,255	11,106	12,957	14,808	16,659	18,510
	서산시	12,487	14,984	17,482	19,979	22,477	24,974
	논산시	11,463	13,755	16,048	18,340	20,633	22,925
	계룡시	737	884	1,031	1,178	1,326	1,473
	당진시	12,044	14,452	16,861	19,270	21,678	24,087
	금산군	7,735	9,281	10,828	12,375	13,922	15,469
	부여군	10,769	12,922	15,076	17,230	19,383	21,537
	서천군	6,920	8,304	9,688	11,072	12,456	13,840
	청양군	6,339	7,606	8,874	10,142	11,409	12,677
	홍성군	10,182	12,218	14,254	16,290	18,327	20,363
	예산군	10,052	12,062	14,072	16,082	18,093	20,103
	태안군	8,154	9,784	11,415	13,046	14,676	16,307
	총 계	138,067	165,680	193,293	220,906	248,520	276,133
2020	천안시	11,491	13,789	16,087	18,385	20,683	22,981
	공주시	10,448	12,537	14,627	16,716	18,806	20,895
	보령시	9,098	10,918	12,737	14,557	16,376	18,196
	아산시	9,159	10,991	12,823	14,654	16,486	18,318
	서산시	12,192	14,630	17,068	19,506	21,945	24,383
	논산시	11,310	13,572	15,834	18,096	20,358	22,620
	계룡시	732	878	1,024	1,170	1,317	1,463
	당진시	11,578	13,894	16,209	18,525	20,840	23,156
	금산군	7,632	9,158	10,684	12,210	13,737	15,263
	부여군	10,600	12,720	14,840	16,960	19,080	21,200
	서천군	6,759	8,110	9,462	10,814	12,165	13,517
	청양군	6,311	7,573	8,835	10,098	11,360	12,622
	홍성군	9,968	11,962	13,955	15,949	17,942	19,936
	예산군	9,844	11,812	13,781	15,750	17,718	19,687
	태안군	8,013	9,615	11,218	12,820	14,423	16,025
	총 계	135,121	162,145	189,169	216,194	243,218	270,242

(3) 할증 방식을 적용한 농업인 개별 지급

-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하되 경영체 내 농업인 수에 따라 차등지급함. 이때 차등지급 방식은 노인 기초연금과 같이 할증 방식 적용
- 충남도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1인이 52.8%로 전국의 1인 비율인 55.8%에 비해 적은 수치로 나타남
 - 전국 농업경영체에 비하여 2인과 3인이 등록된 수치가 충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치는 크지 않은 상태임

[표 5-5]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2018년)

전국 농업경영체			충남 농업경영체		
농업종사자 수	농업경영체 수	비율	농업종사자 수	농업경영체 수	비율
1인	924,990	55.8%	1인	98,924	52.8%
2인	687,919	41.5%	2인	82,592	44.1%
3인	40,972	2.5%	3인	5,170	2.8%
4인	4,531	0.3%	4인	599	0.3%
5인 이상	215	0.0%	5인 이상	27	0.0%
전체	1,658,627			187,31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지난 3년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만이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인 이상이 등록된 경영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임

[표 5-6] 충남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추이

년도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빈 도	2016	184,184	81,008	94,936	7,184	991	65
	2017	186,342	94,728	85,493	5,447	637	37
	2018	187,312	98,924	82,592	5,170	599	27
비 중	2016	100%	44.0%	51.5%	3.9%	0.5%	0.0%
	2017	100%	50.8%	45.9%	2.9%	0.3%	0.0%
	2018	100%	52.8%	44.1%	2.8%	0.3%	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충남도에서는 1인 농업경영체는 천안시가 가장 많았으며 2인 농업경영체는 서산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인과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는 시군당 100개가 안되는 미미한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표 5-7] 충남도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2018년)

시군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천안시	17,464	10,709	6,330	376	47	2
공주시	14,467	7,333	6,631	448	52	3
보령시	12,430	6,425	5,624	342	38	1
아산시	13,783	9,144	4,384	231	22	2
서산시	16,746	8,534	7,646	514	50	2
논산시	15,395	8,062	6,878	410	39	6
계룡시	1,071	676	379	15	1	—
당진시	16,541	8,636	7,360	482	61	2
금산군	10,239	5,209	4,670	315	42	3
부여군	13,985	6,596	6,926	422	39	2
서천군	9,241	4,569	4,442	203	26	1
청양군	8,291	4,202	3,778	271	39	1
홍성군	13,419	6,595	6,327	437	60	—
예산군	13,511	6,964	6,130	367	48	2
태안군	10,729	5,270	5,087	337	35	—
충남 전체	187,312	98,924	82,592	5,170	599	27

■ 농업경영체 종사자 수를 감안해 할증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모색될 수 있으나 그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음

• 할증의 방식은 다음 두 가지로 계상하였음

- 농업인 1인 : 농업인 2인 : 농업인 3인 이상 = 500천원 : 800천원 : 1,000천원
- 농업인 1인 : 농업인 2인 : 농업인 3인 이상 = 600천원 : 900천원 : 1,200천원

■ 계상결과 50만원 지급 후 할증하는 방식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9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60만원 지급 후 할증방식의 경우 총 1,406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 50만원 지급에 비해 19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됨

[표 5-8] 할증 방식에 따른 농민수당 총액(2018년 기준)

지급 방식	총액(원)
농업경영체 600,000원 일률 지급 시	112,387,200,000
농업인 600,000원 일률 지급 시	169,291,000,000
50만원 기본지급 후 할증방식	121,331,600,000
60만원 기본지급 후 할증방식	140,642,400,000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표 5-9] 50만원 기본지급 후 할증방식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1인	2인	3인 이상
지급액	—	5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천안시	10,844	5,355	5,064	425
공주시	9,474	3,667	5,305	503
보령시	8,093	3,213	4,499	381
아산시	8,334	4,572	3,507	255
서산시	10,950	4,267	6,117	566
논산시	9,988	4,031	5,502	455
계룡시	657	338	303	16
당진시	10,751	4,318	5,888	545
금산군	6,701	2,605	3,736	360
부여군	9,302	3,298	5,541	463
서천군	6,068	2,285	3,554	230
청양군	5,434	2,101	3,022	311
홍성군	8,856	3,298	5,062	497
예산군	8,803	3,482	4,904	417
태안군	7,077	2,635	4,070	372
충남 전체	121,332	49,462	66,074	5,796

[표 5-10] 60만원 기본지급 후 할증방식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1인	2인	3인 이상
지급액	—	600,000원	900,000원	1,200,000원
천안시	12,632	6,425	5,697	510
공주시	10,971	4,400	5,968	604
보령시	9,374	3,855	5,062	457
아산시	9,738	5,486	3,946	306
서산시	12,681	5,120	6,881	679
논산시	11,573	4,837	6,190	546
계룡시	766	406	341	19
당진시	12,460	5,182	6,624	654
금산군	7,760	3,125	4,203	432
부여군	10,747	3,958	6,233	556
서천군	7,015	2,741	3,998	276
청양군	6,295	2,521	3,400	373
홍성군	10,248	3,957	5,694	596
예산군	10,196	4,178	5,517	500
태안군	8,187	3,162	4,578	446
충남 전체	140,642	59,354	74,333	6,955

2) 지급방법에 따른 지급액 비교

[표 5-11] 충남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따른 지급액(201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농업경영체 지급		농업인 개별 지급		할증방식	
	500천원	600천원	500천원	600천원	1안(500천원 기준)	2안(600천원 기준)
충남 전체	93,656	112,387	141,076	169,291	121,332	140,642
천안시	8,732	10,478	12,348	14,817	10,844	12,632
공주시	7,234	8,680	11,081	13,297	9,474	10,971
보령시	6,215	7,458	9,428	11,314	8,093	9,374
아산시	6,892	8,270	9,352	11,222	8,334	9,738
서산시	8,373	10,048	12,790	15,347	10,950	12,681
논산시	7,698	9,237	11,618	13,941	9,988	11,573
계룡시	536	643	742	890	657	766
당진시	8,271	9,925	12,528	15,034	10,751	12,460
금산군	5,120	6,143	7,839	9,407	6,701	7,760
부여군	6,993	8,391	10,940	13,128	9,302	10,747
서천군	4,621	5,545	7,086	8,503	6,068	7,015
청양군	4,146	4,975	6,366	7,639	5,434	6,295
홍성군	6,710	8,051	10,400	12,480	8,856	10,248
예산군	6,756	8,107	10,264	12,316	8,803	10,196
태안군	5,365	6,437	8,298	9,957	7,077	8,187

2) 농업경영체 대상 지급시 충남도 및 시군별 분담비율

(1) 충남도 부담률 40%

-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에 있어 충남도 및 시군별 분담금액을 비율에 따라 분석하였음
- 충남도의 부담률을 40%로 시군의 부담률을 60%로 적용하여 농민기본소득 도입 시 발생하는 금액을 계산하였음
- 충남도의 부담률을 40%로 계산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2020년 농업경영체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로 부담금이 763억 원이었음
- 이 시점의 동일 지급금액일 경우 시군비의 경우 1,144억 원이며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군은 천안시로 107억 원이 소요됨

[표 5-12] 농업경영체 지급기준 충남도 및 시군별 부담금(충남도 40%)

(단위 : 백만원)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018	천안시	3,493	5,239	4,191	6,287	4,890	7,335	5,588	8,383	6,287	9,431	6,986	10,478
	공주시	2,893	4,340	3,472	5,208	4,051	6,076	4,629	6,944	5,208	7,812	5,787	8,680
	보령시	2,486	3,729	2,983	4,475	3,480	5,221	3,978	5,966	4,475	6,712	4,972	7,458
	아산시	2,757	4,135	3,308	4,962	3,859	5,789	4,411	6,616	4,962	7,443	5,513	8,270
	서산시	3,349	5,024	4,019	6,029	4,689	7,033	5,359	8,038	6,029	9,043	6,698	10,048
	논산시	3,079	4,619	3,695	5,542	4,311	6,466	4,926	7,390	5,542	8,313	6,158	9,237
	계룡시	214	321	257	386	300	450	343	514	386	578	428	643
	당진시	3,308	4,962	3,970	5,955	4,631	6,947	5,293	7,940	5,955	8,932	6,616	9,925
	금산군	2,048	3,072	2,457	3,686	2,867	4,300	3,276	4,915	3,686	5,529	4,096	6,143
	부여군	2,797	4,196	3,356	5,035	3,916	5,874	4,475	6,713	5,035	7,552	5,594	8,391
	서천군	1,848	2,772	2,218	3,327	2,587	3,881	2,957	4,436	3,327	4,990	3,696	5,545
	청양군	1,658	2,487	1,990	2,985	2,321	3,482	2,653	3,980	2,985	4,477	3,316	4,975
	홍성군	2,684	4,026	3,221	4,831	3,757	5,636	4,294	6,441	4,831	7,246	5,368	8,051
	예산군	2,702	4,053	3,243	4,864	3,783	5,675	4,324	6,485	4,864	7,296	5,404	8,107
	태안군	2,146	3,219	2,575	3,862	3,004	4,506	3,433	5,150	3,862	5,794	4,292	6,437
	총 계	37,462	56,194	44,955	67,432	52,447	78,671	59,940	89,910	67,432	101,148	74,925	112,387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019	천안시	3,508	5,262	4,210	6,314	4,911	7,367	5,613	8,419	6,314	9,472	7,016	10,524
	공주시	2,913	4,369	3,495	5,243	4,078	6,116	4,660	6,990	5,243	7,864	5,825	8,738
	보령시	2,540	3,810	3,048	4,572	3,556	5,334	4,064	6,096	4,572	6,857	5,080	7,619
	아산시	2,769	4,153	3,322	4,983	3,876	5,814	4,430	6,645	4,983	7,475	5,537	8,306
	서산시	3,385	5,078	4,062	6,093	4,739	7,109	5,416	8,124	6,093	9,140	6,770	10,155
	논산시	3,120	4,680	3,744	5,616	4,368	6,552	4,992	7,488	5,616	8,424	6,240	9,360
	계룡시	223	334	267	401	312	467	356	534	401	601	445	668
	당진시	3,300	4,951	3,960	5,941	4,621	6,931	5,281	7,921	5,941	8,911	6,601	9,901
	금산군	2,073	3,110	2,488	3,731	2,902	4,353	3,317	4,975	3,731	5,597	4,146	6,219
	부여군	2,825	4,238	3,390	5,085	3,955	5,933	4,520	6,780	5,085	7,628	5,650	8,475
	서천군	1,861	2,791	2,233	3,349	2,605	3,907	2,977	4,465	3,349	5,024	3,721	5,582
	청양군	1,695	2,543	2,034	3,051	2,373	3,560	2,712	4,068	3,051	4,577	3,390	5,086
	홍성군	2,707	4,061	3,248	4,873	3,790	5,685	4,331	6,497	4,873	7,309	5,414	8,121
	예산군	2,720	4,080	3,264	4,896	3,808	5,712	4,352	6,528	4,896	7,345	5,440	8,161
	태안군	2,166	3,249	2,599	3,898	3,032	4,548	3,465	5,198	3,898	5,848	4,332	6,497
	총 계	37,800	56,699	45,360	68,039	52,919	79,379	60,479	90,719	68,039	102,059	75,599	113,399
2020	천안시	3,523	5,285	4,228	6,342	4,932	7,399	5,637	8,456	6,342	9,513	7,046	10,570
	공주시	2,932	4,398	3,519	5,278	4,105	6,158	4,692	7,037	5,278	7,917	5,864	8,797
	보령시	2,595	3,892	3,114	4,671	3,633	5,449	4,152	6,228	4,671	7,006	5,190	7,784
	아산시	2,781	4,171	3,337	5,005	3,893	5,839	4,449	6,673	5,005	7,508	5,561	8,342
	서산시	3,421	5,132	4,105	6,158	4,789	7,184	5,474	8,210	6,158	9,237	6,842	10,263
	논산시	3,162	4,742	3,794	5,691	4,426	6,639	5,059	7,588	5,691	8,536	6,323	9,485
	계룡시	231	347	278	417	324	486	370	555	417	625	463	694
	당진시	3,293	4,939	3,951	5,927	4,610	6,915	5,268	7,903	5,927	8,891	6,586	9,878
	금산군	2,099	3,148	2,518	3,777	2,938	4,407	3,358	5,037	3,777	5,666	4,197	6,296
	부여군	2,853	4,280	3,424	5,136	3,994	5,992	4,565	6,848	5,136	7,704	5,706	8,560
	서천군	1,873	2,810	2,248	3,371	2,622	3,933	2,997	4,495	3,371	5,057	3,746	5,619
	청양군	1,733	2,600	2,080	3,119	2,426	3,639	2,773	4,159	3,119	4,679	3,466	5,199
	홍성군	2,731	4,096	3,277	4,915	3,823	5,734	4,369	6,553	4,915	7,373	5,461	8,192
	예산군	2,738	4,108	3,286	4,929	3,834	5,751	4,381	6,572	4,929	7,394	5,477	8,215
	태안군	2,186	3,279	2,623	3,935	3,060	4,591	3,498	5,246	3,935	5,902	4,372	6,558
	총 계	38,140	57,210	45,768	68,652	53,396	80,094	61,024	91,536	68,652	102,977	76,280	114,419

(2) 충남도 부담률 30%

- 충남도의 부담률을 경감시켜 30%를 적용한 결과 충남도의 예산 부담은 크게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40% 부담일 경우 500억 원을 넘어서는 구간이 2018년 70만 원 구간이었으나 30% 부담에서는 2018년 90만 원 구간으로 나타남
- 충남도의 최대 부담금은 2020년 100만 원일 경우 572억 원으로 40%일 경우보다 191억 원이었음
 - 시군의 경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구간이 2018년 80만 원 구간이었으며 100억 원을 넘는 시군이 발생하는 구간은 2018년 90만 원이었음
- 30%의 경우가 40%의 경우보다 충남도의 예산 부담률은 감소하나 시군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13] 농업경영체 지급기준 충남도 및 시군별 부담금(충남도 30%)

(단위 : 백만원)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018	천안시	2,620	6,112	3,144	7,335	3,667	8,557	4,191	9,780	4,715	11,002	5,239	12,225
	공주시	2,170	5,063	2,604	6,076	3,038	7,089	3,472	8,102	3,906	9,114	4,340	10,127
	보령시	1,865	4,351	2,237	5,221	2,610	6,091	2,983	6,961	3,356	7,831	3,729	8,701
	아산시	2,067	4,824	2,481	5,789	2,894	6,754	3,308	7,718	3,721	8,683	4,135	9,648
	서산시	2,512	5,861	3,014	7,033	3,517	8,206	4,019	9,378	4,521	10,550	5,024	11,722
	논산시	2,309	5,388	2,771	6,466	3,233	7,544	3,695	8,621	4,157	9,699	4,619	10,777
	계룡시	161	375	193	450	225	525	257	600	289	675	321	750
	당진시	2,481	5,789	2,977	6,947	3,474	8,105	3,970	9,263	4,466	10,421	4,962	11,579
	금산군	1,536	3,584	1,843	4,300	2,150	5,017	2,457	5,734	2,765	6,451	3,072	7,167
	부여군	2,098	4,895	2,517	5,874	2,937	6,853	3,356	7,832	3,776	8,811	4,196	9,790
	서천군	1,386	3,234	1,663	3,881	1,941	4,528	2,218	5,175	2,495	5,822	2,772	6,469
	청양군	1,244	2,902	1,492	3,482	1,741	4,063	1,990	4,643	2,239	5,223	2,487	5,804
	홍성군	2,013	4,697	2,415	5,636	2,818	6,575	3,221	7,515	3,623	8,454	4,026	9,393
	예산군	2,027	4,729	2,432	5,675	2,837	6,620	3,243	7,566	3,648	8,512	4,053	9,458
	태안군	1,609	3,755	1,931	4,506	2,253	5,257	2,575	6,008	2,897	6,759	3,219	7,510
	총 계	28,097	65,559	33,716	78,671	39,336	91,783	44,955	104,895	50,574	118,007	56,194	131,118

농민기본소득 적정 금액 분석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019	천안시	2,631	6,139	3,157	7,367	3,683	8,595	4,210	9,822	4,736	11,050	5,262	12,278
	공주시	2,184	5,097	2,621	6,116	3,058	7,136	3,495	8,155	3,932	9,175	4,369	10,194
	보령시	1,905	4,445	2,286	5,334	2,667	6,223	3,048	7,111	3,429	8,000	3,810	8,889
	아산시	2,076	4,845	2,492	5,814	2,907	6,783	3,322	7,752	3,738	8,721	4,153	9,690
	서산시	2,539	5,924	3,047	7,109	3,554	8,293	4,062	9,478	4,570	10,663	5,078	11,848
	논산시	2,340	5,460	2,808	6,552	3,276	7,644	3,744	8,736	4,212	9,828	4,680	10,920
	계룡시	167	390	200	467	234	545	267	623	301	701	334	779
	당진시	2,475	5,776	2,970	6,931	3,465	8,086	3,960	9,241	4,456	10,396	4,951	11,551
	금산군	1,555	3,628	1,866	4,353	2,177	5,079	2,488	5,804	2,799	6,530	3,110	7,256
	부여군	2,119	4,944	2,543	5,933	2,966	6,921	3,390	7,910	3,814	8,899	4,238	9,888
	서천군	1,395	3,256	1,675	3,907	1,954	4,558	2,233	5,210	2,512	5,861	2,791	6,512
	청양군	1,271	2,967	1,526	3,560	1,780	4,153	2,034	4,747	2,289	5,340	2,543	5,933
	홍성군	2,030	4,737	2,436	5,685	2,842	6,632	3,248	7,580	3,654	8,527	4,061	9,475
	예산군	2,040	4,760	2,448	5,712	2,856	6,664	3,264	7,617	3,672	8,569	4,080	9,521
	태안군	1,624	3,790	1,949	4,548	2,274	5,306	2,599	6,064	2,924	6,822	3,249	7,580
	총 계	28,350	66,149	34,020	79,379	39,690	92,609	45,360	105,839	51,029	119,069	56,699	132,299
2020	천안시	2,642	6,166	3,171	7,399	3,699	8,632	4,228	9,865	4,756	11,098	5,285	12,331
	공주시	2,199	5,131	2,639	6,158	3,079	7,184	3,519	8,210	3,958	9,236	4,398	10,263
	보령시	1,946	4,541	2,335	5,449	2,725	6,357	3,114	7,265	3,503	8,174	3,892	9,082
	아산시	2,085	4,866	2,503	5,839	2,920	6,812	3,337	7,786	3,754	8,759	4,171	9,732
	서산시	2,566	5,987	3,079	7,184	3,592	8,381	4,105	9,579	4,618	10,776	5,132	11,974
	논산시	2,371	5,533	2,845	6,639	3,320	7,746	3,794	8,852	4,268	9,959	4,742	11,066
	계룡시	174	405	208	486	243	567	278	648	312	729	347	810
	당진시	2,470	5,762	2,964	6,915	3,457	8,067	3,951	9,220	4,445	10,372	4,939	11,525
	금산군	1,574	3,673	1,889	4,407	2,204	5,142	2,518	5,876	2,833	6,611	3,148	7,345
	부여군	2,140	4,993	2,568	5,992	2,996	6,990	3,424	7,989	3,852	8,988	4,280	9,986
	서천군	1,405	3,278	1,686	3,933	1,967	4,589	2,248	5,244	2,529	5,900	2,810	6,556
	청양군	1,300	3,033	1,560	3,639	1,820	4,246	2,080	4,852	2,340	5,459	2,600	6,066
	홍성군	2,048	4,779	2,458	5,734	2,867	6,690	3,277	7,646	3,686	8,601	4,096	9,557
	예산군	2,054	4,792	2,465	5,751	2,875	6,709	3,286	7,668	3,697	8,626	4,108	9,584
	태안군	1,640	3,826	1,967	4,591	2,295	5,356	2,623	6,121	2,951	6,886	3,279	7,651
	총 계	28,605	66,745	34,326	80,094	40,047	93,443	45,768	106,791	51,489	120,140	57,210	133,489

3) 농업인 대상 지급시 충남도 및 시군별 분담비율

(1) 충남도 부담률 40%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충남도 및 시군의 예산을 계상하였음
- 농업인 대상일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구간이 2018년 100만 원의 구간으로 충남도는 1,129억 원을 부담하고 시군은 1,693억 원을 부담하여야 함
 - 이 시기 시군 중에서는 서산시가 153억 원을 부담하여 가장 큰 부담금을 보이고 있음
- 충남도를 기준으로 1,000억 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점은 2018년 80만 원의 수준부터로 나타남

[표 5-14] 농업인 지급기준 충남도 및 시군별 부담금(충남도 40%)

(단위 : 백만원)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018	천안시	4,939	7,409	5,927	8,890	6,915	10,372	7,902	11,854	8,890	13,335	9,878	14,817
	공주시	4,432	6,649	5,319	7,978	6,205	9,308	7,092	10,638	7,978	11,967	8,865	13,297
	보령시	3,771	5,657	4,525	6,788	5,280	7,920	6,034	9,051	6,788	10,182	7,542	11,314
	아산시	3,741	5,611	4,489	6,733	5,237	7,855	5,985	8,977	6,733	10,100	7,481	11,222
	서산시	5,116	7,674	6,139	9,208	7,162	10,743	8,185	12,278	9,208	13,813	10,232	15,347
	논산시	4,647	6,971	5,576	8,365	6,506	9,759	7,435	11,153	8,365	12,547	9,294	13,941
	계룡시	297	445	356	534	415	623	475	712	534	801	593	890
	당진시	5,011	7,517	6,013	9,020	7,016	10,524	8,018	12,027	9,020	13,530	10,022	15,034
	금산군	3,136	4,703	3,763	5,644	4,390	6,585	5,017	7,525	5,644	8,466	6,271	9,407
	부여군	4,376	6,564	5,251	7,877	6,126	9,190	7,002	10,502	7,877	11,815	8,752	13,128
	서천군	2,834	4,251	3,401	5,102	3,968	5,952	4,535	6,802	5,102	7,652	5,668	8,503
	청양군	2,546	3,820	3,056	4,584	3,565	5,347	4,074	6,111	4,584	6,875	5,093	7,639
	홍성군	4,160	6,240	4,992	7,488	5,824	8,736	6,656	9,984	7,488	11,232	8,320	12,480
	예산군	4,105	6,158	4,926	7,390	5,748	8,621	6,569	9,853	7,390	11,085	8,211	12,316
	태안군	3,319	4,979	3,983	5,974	4,647	6,970	5,310	7,966	5,974	8,961	6,638	9,957
	총 계	56,430	84,646	67,716	101,575	79,003	118,504	90,289	135,433	101,575	152,362	112,861	169,291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019	천안시	4,764	7,147	5,717	8,576	6,670	10,005	7,623	11,435	8,576	12,864	9,529	14,293
	공주시	4,304	6,456	5,165	7,747	6,025	9,038	6,886	10,329	7,747	11,620	8,608	12,911
	보령시	3,705	5,557	4,446	6,668	5,186	7,780	5,927	8,891	6,668	10,002	7,409	11,114
	아산시	3,702	5,553	4,442	6,664	5,183	7,774	5,923	8,885	6,664	9,995	7,404	11,106
	서산시	4,995	7,492	5,994	8,991	6,993	10,489	7,992	11,988	8,991	13,486	9,990	14,984
	논산시	4,585	6,878	5,502	8,253	6,419	9,629	7,336	11,004	8,253	12,380	9,170	13,755
	계룡시	295	442	354	530	412	619	471	707	530	795	589	884
	당진시	4,817	7,226	5,781	8,671	6,744	10,117	7,708	11,562	8,671	13,007	9,635	14,452
	금산군	3,094	4,641	3,713	5,569	4,331	6,497	4,950	7,425	5,569	8,353	6,188	9,281
	부여군	4,307	6,461	5,169	7,753	6,030	9,046	6,892	10,338	7,753	11,630	8,615	12,922
	서천군	2,768	4,152	3,322	4,982	3,875	5,813	4,429	6,643	4,982	7,474	5,536	8,304
	청양군	2,535	3,803	3,042	4,564	3,550	5,324	4,057	6,085	4,564	6,846	5,071	7,606
	홍성군	4,073	6,109	4,887	7,331	5,702	8,552	6,516	9,774	7,331	10,996	8,145	12,218
	예산군	4,021	6,031	4,825	7,237	5,629	8,443	6,433	9,649	7,237	10,856	8,041	12,062
	태안군	3,261	4,892	3,914	5,871	4,566	6,849	5,218	7,827	5,871	8,806	6,523	9,784
	총 계	55,227	82,840	66,272	99,408	77,317	115,976	88,363	132,544	99,408	149,112	110,453	165,680
2020	천안시	4,596	6,894	5,515	8,273	6,435	9,652	7,354	11,031	8,273	12,410	9,192	13,789
	공주시	4,179	6,269	5,015	7,522	5,851	8,776	6,686	10,030	7,522	11,283	8,358	12,537
	보령시	3,639	5,459	4,367	6,551	5,095	7,642	5,823	8,734	6,551	9,826	7,278	10,918
	아산시	3,664	5,495	4,396	6,594	5,129	7,694	5,862	8,793	6,594	9,892	7,327	10,991
	서산시	4,877	7,315	5,852	8,778	6,827	10,241	7,803	11,704	8,778	13,167	9,753	14,630
	논산시	4,524	6,786	5,429	8,143	6,334	9,500	7,238	10,858	8,143	12,215	9,048	13,572
	계룡시	293	439	351	527	410	614	468	702	527	790	585	878
	당진시	4,631	6,947	5,557	8,336	6,484	9,726	7,410	11,115	8,336	12,504	9,262	13,894
	금산군	3,053	4,579	3,663	5,495	4,274	6,410	4,884	7,326	5,495	8,242	6,105	9,158
	부여군	4,240	6,360	5,088	7,632	5,936	8,904	6,784	10,176	7,632	11,448	8,480	12,720
	서천군	2,703	4,055	3,244	4,866	3,785	5,677	4,325	6,488	4,866	7,299	5,407	8,110
	청양군	2,524	3,787	3,029	4,544	3,534	5,301	4,039	6,059	4,544	6,816	5,049	7,573
	홍성군	3,987	5,981	4,785	7,177	5,582	8,373	6,380	9,569	7,177	10,765	7,974	11,962
	예산군	3,937	5,906	4,725	7,087	5,512	8,269	6,300	9,450	7,087	10,631	7,875	11,812
	태안군	3,205	4,808	3,846	5,769	4,487	6,731	5,128	7,692	5,769	8,654	6,410	9,615
	총 계	54,048	81,073	64,858	97,287	75,668	113,502	86,477	129,716	97,287	145,931	108,097	162,145

(2) 충남도 부담률 30%

■ 충남도의 부담률을 30%로 경감하여 계상한 결과 충남도의 최대 부담금은 2018년 수준 100만 원 지급시 846억 원이었음

- 향후, 농업인의 감소로 인하여 매년 최대 부담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충남도의 40%의 부담과 달리 30%의 부담에서는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없었음

- 반면 시군의 경우 2018년 60만 원의 구간에서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개별 시군 단위에서는 100억 원을 넘어서는 시점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100만 원 지급 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함

[표 5-15] 농업인 지급기준 충남도 및 시군별 부담금(충남도 30%)

(단위 : 백만원)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018	천안시	3,704	8,643	4,445	10,372	5,186	12,101	5,927	13,829	6,668	15,558	7,409	17,287
	공주시	3,324	7,757	3,989	9,308	4,654	10,859	5,319	12,411	5,984	13,962	6,649	15,513
	보령시	2,828	6,600	3,394	7,920	3,960	9,239	4,525	10,559	5,091	11,879	5,657	13,199
	아산시	2,805	6,546	3,367	7,855	3,928	9,164	4,489	10,474	5,050	11,783	5,611	13,092
	서산시	3,837	8,953	4,604	10,743	5,372	12,534	6,139	14,324	6,906	16,115	7,674	17,905
	논산시	3,485	8,132	4,182	9,759	4,879	11,385	5,576	13,012	6,273	14,638	6,971	16,265
	계룡시	222	519	267	623	311	727	356	830	400	934	445	1,038
	당진시	3,758	8,770	4,510	10,524	5,262	12,277	6,013	14,031	6,765	15,785	7,517	17,539
	금산군	2,352	5,487	2,822	6,585	3,292	7,682	3,763	8,780	4,233	9,877	4,703	10,975
	부여군	3,282	7,658	3,938	9,190	4,595	10,721	5,251	12,253	5,908	13,784	6,564	15,316
	서천군	2,126	4,960	2,551	5,952	2,976	6,944	3,401	7,936	3,826	8,928	4,251	9,920
	청양군	1,910	4,456	2,292	5,347	2,674	6,239	3,056	7,130	3,438	8,021	3,820	8,912
	홍성군	3,120	7,280	3,744	8,736	4,368	10,192	4,992	11,648	5,616	13,104	6,240	14,560
	예산군	3,079	7,184	3,695	8,621	4,311	10,058	4,926	11,495	5,542	12,932	6,158	14,369
	태안군	2,489	5,808	2,987	6,970	3,485	8,132	3,983	9,293	4,481	10,455	4,979	11,617
총 계	42,323	98,753	50,787	118,504	59,252	138,254	67,716	158,005	76,181	177,756	84,646	197,506	

농민기본소득 적정 금액 분석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019	천안시	3,573	8,338	4,288	10,005	5,003	11,673	5,717	13,340	6,432	15,008	7,147	16,675
	공주시	3,228	7,532	3,873	9,038	4,519	10,544	5,165	12,051	5,810	13,557	6,456	15,063
	보령시	2,778	6,483	3,334	7,780	3,890	9,076	4,446	10,373	5,001	11,669	5,557	12,966
	아산시	2,777	6,479	3,332	7,774	3,887	9,070	4,442	10,366	4,998	11,661	5,553	12,957
	서산시	3,746	8,741	4,495	10,489	5,245	12,237	5,994	13,985	6,743	15,734	7,492	17,482
	논산시	3,439	8,024	4,127	9,629	4,814	11,233	5,502	12,838	6,190	14,443	6,878	16,048
	계룡시	221	516	265	619	309	722	354	825	398	928	442	1,031
	당진시	3,613	8,430	4,336	10,117	5,058	11,803	5,781	13,489	6,503	15,175	7,226	16,861
	금산군	2,320	5,414	2,784	6,497	3,248	7,580	3,713	8,663	4,177	9,745	4,641	10,828
	부여군	3,231	7,538	3,877	9,046	4,523	10,553	5,169	12,061	5,815	13,568	6,461	15,076
	서천군	2,076	4,844	2,491	5,813	2,906	6,782	3,322	7,750	3,737	8,719	4,152	9,688
	청양군	1,902	4,437	2,282	5,324	2,662	6,212	3,042	7,099	3,423	7,987	3,803	8,874
	홍성군	3,054	7,127	3,665	8,552	4,276	9,978	4,887	11,403	5,498	12,829	6,109	14,254
	예산군	3,015	7,036	3,619	8,443	4,222	9,850	4,825	11,258	5,428	12,665	6,031	14,072
	태안군	2,446	5,707	2,935	6,849	3,424	7,990	3,914	9,132	4,403	10,273	4,892	11,415
	총 계	41,420	96,647	49,704	115,976	57,988	135,305	66,272	154,634	74,556	173,964	82,840	193,293
2020	천안시	3,447	8,043	4,137	9,652	4,826	11,261	5,515	12,869	6,205	14,478	6,894	16,087
	공주시	3,134	7,313	3,761	8,776	4,388	10,239	5,015	11,701	5,642	13,164	6,269	14,627
	보령시	2,729	6,369	3,275	7,642	3,821	8,916	4,367	10,190	4,913	11,463	5,459	12,737
	아산시	2,748	6,411	3,297	7,694	3,847	8,976	4,396	10,258	4,946	11,540	5,495	12,823
	서산시	3,657	8,534	4,389	10,241	5,120	11,948	5,852	13,654	6,583	15,361	7,315	17,068
	논산시	3,393	7,917	4,072	9,500	4,750	11,084	5,429	12,667	6,107	14,251	6,786	15,834
	계룡시	219	512	263	614	307	717	351	819	395	922	439	1,024
	당진시	3,473	8,105	4,168	9,726	4,863	11,346	5,557	12,967	6,252	14,588	6,947	16,209
	금산군	2,289	5,342	2,747	6,410	3,205	7,479	3,663	8,547	4,121	9,616	4,579	10,684
	부여군	3,180	7,420	3,816	8,904	4,452	10,388	5,088	11,872	5,724	13,356	6,360	14,840
	서천군	2,028	4,731	2,433	5,677	2,839	6,623	3,244	7,570	3,650	8,516	4,055	9,462
	청양군	1,893	4,418	2,272	5,301	2,651	6,185	3,029	7,068	3,408	7,952	3,787	8,835
	홍성군	2,990	6,978	3,588	8,373	4,187	9,769	4,785	11,164	5,383	12,560	5,981	13,955
	예산군	2,953	6,890	3,544	8,269	4,134	9,647	4,725	11,025	5,315	12,403	5,906	13,781
	태안군	2,404	5,609	2,885	6,731	3,365	7,852	3,846	8,974	4,327	10,096	4,808	11,218
	총 계	40,536	94,585	48,644	113,502	56,751	132,419	64,858	151,336	72,965	170,252	81,073	189,169

4)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대상 지급 시 예산 비교

■ 농업인 개별 지급이 더 많은 예산 소요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농업인에게 지급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업인에게 지급할 경우 농업경영체 지급의 경우보다 얼마의 비율이 증가하는 지 살펴본 결과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예산이 필요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2018년(현재 수준) : 50.6% 예산 추가 소요
- 2019년 : 46.1% 예산 추가 소요
- 2020년 : 41.7% 예산 추가 소요

■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인한 결과 산술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보다 농업인이 2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 절반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됨

■ 농업경영체는 증가하나, 농업인의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기준으로 지급 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이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 있음

[표 5-16]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대상 지급시 예산 비교(도비 40% 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8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농업 경영체	2018	37,462	56,194	44,955	67,432	52,447	78,671	59,940	89,910	67,432	101,148	74,925	112,387
	2019	37,800	56,699	45,360	68,039	52,919	79,379	60,479	90,719	68,039	102,059	75,599	113,399
	2020	38,140	57,210	45,768	68,652	53,396	80,094	61,024	91,536	68,652	102,977	76,280	114,419
농업인	2018	56,430	84,646	67,716	101,575	79,003	118,504	90,289	135,433	101,575	152,362	112,861	169,291
	2019	55,227	82,840	66,272	99,408	77,317	115,976	88,363	132,544	99,408	149,112	110,453	165,680
	2020	54,048	81,073	64,858	97,287	75,668	113,502	86,477	129,716	97,287	145,931	108,097	162,145
차이	2018	-18,968	-28,452	-22,761	-34,143	-26,556	-39,833	-30,349	-45,523	-34,143	-51,214	-37,936	-56,904
	2019	-17,427	-26,141	-20,912	-31,369	-24,398	-36,597	-27,884	-41,825	-31,369	-47,053	-34,854	-52,281
	2020	-15,908	-23,863	-19,090	-28,635	-22,272	-33,408	-25,453	-38,180	-28,635	-42,954	-31,817	-47,726

3. 농민기본소득 지급 효과

1) 정량적 효과

- 2018년 통계청 농가소득 메타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의 농가는 337호로 이를 활용하여 충남의 농업경영체 수를 추론하였음
 - 각 소득구간을 설정하고 소득구간별 농가 수의 비율을 충남 해당 농업경영체에 적용하였음
- 계상은 500천원 기준의 할증 방식을 적용하였음
 - 농가소득조사의 경우 해당농가의 농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한 농가에 몇 명의 농업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한 농가에 1인 혹은 2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될 수 있음
 - 때문에 1인 500천원, 2인 800천원, 3인 이상 1,000천원일 경우를 고려하여 계상하였음
- 계상결과 가장 많은 농업인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은 10 ~ 20백만 원 수익 구간으로 전체의 20.5%가 차지하고 있어 충남 전체 농업경영체 중 38,153개의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구간의 평균 소득은 15,621천 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500천 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총 소득의 3.2%의 증가효과가 있음
-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0 ~ 10백만 원의 구간에서는 평균 소득이 6,804천 원으로 500천 원 지급시 7.3%의 소득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만약 해당 가구에 2명 이상의 농업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할증방식을 적용할 경우 11.8% 혹은 14.7%의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이는 구간의 농가에서는 할증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5% 미만의 소득증대효과가 있는 반면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전체 소득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 20백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총 가구 중 30.6%의 가구로 소득 평균은 3,071,918원이었으며 이들 가구에게 500천 원의 금액은 평균소득의 16.3%에 해당할 정도로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표 5-17] 충남 농민기본소득 지급 효과

(단위 : 원)

구분	빈도	충남 해당 농업경영체	평균 농가소득	평균 소득에 대한 비율		
				500,000	800,000	1,000,000
0원 이하	11	6,082(3.3%)	-22,395,497	-2.2%	-3.6%	-4.5%
0~10백만원	23	12,719(6.8%)	6,804,463	7.3%	11.8%	14.7%
10~20백만원	69	38,153(20.5%)	15,621,079	3.2%	5.1%	6.4%
20~30백만원	48	26,541(14.2%)	24,901,912	2.0%	3.2%	4.0%
30~40백만원	41	22,671(12.2%)	34,220,380	1.5%	2.3%	2.9%
40~50백만원	32	17,694(9.5%)	44,388,572	1.1%	1.8%	2.3%
50~70백만원	46	25,435(13.6%)	58,493,951	0.9%	1.4%	1.7%
70~100백만원	34	18,800(10.1%)	81,882,056	0.6%	1.0%	1.2%
100백만원 이상	33	18,247(9.8%)	174,393,389	0.3%	0.5%	0.6%
총계	337	186,342	—	—		

2) 정성적 효과

■ 농민의 자존감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정부가 농민의 공익적 활동과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한다면 농민의 자존감은 크게 향상될 것임
-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많은 희생을 당해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국가와 사회가 일정 수준 균등하게 보상해준다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감은 크게 증진될 것임

■ 농민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 증진

- 농민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소득의 불안정성임.
-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받게 되면 농민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는 크게 증진될 것임

■ 농촌 거주 의지 증대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같이 일정한 소득이 제공된다면 농민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에서의 지속적 거주를 희망할 것임
- 농민기본소득은 도시민의 농촌 유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제6장

실행 체계 구축 및 지속 방안

제1절 실행체계 구축 방안

제2절 지속 방안

제6장 실행체계 구축 및 지속 방안

제1절 실행체계 구축 방안

1. 각급 행정단위별 추진체계(위원회) 구성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군-읍·면-리 차원의 추진(심의) 체계 구성 필요
- 각 단계별 추진(심의) 체계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농민 기본소득(농민수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2. 각급 추진체계별 역할과 기능 부여

- 도 단위 심의위원회
 - 정책 총괄: 예산 마련, 지급 대상 및 방식 결정, 정책 홍보, 사후 관리 등
- 시·군 단위 심의위원회
 - 시·군 정책 총괄: 예산 마련, 지급 대상 및 방식 결정, 정책 홍보, 사후 관리 등
- 읍·면·동 단위 심의위원회
 - 시·군-리 중간단계에서의 정책 협조, 의견 개선, 지역 활성화 유도 등
- 마을(리·통) 단위 심의위원회
 - 가장 기초 단위에서 지급 대상 확인, 부정수급 확인 등

[표 6-1] 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단계별 추진체계의 역할과 구성

구분	역할과 기능	구성
도 단위 심의위원회	정책 총괄 - 예산 마련, 지급 대상 및 방식 결정, 정책 홍보, 사후 관리 등	부지사(총괄), 도의회, 농림축산국장, 농민단체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소상공인협회 대표 등 약 15명
시·군 단위 심의위원회	시·군 정책 총괄 예산 마련, 지급 대상 및 방식 결	부시장/부군수(총괄), 시·군 의회, 농정국장/농정과장, 농민단체 대표, 전문가, 시민단

	정, 정책 홍보, 사후 관리 등	체, 소상공인협회 대표 등 약 12~15명
읍·면·동 단위 심의위원회	시군·리 중간단계에서의 정책 협조, 의견 개진, 지역활성화 유도 등	읍면·동장, 농민단체, 지역발전위원장, 소상공인대표, 청년회장 등 12~15명
마을(리·통) 단위 심의위원회	지급 대상 확인, 부정수급 확인 등	이·통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마을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부여군 조례안 제14조(지급결정 절차): 마을 이장은 실경작 사실 확인 및 의무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마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 자문위원 의견 내용>

- 마을에서는 최소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의 확인 작업 필요
- 읍면 추진위원회는 마을단위 추진위원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 농민기본소득의 명확한 지급을 위해서는 마을(리) 단위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함.
- 따라서 추진체계 구축에서 마을 단위 추진 또는 심의 위원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마을 단위 위원회 운영을 잘 하면 향후 농정 변화의 큰 틀을 마련할 것임.

제2절 조례 제정 방향

1. (가칭)<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1) 목적

- 농업인의 소득 안정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2) 도지사의 책무

- 농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3) 지급 대상 및 범위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도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예외 조항: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민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마을에서 거주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자로써 마을심의위원회에서 전원 동의한 경우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마을에서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경영이양한 후 해당 마을에서 거주한 자로서 마을심의위원회(마을심의위원회가 없는 마을의 경우 마을운영위원회 등 마을 대표 조직)에서 전원(또는 5인 이상)동의를 한 경우

4)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지급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안을 모색 가능
 - 1안) 개별 농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 미충족 시 농가 단위로 우선 시작하고 이후 점차 개별 단위 지급으로 전환
 - 2안) 농업경영체의 농업종사자 수에 따라 처음 1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추가 인원의 경우 할증 방식으로 추가 지원
 - 예) 1인 50만원, 2인 80만원, 3인 이상 100만원: 농가당 50-100만원 지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5) 도 위원회 설치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원 계획 및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한 논의 기구 구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소관 실국 국장, 소관 도의원,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 그 외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소관 실국 과장을 간사로 지정

6) 지급 신청 및 절차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이장·동장에 제출
- 이장·동장은 신청자의 실거주, 실경작(사육) 등을 확인한 후 시장·군수에 신청
- 시장·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를 도지사에 제출
-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보

7) 지급 제외 대상자

-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전(前)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
- 관할 주소지에서 실거주, 실경작, 실사육을 하지 않는 자

8) 이행 조건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마을에서 실시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그리고 공동실천 활동 등에 참여

2. 충남농업환경실천사업과의 연계성

1) 성격 유사하나 내용 다름

-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에 준하는 성격 보유
 - 충남도가 2017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농가소득 보장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당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해왔던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과 2011년부터 실시해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을 통합해 영세 소농의 소득보전을 도모함.
- 두 사업의 내용은 차이 존재
 - 두 사업은 사업 목적,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농업환경실천사업은 경종농가에만 지급하나 농민기본소득은 경종업, 축산업, 임업 등 영농 형태에 상관없이 지급함.
 - 또한 지급 방식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단위 지급을 준비하고 있음.

2) 통합 시 정책 혼선 및 낭비 우려

- 농업환경실천사업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으로 전환한다면 혼선 초래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으로 전환한다면 추진 체계와 추진 내용 등에서 많은 정책적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 농업환경실천사업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으로 전환 시 정책 효과 미미
 - 현재 추진하고 농업환경실천사업비에 사업비를 다소 올리고 이름만 바꾼다면 농민단체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정책적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3) 정책을 분리해 추진

-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제) 도입 필요

-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제)은 새로운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틀과 규정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실시를 위해 가급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시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민기본소득의 원칙에 맞게 농민 개별 지급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지급의 충분성도 중요하지만 남성, 여성, 청년 등 농가 인구에 따른 개별 지급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농민 개별 지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실천사업은 가산형 직불형태로 전환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기본형 직불금이라면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명칭 그대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농업환경실천사업은 친환경농업에 추가 지원한다거나 농업생물종다양성을 위해 토종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해 추가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충남농민기본소득과 충남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분리 추진하고 그 예산 비중은 70:30으로 나눔. 이를 통해 중앙정부보다 앞선 충남형 공익형 직불제를 충남에서 먼저 실현함



[그림 6-1] 충남형 공익형 직불제 실시 모델

제3절 예산 확보 방안

1. 농정예산 확대

1) 최근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율은 감소됨

■ 2019년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96% 증가에 그침

- 2019년 충남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5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65억 원, 약 10.95%가 증가함
- 이에 비해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은 177억 원으로 1.96% 증가에 그쳐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8년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 증가액 474억 원, 5.55%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임

2) 평균 증가 수준의 농정예산 확대 필요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농정예산의 양적 증가가 필요함

- 2018년, 2019년 충남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해 각각 9.26%, 10.95% 증가하였으나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은 각각 5.55%, 1.96% 증가하는데 그침
- 2020년 충남도 본예산 세출예산이 총예산과 마찬가지로 평균 10%만 증가하더라도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약 9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된다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예산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6-2] 2019년 충남도 본예산 세출총괄표(일반회계 전체)

(단위: 억 원)

구분	예산액(구성비)	전년도 예산액(구성비)	비교 증감(증감률)
총계	57,400(100.00%)	51,735(100.00%)	5,665(10.95%)
일반공공행정	6,166(10.74%)	5,997(11.59%)	169(2.82%)
공공질서 및 안전	1,362(2.37%)	1,189(2.30%)	172(14.49%)
교육	3,666(6.39%)	3,332(6.44%)	334(10.03%)
문화 및 관광	2,240(3.93%)	2,247(4.34%)	△7(△0.29%)
환경보호	3,858(6.72%)	3,391(6.55%)	468(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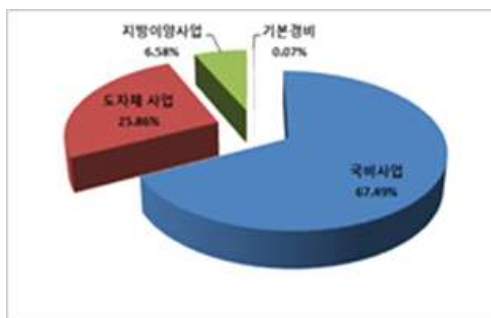
사회복지	18,803(32.76%)	16,179(31.27%)	2,624(16.22%)
보건	1,329(2.32%)	1,259(2.43%)	70(5.55%)
농림해양수산	9,186(16.00%)	9,009(17.41%)	177(1.96%)
산업·중소기업	1,289(2.25%)	1,061(2.05%)	228(21.51%)
수송 및 교통	1,642(2.86%)	1,545(2.99%)	97(6.28%)
국토 및 지역개발	2,717(4.73%)	2,337(4.52%)	380(16.23%)
과학기술	32(0.06%)	23(0.05%)	8(35.61%)
예비비	778(1.35%)	533(1.03%)	244(45.77%)
기타	4,332(7.55%)	3,631(7.02%)	701(19.26%)

2. 농정예산 재정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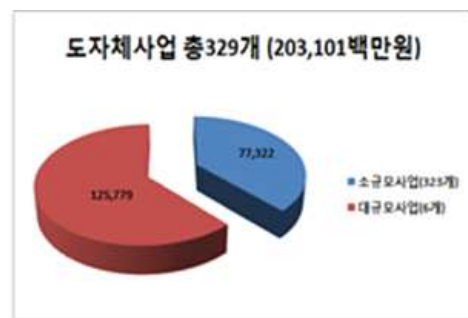
1) 농정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 낮음

■ 충남도 농정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 낮아 예산 확보 어려움

- 2020년 충남도 농정분야 예산 가운데 국비사업은 67.5%를 차지하고 자체사업 비중은 25.8%에 불과함
- 국비 매칭을 제외한 도 자체 사업은 329개 사업에 2,031억 원임
- 자체 사업비 가운데 주요 6개 사업¹⁰⁾이 차지하는 사업비는 1,258억 원으로 자체 사업비의 61.9%를 차지함. 이 때문에 나머지 773억 원으로 323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그림 6-2] 충남도 농림축산국 사업별 예산 비율



[그림 6-3] 충남도 농림축산국 자체사업 예산 비율

자료: 충남도 농림축산국 내부 자료

10) 충남도 농림축산국 주요 6개 사업은 다음과 같음: 1)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2)(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3)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4)농어민수당, 5)용배수로 정비, 6)정주환경 개선

2) 농정예산 분야 재정혁신을 통한 예산 마련

- 충남도 농정사업 가운데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농민기본소득 재정으로 편입
 - 농정예산 가운데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일몰>, <축소>, <통합> 등으로 분류해 농정사업을 정리하고 그 중 일부 예산을 농민기본소득 예산으로 편입함
- 2019년 현재 충남도 농정사업은 총 391개이며 예산은 5,710억 원(국비 제외, 시·군·비, 자부담 포함)
 - 이들 사업 가운데 충남도는 자체 발굴과 전문가 합동 발굴을 통해 일몰, 축소, 통합 대상 사업으로 83개 사업을 발굴함
 - 일몰, 축소, 통합 대상 8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519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9.1%를 차지함

[표 6-3] 충남도 농정분야 일몰·축소·통합 대상 사업 발굴 현황

계	관행적 지원	효과 미흡	유사중복/중료	홍보·행사성
83개 사업 (51,899백만원)	41개 사업 (32,965백만원)	11개 사업 (8,970백만원)	26개 사업 (9,155백만원)	5개 사업 (809백만원)

자료: 충남도 농림축산국 내부 자료

3) 농정사업 분야별 일몰·축소·통합 세부 사업 현황¹¹⁾

- ① 관행적 지원 사업 : 41개 사업(32,965백만 원)
 - 특정영역, 특정주체 지원 18개 사업(16,054백만 원): 대형기업·조합 등 개별주체 이익 귀속 우려 사업
 - 생산관련 투입재 및 고정자본 투자 22개 사업(16,797백만 원): 농산물 생산 개별주체 책임영역으로 개인이나 일반 업체 이익 귀속 우려 사업. 특히 생산 과잉을 부추기는 비료 및 퇴비, 영양제, 시설지원 사업 등
 - 유통관련 투입재 및 고정자본 투자 1개 사업(114백만 원): 농산물 유통 개별주체 책임영역으로 개인이나 일반 업체 이익 귀속 우려 사업

11) 자료: 충남도 농림축산국 내부자료

■ ② 효과 미흡 사업 : 11개 사업(8,970백만 원)

- 연례 반복적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 수요 감소 사업 등

■ ③ 유사중복·종료 사업 : 26개 사업(9,155백만 원)

- 유사·중복사업으로 중복지원 우려 및 종료사업 등

■ ④ 홍보·행사성 사업 : 5개 사업(809백만 원)

- 시군의 자율권을 약화시키고, 투입대비 홍보효과 미흡(전시성 홍보·관측행사 등)

[표 6-4] 충남도 농정분야 일몰·축소·통합 대상 사업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수	합계	소계 (A+B)	균특 (A)	도비 (B)	시군 (C)	기타 (D)
총계		83	51,899	20,741	6,156	14,585	16,962	14,196
관행적 지원 사업	특정영역·특정 주체지원 사업	18	16,054	5,701		5,701	5,223	5,130
	생산관련 투입재 및 고정자본 투자 사업	22	16,797	5,634	900	4,734	4,320	6,843
	유통관련 투입재 및 고정자본 투자 사업	1	114	18	0	18	36	60
효과 미흡 사업		11	8,970	3,818	2,548	1,270	5,093	59
유사중복·종료 사업		26	9,155	5,370	2,708	2,662	2,180	1,605
홍보·행사성 사업		5	809	200	0	200	110	499

자료: 충남도 농림축산국 내부자료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농정사업은 사업의 내력과 이해관계자가 많아 쉽게 없애지 못함

- 농정사업은 각기 사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내력이 있고 이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일몰, 축소, 통합하기가 쉽지 않음
- 농정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역 내 정치적 역학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정사업을 일몰, 축소, 통합할 경우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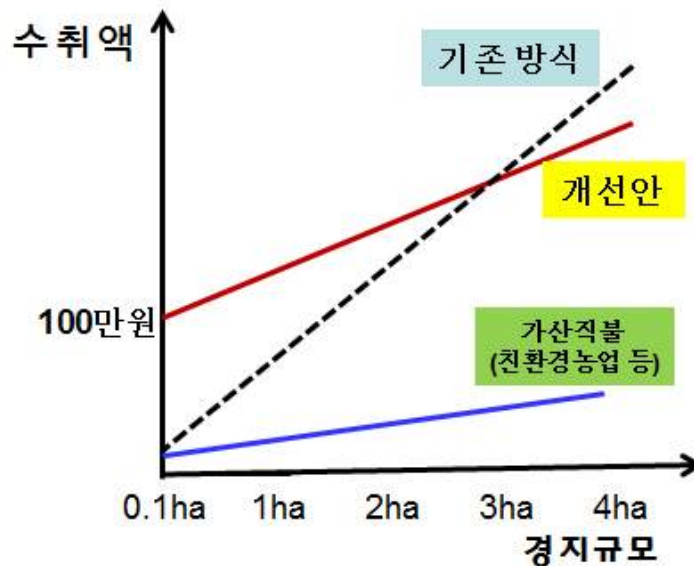
- 농민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운영
 - 농민기본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재정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재정 혁신(일몰·축소·통합)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임시적으로 운영 중인 자문회의를 한시적 상설기구인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농업재정 혁신 지속 논의
 - 농업재정 혁신을 통해 농민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촌복지, 농식품 안정, 여성·청년농업인 등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
-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는 도청, 도의회, 충남농업회의소 등에서 주관 운영
 - 충남도 농업재정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농업회의소 등이 협의해 어느 한 곳이 주최가 되어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충남도의회 정책연구모임 구성을 통해 농업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4. 중앙정부 예산 활용

1)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보조 방식

- 중앙정부가 농민기본소득제를 흡수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의 일부 분담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에서는 중앙정부가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를 받아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즉, 농민이면 누구나 일정한 금액(예, 농가당 연간 100만원)의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받고 면적에 비례해 추가적으로 받음
 - 이 경우는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익형 직불제를 좀 더 공평하게 하고 환경직불을 강화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0.5ha 이하 농가에게 일정한 금액의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나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가 결합된 방식은 0.1ha 이상 농가 모두에게 일정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이는 곧 기본직불에 해당함
- 또한 친환경농업, 경관직불금 등 허용보조 지불금은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함. 이는 곧 가산형 직불금에 해당함(아래 그림 파란색 선)



[그림 6-4] 중앙정부 주도 농민기본소득 실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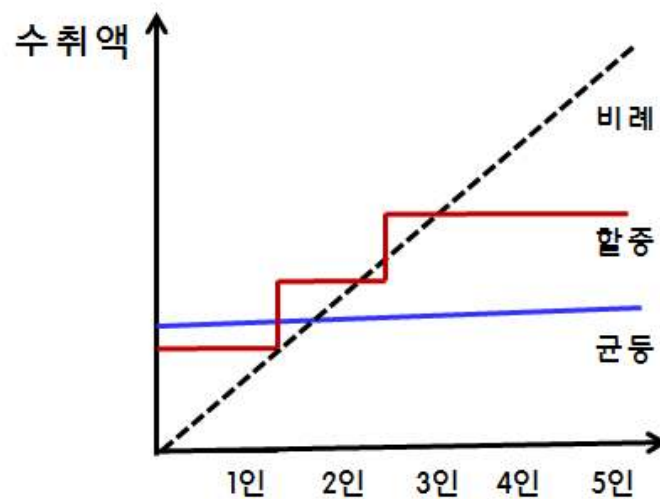
2)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 방식

■ 지방정부의 현행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 현재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농민단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중앙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즉, 중앙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면적단위 직불을 유지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 직불제인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의 상당액을 지원함

■ 지급액과 지급 방식은 협의 필요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필요
- 또한 지급 방식을 가구단위로 할 것인지, 농민단위로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개별 농민단위 실행이 어려운 경우 농업경영체 농업인 수에 따라 할증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 필요
 - 예: 농업경영체 내 농업인이 1인일 경우 50만원, 2인 경우 80만원, 3인 이상일 경우 100만원



[그림 6-5] 지자체 주도의 농민기본소득 실시 모델

제4절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홍보 방안

1) 농정사업 지원에 관한 도의 정책 기조 변화 홍보

- 충남도의 농정 기조가 <공정>, <형평>,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의 정책기조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해결에 맞춰 충남도의 농정기조도 <공정>, <형평>,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음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단순히 사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농정의 틀을 바꾸는 큰 정책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적극 필요함

2)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필요성과 정당성 홍보

-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함
 - 소수의 농업인만이 살아남는 농촌이 아니라 중소영세농도 함께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알리고 이를 국가적, 사회적 보상이 필요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함
-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정책 변화 사례를 통해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의 정당성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소득 보장과 농업·농촌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2020년부터 기본소득 개념의 공익형 직불제 실시 추진 중에 있음
 - 2020년부터 전남도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북도에서는 농민 공익수당 실시를 확정했고,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 준비 중에 있음. 기타 많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을 준비 중에 있음.
 - 따라서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필수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3) 농민에 대한 교육 홍보 필요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에 대한 농민 이해 필요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농민에게 필요하고 농가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정작 농민들 가운데는 농민수당을 왜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음
-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농촌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고 이 제도에 비판적인 비농업들을 설득시킬 수 있음

■ 전문 강사 육성을 통한 마을단위 교육 실시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마을 단위 교육 실시 필요
- 마을단위 교육을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 농민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실시
- 필요 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교육 담당 전문 강사를 육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필요

부록

I 보고서 자료

II 회의 자료

III 전문가 의견조사표

부록

I 보고서 자료

1. 착수보고회

■ 일시 : 2019.05.13(월) 15:00~17:00

■ 장소 : 충남도의회 2층 209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김명숙 의원, 양금봉 의원, 충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 자문위원 박창원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한승석 연구원

1)토론자별 의견 정리

■ 김명숙(충남도의원)

- 농민과 농어촌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급대상이 명확해 졌으면 하며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등록이 되지 않은 주민이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의회와 충남연구원의 농민기본소득 연구회에는 농업경 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농업경 제환경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농민기본소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정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되어 충남의 전체적인 농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함
- 농촌 현장에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이 연구에 반영되었으면 함

■ 박창원(충남도립대학교 교수)

- 농민기본소득이 현장에 적용되고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충남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으로 적절한 타당성이 제시될 수 있는

연구를 시행하기 바랍

■ 양금봉(충남도의원)

-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하는 연구임. 농촌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소득이 전제되어야 함
- 농가의 소득보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농촌을 떠나는 젊은 층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농민기본소득으로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충청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조례의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안장현(충남도의원)

- 어떻게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 본 농민기본 소득을 통해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농민기본소득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사전에 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보다 빨리 공유되기 위하여 중간 및 최종보고의 일정을 1달 정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면 함
- 현재 연구방법에 설문 및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력이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전문가와 본 소득과 관계가 없는 도시민 등과 같은 대상자에게의 의견도 청취 하였으면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연구의 진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특히 연구결과의 조기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명분이 모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명분에 대한 내실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함
- 현재 충남의 농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에는 2만 명, 2019년 현재까지 9천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농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대상이 명확하여야 함
- 충남의 몇몇 시군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충청도 차원에서 시행하였을 때 도와 시군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실천사업을 염두하여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지급의 대상과 범위 등을 정의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음
- 보다 많은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제안하도록 하겠음

2) 의견취합 및 정리

(1) 도의회의 협조체제 유지

■ 주요 협조체제

-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연구회 보다 노동환경경제위원회화의 협조체제 유지 필요

(2)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 구성

■ 지급대상의 정의

- 농민에 대한 정의를 비롯한 지급대상자의 정의 등 예산과 향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정의 필요

■ 논리구조 구성

- 농민기본소득은 전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구조 필요
- 농민기본소득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함

(3) 연구의 진행

■ 중간 및 최종보고 일정 변경

- 농민기본소득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기타 준비 과정이 빠듯한 관계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조정

■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과 함께 설문조사 시 다양한 계층 및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4) 기타

■ 도와 시군의 사업연계 방안

- 시군에서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도에서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2. 중간보고회

■ 일시: 2019.08.27(화) 15:00~17:00

■ 장소 : 충남도의회 2층 209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김명숙 의원, 양금봉 의원, 충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홍 과장, 충남연구원 박정철 책임연구원,
한승석 연구원 등

1)토론자별 의견 정리

■ 김명숙(충남도의원)

- 농민기본소득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 현재 보고서 내용에는 재원 마련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에서는 반영해주길 바람
- 농민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 등 농정예산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기존 보조금 사업 중 관행적인 보조금, 생산 과잉을 유발하는 보조금, 특정소수에게 제한된 보조금 등은 협의를 통해 점차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충남도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별도로 진행하기 바람. 과제와 관련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해주길 바람

■ 이공휘(충남도의원)

- 예산 반영 시 농가소득의 중위값을 반영해 주기 바람.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이 33 ~ 34%를 차지하지만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의 중위값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어민수당도 고려해주기 바람

■ 한영신(충남도의원)

- 농업직불금과 농민수당 통합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양금봉(충남도의원)

- 충남도 농가경영구조에서 경영비가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람
-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잘 분석해 주고 농민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여성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위해서는 첫째,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둘째, 부작용을 최소화되어야 하며, 셋째, 재원이 확보 되어야 함
- 충남도에서는 농어민수당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검토하고 있음
- 농민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임대료 상승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박경철(충남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재 충남도 농림축산국에서 농정예산 혁신안을 마련 중에 있어 향후 이를 참고로 농민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진행 중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과는 별도로 도의원님과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음
- 지급 대상에 대한 논쟁이 많은 만큼 여성농업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별 지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음
- 정부의 농업직불금 등과 연계해 영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2) 의견취합 및 정리

(1) 재원관련

- 사업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원분석 마련부분 추가 요청
- 농정관련 사업비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작업의 필요성 거론

(2) 대상자 관련

- 농어민 수당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어민수당에 대한 고려 필요

(3) 도민공감대

- 사업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농촌현장의 목소리 및 도민 공감대 조성

3. 최종보고회

■ 일시: 2019.11.19(화) 15:00~17:00

■ 장소 : 충남도의회 2층 209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충남도의회 안창현 의원, 김명숙 의원, 양금봉 의원, 충남도립대학교 박창원 교수, 충남연구원 박정철 책임연구원, 한승석 연구원 등

1)토론자별 의견 정리

■ 안창현(충남도의원)

- 최초 요구하였던 내용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충남 농민의 평균소득에서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를 원하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보전에 대한 효과가 추가되었으면 함

■ 김명숙(충남도의원)

- 재원마련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충남 농정의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 등을 분석하여 기본소득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농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전환한다는 것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함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일몰하고 조정해야 하는 사업이 파악되어야 함

■ 양금봉(충남도의원)

-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재정이 수반이 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함
- 현재 농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WTO 개도국 포기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을 현실화시켜야 함

■ 박창원(충남도립대학교 교수)

- 농민기본소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즉, 다양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김명숙(충남도의원)

- 마을 내에서 농업인과 비 농업인이 있는데 농업인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되게 되면 비 농업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음. 또한 농업경영체당 지급이 되면 경영체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함

■ 양금봉(충남도의원)

-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할 경우 마을의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런 경우 행정의 업무가 과부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함
- 현실적인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때문에 향후 연구원과 도에서는 예산분석 작업을 시행하였으면 함

■ 김명숙(충남도의원)

-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일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면 함

2) 의견취합 및 정리

(1) 재원분석

- 향후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재원분석 필요
- 재원마련을 위하여 현재 농정예산 중 필요 및 불필요 예산을 선정하고 공론화 작업 필요

(2) 기타

- 사업의 시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측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이 제시되었으면 함
-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 필요

II 회의 및 자료수집 활동

1.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참관

■ 일시 : 2019.05.17(금) 14:00~16:00

■ 장소 :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

■ 참석자 :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17명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 추진경과

- 2018.09.07. : 민선7기 공약사항 토론회 농민수당보고 (1차)
- 2018.09.27. : 민선7기 공약사항 토론회 농민수당보고 (2차)
- 2018.09.13. :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9단체/15명) 농민수당 토론
- 2018.09.13. : 농민회·여성농민회와의 토론
- 2018.11.28. :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2018.12.20. : 전충남도연맹 주관 제도적 실행방안 심포지움 개최
- 2019.02.27. 군민설명회 개최(농업기술센터 대강당/200명)

■ 농민수당 도입추진 위원회 결정사항

- 1차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사항(2018.11.28.)

○(지원근거) 농민수당 지급 관련 조례 제정 계획
 ○(지원대상) 농업환경 실천사업 지원대상자 11,800명(잠정)
 ※ 직불금 수령 또는 신청농가(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가는 제외)
 ○(지원방향) 충청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 연계 추진
 ○(지 원 액) 1농가당 년 14만원 (2021년 이후 24만원)
 - 2019 ~ 2020년까지는 농가당 연 14만원 지원
 ▶ 농민수당 년 14만원 + 농업환경실천사업 36만원 지원 = 50만원
 ▶ 예산 : 농민수당 16억5천만원(군비) + 농업환경실천사업 43억원 (도비 13억, 군비 30억원)
 - 2021년 이후는 농가당 연 24만원을 지급
 ▶ 농민수당 년 24만원 + 농업환경실천사업 36만원 지원 = 60만원
 ▶ 예산 : 농민수당 28억3천만원(군비) + 농업환경실천사업 43억원 (도비 13억, 군비 30억원)
 ※ 농업환경실천사업 : 질소질 비료 적정시비, 벼짚환원 등 실천
 ○(지급방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소요예산) 연 1,652백만원 (2021년 이후는 연 2,832백만원)

■ 회의 결과

- 농민수당의 명칭
 - 지자체 별로 다양한 명칭사용으로 타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민수당 명칭 확정 필요
 - 부여농민수당으로 결정
- 농민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 농업환경실천사업 지급대상으로 잠정결정
 - 농업인을 비롯하여 임업, 축산업, 수산농가까지 포함 결정
-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안 확정
 - 제시된 제시안을 바탕으로 농민회 및 여성농민회에서 수정한 안으로 확정
 - 조례 내에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표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고자 함

■ 기타 의견

- 부농과 실제 부여군에서 거주하지 않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실제 설정된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면단위 혹은 마을단위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함

2. 충청도청 식량원예과장 및 담당자 인터뷰

■ 일시: 2019.06.13(화) 14:00~16:00

■ 장소: 충청도청 식량원예과

■ 참석자: 식량원예과장, 연구진 등 4명

1) 참석자별 의견 정리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충청도지사의 의견은 농민수당의 지급을 농민을 비롯한 어민, 임업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청도의원들과 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이 충남형 기본소득으로 필요하다면 명칭의 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보다 명확한 대상자 선정 방법이 필요하며 시행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함
-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농업환경실천사업의 시행착오를 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필히 개선 후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남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은 우선적으로 농어민부터 시행하여 차츰 그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지급형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카드로 지급하였을 때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고 발행방법, 소용비용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문제점은 차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면 다양한 면에서 지역에 환원되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큰 환영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부여군에서는 조례에 농가가 아닌 농업인으로 지급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향

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고자 함

- 농민기본소득의 부정수급과 자격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분리작업을 위하여 읍면을 비롯한 마을 단위에서 선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실제 지급대상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롭게 설치된다고 하는 선별 위원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불금위원회와 유사하다고 판단됨
- 대상을 실제 선정하기 위하여 농민의 정의와 나이제한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어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민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어민의 등록 은 너무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어민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민을 정의하고 선별할지는 연구원의 전문 연구원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 단순한 현금성의 지급이 아닌 조례 등에 지급받은 대상자의 공익적 활동을 포함 하여 사업의 명분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연구를 진행하면서 행정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면사무소 3곳 내외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화 되었을 때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인지 도출하였으면 함
- 조례는 현재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위한 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공익적 활동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분리하여 수당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본소득이 복지적 측면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만이 아닌 취약계층을 망라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부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도 하나의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부여의 시행결과 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불금 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지주에게 지급되는 되거나 실제 지급받아야 할 농업인이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농민기본소득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본소득의 지급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취지에 맞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지급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리, 면, 시군, 도로 이어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여야 함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보조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운영될 때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급박하게 시행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사업을 보완하면서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면 함
- 사업명을 농민기본소득 보다 포괄적인 제목을 선정하여 농업, 어업, 임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으면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남의 경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농업과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원화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박지홍(충남도 식량원예과장)

- 대상자의 선정은 명확한 통계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되었으면 하며 본 연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사업과 농민기본소득과의 관계, 지속가능성 등의 명확한 관계설정이 되었으면 함

2) 의견취합 및 정리

(1) 지급대상

■ 농업인을 비롯한 어업인, 임업인 등으로 확대

-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통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의 제시 필요

■ 지급대상의 명확한 정의

- 어업인의 등록이 쉬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
-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선별위원회의 운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불금위원회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실제 위원회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현실적 지급방법

■ 행정력을 고려한 지급방법 필요

- 도입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 필요
- 최하 행정단위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반영 요구

■ 전남도, 부여군 등의 선행지역의 결과 분석하고 개선안 제시

3. 충남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자문회의

■ 기간 : 2019.06.~10. (4회)

■ 장소 : 충남연구원

■ 참석자 : 현장 전문가 및 연구진 10명

1) 자문회의 개요

■ 기간 : 2019년 6월 ~ 10월 4회

- 1차 : 2019년 6월 20일(목) 15시 ~ 17시 30분
- 2차 : 2019년 6월 27일(목) 15시 ~ 18시
- 3차 : 2019년 7월 4일(목) 15시 ~ 17시
- 4차 : 2019년 10월 25일(금) 15시 ~ 17시

■ 참석자

회차	소속	직위	성명
1차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김병혁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배연근
	예산덕산농협	이사	조광남
2차	충남도농민회	전사무처장	권혁주
	예산군농민회	사무국장	엄청나
	청양군	활동가	박진희
3차	아산시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전사무	이효희
4차	청양군 남양면 구룡1리	이장	권새원

■ 자문회의 내용

- 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명칭,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추진체계, 관련 조례 제정 등

2) 자문회의 결과

■ 개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업·농촌의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
- 산업화, 개방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농민의 삶에 대한 기본권 보장

구분	내용
1차	- 논쟁의 중심을 피하고 시행시기를 조기화 할 수 있는 개념을 가져가야 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시작 하나 기본권의 보장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2차	- 소득의 개념보다는 수당의 개념이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보장도 중요하나 근본적인 방향인 기본권 보장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기본권의 개념은 인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모든 개념을 포괄하고 단계적인 접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면 함
3차	- 농민의 사회적 기여를 중점으로 다뤄야 함 - 도시민과의 민주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을 포괄하여야 함
4차	- 농민이 현재까지 시행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보상이 필요함
결론	-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에 대한 개념을 주로 하되 농민의 기본권의 개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명칭

- 충남형 농민기본소득
- 충남형 농민수당제
- 충남형 농민 공익수당제
- 충남형 농민 기본수당제
- 기타

구분	내용
1차	- 충남형 농민수당제가 가장 적합하며 혹은 충남형 공익수당제로 하여야 함
2차	- ‘충남형’이라는 명칭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개념과 명칭은 연계되는 것으로 적절한 명칭이 설정되어야 함 - 농민을 비롯한 충남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여야 함
3차	- 농민수당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적용하였으면 함
4차	- 농민수당이 현재까지 논의된 명칭으로 이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결론	- 농민수당이 적합하며 ‘충남형’은 추후 논의가 필요함

■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모든 농민
- 1,000㎡ 이하 소규모 차경농
- 농지는 없지만 품을 파는 농가

구분	내용
1차	- 농민 개별 지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농가 지급으로 시작하여 우선 도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액수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실경작, 실거주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농업법인체(영농조합 등)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되어야 함 - 농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인력에 대한 지급방법이 필요함
3차	- 지급의 대사에서 소농을 비롯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면 안됨
4차	-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한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함
결론	-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지급하되 농가 혹은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추후 결정하여야 하나 농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농민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하고자 함

■ 지급 업종 범위

- 경종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구분	내용
1차	- 경종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급하여야 함 - 어업은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논의진행이 필요함
2차	- 축산업은 10인 이상 고용경영체, 일정 매출액 이상 경영체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3차	- 축산업은 이미 기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경종업과 소규모 축산업이 해당됨
4차	-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 중 업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면 안됨
결론	- 경종업, 축산업, 임업을 중심으로 지급하되 축산업의 경우 소규모 축산업이 해당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어업은 추후 논의 필요

■ 거주/영농기간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도내 실거주, 실경작(사육) 농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2년 이상 도내 실거주, 실경작(사육) 농업인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구분	내용
1차	- 귀농인의 경우 영농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거주 기간만 고려할 필요가 있음
2차	- 농업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경작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차	- 없음
4차	-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집중으로 원주민이 역차별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결론	- 실거주 및 실경작을 고려하며 기간은 추후 결정

■ 지급액 : 농가기준

- 농가당 연간 60만원 / 100 ~ 12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구분	내용
1차	- 농가당 월 20만원(농민단체 합의 사항)
2차	- 전통사회 유지를 위하여 농민단위로 지급되어야 함 - 농가단위로 하면 농가의 농업 경영체 분리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3차	-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농민단위로 지급되어야 함
4차	-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결론	- 농민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함

■ 지급 제외 대상

- 농업 경영체 미등록자
- 신청 직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 신청 직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
- 연금소득자
- 신청 직전연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청 직전연도 농지·산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구분	내용
1차	- 소득 5,000만원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농지·산지와 관련 불법행위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할 필요가 있음
2차	- 명칭에 어울릴 수 있도록 농민이라 구분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함
3차	- 없음
4차	-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철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면 함
결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 지급제외 대상자를 따르며 농지·산지와 관련 불법행위는 제외함

■ 지급 방법

- 현금 / 지역화폐(상품권) / 지역화폐(체크카드) / 현금+상품권

구분	내용
1차	- 지역상품권은 노인에게 유리, 지역상인들을 우호세력으로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농민수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농민을 설득해 지역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금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나 지역경제의 선순화 효과는 상품권에 비해 떨어짐
2차	- 충남의 도시 및 농촌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상품권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3차	-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사용하나 사용의 편리성, 농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현금일 수 있음
4차	- 고령화된 농민의 관점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함
결론	-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나 농민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함 - 향후 지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체크카드의 사용의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급시기

- 년 1회 일괄지급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분기별 지급
- 격월 지급

구분	내용
1차	- 상하반기 2회 지급이 좋을 것이라 생각함
2차	- 행정적 편의와 사용을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지급이 바람직함
3차	- 지급의 시기는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함
4차	- 없음
결론	- 연 2회 지급을 우선고려하고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함

■ 지급요건 : 의무 이행

- 이행조건 부여 후 이행 점검, 미행시 차년도 지급제한
- 이행조건 미부여
- 이행조건 부여하더라도 자율 실천 유도

구분	내용
1차	- 이행을 점점하거나 미부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행조건을 부여하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2차	- 농민수당 목적 자체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무' 라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은 금액으로는 의무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우며 환경실천의 의무가 포함된다면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
3차	- 농민수당 자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별도의 이행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이행조건을 포함한다면 생태적 관점의 이행조건이 설정되어야 함
4차	- 과도한 이행조건은 지양하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함
결론	- 이행조건 부여를 고려하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원칙이 아닌 자율적인 이행을 전제로 함

■ 의무 이행조건 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 농지·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독 등 농지 형상 유지
-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 마을경관 유지를 위한 환경 미화 활동 참여
- 마을회의 및 공동체 활동 참여
- 기타

구분	내용
1차	- 제시된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음 - 환경농업 실천은 농민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2차	- 축산업 관련된 이행조건은 이미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음
3차	- 없음
4차	- 없음
결론	- 권유의 수준에서 이행조건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자율성 침해, 개인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 수정

■ 농촌 내 비농업인 배제 문제

- 현재로써는 배제할 수밖에 없다.
-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면 포함시켜야 한다.
- 농업 외 근무를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함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포함하더라도 지금은 어렵다.
- 기타 의견

구분	내용
1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2차	- 농업인 중심으로 지금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농촌거주 주민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임
3차	- 기본적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거주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4차	- 과거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고령의 이유로 생계형 농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자가 토지가 없는 농업인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고려해야 함
결론	- 현재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심으로 우선 시행

■ 추진체계

- 도 농민수당(기본소득) 추진위원회
- 시군 농민수당(기본소득) 추진위원회

- 읍면 농민수당(기본소득) 추진위원회
- 리 농민수당(기본소득) 추진위원회

구분	내용
1차	- 도와 시군, 읍면 단위까지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을에서는 이장을 비롯한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의 확인이 필요함 - 부여군에서는 마을 단위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감안하였으면 함
2차	- 도, 시군, 읍면, 마을 단위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읍면의 추진위원회는 마을 추진위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함 - 마을 단위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하며 향후 마을 단위 조직이 발전한다면 농정 변화의 큰 틀을 마련 할 수 있음 - 마을단위의 조직이 중요하나 현재 마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의 역량을 고려하여 마을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차	- 이장을 비롯한 마을 리더의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단위의 조직이 필요함
4차	- 마을단위에서는 추천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면단위에서 명확하게 선정하는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결론	- 각 단위의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함 - 마을단위의 조직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과의 연계성

- 농업환경실천사업의 대상, 액수 등을 확대 개편
- 농업환경실천사업과는 별도로 새로운 충남형 농민수당(기본소득)제 도입
-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충남형 농민수당(기본소득)제 도입

구분	내용
1차	-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농민수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원할 것임 - 농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은 가산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차	- 지급되는 액수가 적으면 기본형이나 가산형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지급액이 많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생색내기식의 정책은 의미 없음
3차	- 없음
4차	- 없음
결론	- 새롭게 도입되는 농민기본소득을 기본형으로 운영하고 농업환경실천사업은 가산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농업인의 입장에서 예산확보 노력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 자문회의

4. 충남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인터뷰 및 현장조사

1)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일시 : 2019.07.03.(수) 14:00

■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 참석자 : 최상만 사무관, 오수진 주무관,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현재 농가단위로 지급을 시행하였으나 향후 농민별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계에서 농업인 판별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판별의 방법은 따로 있는지 조사가 필요함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실제 농업을 시행하는 농업인인지 확인이 불가함. 기준으로 1,000㎡ 이상을 농사지으면 경영체로 등록하고 있음
가족 농업인의 경우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고 실제 농사를 시행하는지 모호한 상태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농업인의 기준을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하기 힘든 상태임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경영체는 토지만 기준으로 잡고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법적으로는 제시가 된 상태이나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법적으로 정해진 농업인의 범위는 일반적인 개념보다 좁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더욱 좁은 상태임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분류가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각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새롭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함. 직불제의 경우 3,700만원 이상의 농외 소득은 직불제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농업인의 정의는 정부에서 설정하기에는 지자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호한 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충남도에서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후 농업경영체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원인 중 하나가 경영체의 분리라 할 수 있다고 함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든 농업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은 더욱 가중될 것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고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농업인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정부의 통계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통계청의 통계와 농업경영체 등록 통계의 다른 점이 바로 신고제로 등록에 대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음.
전체적인 농업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나 가족농업인 등록, 경영체 분리로 인해 경영체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는 대도시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계청의 농가 통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이와 같은 현상 때문이라 생각됨

■ 박경철(충남연구원)

-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의 한계와 직불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농민수당의 지급이 확대되면 그와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음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농관원에서 경영체등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후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음. 농업인인지 아닌지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임

■ 오수진(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 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에는 들지 않지만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들은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 박경철(충남연구원)

- 법인체에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는 농업인으로 보고자 할 것임
현재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타 기준인 90일 이상, 120만원 이상 등의 다른 조건은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오수진(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 농업경영체, 직불금은 현장에 실제 확인을 하기는 하나 그것까지 속이는 사람까지는 방지하지 못하는 상황임. 예로 이장 확인서, 농약 영수증,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사인 등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음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농관원에서 매년 검증을 하고는 있으나 인력구조상 문제가 있음.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은 250만 농업인, 167만이 농업경영체 등록(통계청 농가는 104만)으로 50 ~ 60%는 매년 직불금을 위해 농업인이 갱신하고 있고 30% 정도는 농관원에서 갱신하여 매년 약 80%가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주소지에 중복된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15만 정도로 보고 있으며 그 외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라 예상함
농업인경영체등록은 거주지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행위를 적용함

■ 오수진(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 현재와 같은 농민수당의 지급구조는 농업경영체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경영체등록과 농가의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실거주 실경작을 원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오수진(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 경영체 등록은 관외 경작까지 인정해 주기는 하나 농지, 주민등록주소까지 적용한다면 농민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함. 관외 경작자가 13% 정도가 됨

■ 박경철(충남연구원)

- 경영체 등록을 농민이라 한다면, 경영주가 농업인으로 등록하였지만 타 수익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경영주는 제외될 수 있음. 등록 농업인은 농민수당은 현재 농가단위로 할 경우 해당이 안 되나 개별지급을 하게 된다면 지급할 수 있음.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지자체에서 지급할 때 제공을 요청한다면 제공할 수 있으나 개별 정보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안 되나 집합정보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음

농민수당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확인한다면 농업 실행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본인만 땔 수 있음. 농식품부에서는 빠르면 9월부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농업경영체등록보다 가족농업인의 등록은 더욱 힘들. 18세 이상, 경영주 농촌거주, 직장이 없어야 하고 6개월 농업행위를 해야 하고 같이 거주해야 함. 만약 가족농업인 외의 농업인을 등록시키고자 한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함.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가족농업인의 기준을 준하지는 않음. 법인에서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4대 보험 납부, 계약서 등의 조건이 충족해야 함

■ 오수진(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 지급이 된다면 향후 유사농장. 콩나물, 식물공장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이 문제일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도 위와 같은 농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한 상황으로 민원의 요소가 되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경영체 등록시 향후 농민수당 혹은 농민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데 현재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데 지역의 농민단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농관원에서 조사시 그런 곳과 연계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인데 같이 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임.

■ 오수진(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 현재 경영체 등록에도 힘들어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했을 때 마을과 사이가 안 좋은 농업인은 문제가 됨

■ 최상만(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 향후 관련된 사실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현재도 각종 보조사업과 타 기관과 함께 연계를 하여 검증하고 있음

(2) 인터뷰 결과요약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농정혜택을 위하여 등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계청의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매년 80% 정도가 갱신되고 있어 농업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개별 행정에서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나 향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 상의 가족농업인의 경우 연령, 농촌거주 유무, 직장의 유무, 농업행위의 여부, 동거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있음
-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는 농업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 되어야 함

■ 기타 의견

-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경영체를 분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음
- 농지가 없으나 농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사농장, 콩나물, 식물공장 등의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수당 지급시 이들을 어떻게 할지 규정이 명확해야 할 것임

■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 일시 : 2019.07.23.(화) 14:00

■ 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 참석자 : 이균재 주무관,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방안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간이 되는 농업인경영체등록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방문하였음
- 경영체정보의 신뢰성 및 종사자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와 농관원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함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농업인경영체 등록하는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을 근간으로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1,000㎡만 등록하면 경영주는 등록할 수 있음. 경영주 외 농업인의 경우는 더 많은 조건이 있음(①경영주인 농업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6개월 이상 등록 ②비농촌의 경우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를 농지의 이장(이장 못 받을 경우 이웃 주민 2명)의 확인 ③직장을 다니지 않는 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 해당할 경우 등록 안 됨 (세 번째 조건에서 가장 많이 탈락함)) 가족이 아닌 경우 고용 체결 후 90일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통장사본 확인, 가족의 경우 6개월을 확인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위에서 제시된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주민등록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세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예전에 등록된 경영체에 대한 신뢰성은 어떠한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3년 이상 미변경 가입자에 한하여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음. 즉 3년에 한번은 무조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재해보험, 중복필지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음. 매년 분기 및 반기마다 시행하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명 혹은 한주소지에서 중복으로 신청가능한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주소지 등록이 원칙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을 가질 수 없음
타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 타 사무소에 확인 요청을 하여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음. 새로운 신규 경영체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고 있음
직불제의 경우 농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접 농지의

주소지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준용하면 농민개별 지급의 정확성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농관원에서는 즉각 즉각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점의 상황으로 정확하다는
확답은 할 수 없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최근에 부여군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 한승석(충남연구원)

- 한 주소지 내에 세대는 몇 개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원칙이 한 세대당 한 경영체가 원칙이고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매 등의 각각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한 주소지에 추가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하나 부여군의 경우 잘 해주지 않고 있
으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함
통계상으로 보면 경영체의 수는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각종 수당의 수급을 위해
새롭게 분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함

■ 한승석(충남연구원)

- 현재 농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무조건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경영체를 등록하려는 의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함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농정관련 사업 중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요구하는 사업이 현재 100개가 넘는 것으
로 알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민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부여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한 번 있었으며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대해 소개해 준적이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민수당 지급 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확인하고 지급한다면 정확한 농민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금년 9월경 무인발급기 구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행정공무원들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함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서로 불편한 상황이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건의하고 있으나 불가한 상황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경영체 등록 신규발급시 관련된 정보를 다 확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최초 등록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이로써 실제 농지를 알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음
수목의 경우 실제 판매를 위한 수목인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영체 등록을 받아 주지 않고 있으나 민원이 많은 상태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전체 경영체 중 직불제에서 제외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직불제는 행정에서 지급하는 상황으로 농관원에서 알 수는 없으며 농관원에서는 이행점검만 하고 있음
부동산 정보 중 토지대장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으로 안 맞을 경우 즉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본원에서 지방 사무소로 정보를 전달하여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는 고령자, 저소득자 등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 이균재(농관원 부여사무소)

-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음. 경영체 등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1,000㎡를 바꾸든 다른 농업의 형태도 바꿀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2) 인터뷰 결과요약

■ 주소지 중복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은 한 개 주소지 한 개가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 타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 해당 사무소에 확인요청을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 함

■ 농업경영체 등록 현행화

- 토지 이전의 유무, 주소지 이전 등은 해당 정보와 연동되어 농관원에서 확인하여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음
- 변경된 정보는 즉각 현행화, 미변동 경영체의 경우도 3년마다 1회씩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음
- 농관원에서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전수 조사는 못하지만 일부 표본조사 및 수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인터뷰

2) 기초자치단체

■ 공주시청 농업정책과

■ 일시 : 2019.07.18.(목) 10:00

■ 장소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 참석자 : 서은원 팀장, 윤정권 주무관,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전남 및 전북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자 하며, 경기도의 경우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서은원(공주시 농업정책과 팀장)

- 농업인의 소득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에서 심의한다고 하여 실질적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직불제 체계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으나 농민수당의 경우 대상이 넓고 자신이 받는 금액과 연결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가능함

■ 윤정권(공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현재 직불금과 관련된 업무를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수당 지급까지 시행되게 된다면 업무의 과중이 클 것이라 생각함

■ 서은원(공주시 농업정책과 팀장)

- 실행에 대한 과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커 광역이나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다양한 수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검토해야 할 것임
직불제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

수당은 그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단순한 소득의지 측면이기 보다는 농촌 사회와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진행하는 목적도 있음

■ 윤정권(공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해남이 시행하였지만 농촌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의문임. 농지원부에서 경영체 등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지 의문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읍면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임
농관원, 읍면, 리, 시군 등의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윤정권(공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직불제의 경우 공무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직불제심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원이 걸리지 않는 상황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행정이 실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윤정권(공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농업환경실천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박경철(충남연구원)

- 아직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농민수당은 추가할지 통합할지 향후 결정될 것이라 생각함

■ 윤정권(공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농업환경실천사업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환경실천을 실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직불금 신청자를 시스템에서 받아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농업환경실천사업 조건 자체가 직불금을 받아야 주기 때문에 거의 일치 한다고 봐야함. 농관원에서 농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없어 등록된 경영체 중 표본으로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서은원(공주시 농업정책과 팀장)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는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관외 거주자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농업 관련 신청은 해당 주거지로 가야하기 때문에 실농작지와 실거주지가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됨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지역에서 추적하기 힘들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고 농업경영체를 분리할 수 있음.

■ 한승석(충남연구원)

- 직불제의 경우 직불제만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지

■ 서은원(공주시 농업정책과 팀장)

- 직불제의 경우 프로그램이 있어서 검증이 되나 농업환경실천사업은 프로그램이 없어 검증이 될 수 없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공주시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체 중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되어 제외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 윤정권(공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과거 근무하였던 우성면의 경우 2018년 쌀을 기준으로 1,500농가를 지급하였으나 3,700만원이상 소득으로 걸러진 사람이 13명 정도임

■ 서은원(공주시 농업정책과 팀장)

- 직불금 지급 받는 농가 중 고소득으로 제외되는 경우 전체에서 1%도 안됨

■ 윤정권(공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경영주가 경영체 등록시 신청서 내에 배우자에 대해서 정보 자체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농관원에서 확인할 수 없음

■ 서은원(공주시 농업정책과 팀장)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지급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향후 책임 소재의 문제로 인한 협조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음

■ 윤정권(공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년초에 직불금 신청 받을 때 농관원과 읍면에서 같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
임차농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인터뷰 결과요약

■ 행정의 업무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불금 업무에서 농민수당의 업무가 추가되면 업무의 과다가 예상됨
- 직불금의 경우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검증이 되나 농업환경실천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으로 검증이 힘든 상태임

■ 직불금 지급 관련

- 직불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음
-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임
- 직불금 지급시 농외 소득이 높아 직불금 수급에 탈락하는 인원은 극히 드문 상태임

■ 기타 사항

-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적인 접근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시 기입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짐
- 농민수당의 지급으로 임차농이 증가하고 더불어 농업경영체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함

■ 부여군 규암면행정복지센터

■ 일시 : 2019.07.18.(목) 14:00

■ 장소 : 부여군 규암면행정복지센터

■ 참석자 : 박종화 부면장, 주무관 3명,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읍면단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읍면단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으로 읍면의 업무강도, 수용성 등을 조사하고자 함.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1

- 직불제 지급의 경우 본인들의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맞으면 등록을 하는 상황이며 현장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임

■ 박종화(부여군 규암면 부면장)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가 존재하고 있으나 과연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경영체 등록은 농지원부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변화가 많은 상황으로 농관원에서 농지원부를 회망하고 있음. 오히려 읍면이 농관원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향후 공익적 직불제, 농민수당의 지급이 본격화 되면 관리 방안이 현실화 될 것으로 생각함

■ 박종화(부여군 규암면 부면장)

- 농지원부가 경영체등록 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함
업무는 다양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은 증가하지 않고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담당 인력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1

- 읍면단위에서는 직불제는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류상의 일원화가 좋으나 각 데이터를 연계성을 높여 활용도를 높여야 함. 현장 확인의 경우 필요한 상황으로 인력 확충이 시행되어야 함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2

- 현장을 직접 나갈 수 없어서 위성지도를 확인하고 있으나 업데이트가 느린 상황으로 최신정보를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성영상이라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면 좋음
농지원부는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별지급은 어떻게 농업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확인되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농업인 개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박종화(부여군 규암면 부면장)

- 직불제의 자료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3

-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야 함. 일부는 농지원부만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거나 경영체 등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통일되어야 함. 면에서는 경영체 등록을 확인 할 수 없음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노년층의 경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임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2

- ‘직불금 수령내역’이 농민임을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의 가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민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향후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3

- 직불제의 경우 소농이 혜택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농민수당은 소농에게 실질적인 지급이 될 수 있어야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부여군의 경우 개별 농민에게 지급을 약속한 지자체로 향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관원과 함께 해야 할 것임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3

- 농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의 경우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하여 외주를 통해 시행하였으면 함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2

- 농민수당이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읍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어촌공사의 경우 마을 사무장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1

- 직불제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필터링이 가능함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3

- 부여군의 경우 신청서 모집 → 마을 심의위원회 → 읍면 전달 → 지급 결정 구조로 시행하고자 함
부여는 농업경영체는 있으나 실제 농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시행하고자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직불금 지급시 농외 소득이 높아서 제외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1

- 2018년 기준 전체 지급인원 1,500명 중에서 15명 정도 제외되었음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2

- 농업환경실천사업의 경우 대상자 확인을 엑셀프로그램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며 1명에게 농민수당의 업무가 가중될 것임
신청기간이 되면 각종 사항의 이유로 제외된 인원들의 민원 등이 많은 상황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인해야 함. 농지원부에서는 임업, 축산업일 경우 경영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농업인으로 확인이 안 됨

■ 부여군 규암면 주무관 2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체 등록 정보는 확인 될 수 있어야 함

(2) 인터뷰 결과요약

■ 행정의 업무

- 현재 직불제의 경우 1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업환경실천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음
- 직불제는 시스템화 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농업환경실천사업은 엑셀프로그램으로 하나 하나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함

- 일정한 프로그램 혹은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수당의 업무가 시행되면 담당 직원에게 큰 업무가중이 될 수 있음
- 농업인은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등록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 미미한 상황임

■ 기타 사항

- 직불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 농가가 농민수당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원활한 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읍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현재 행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농관원에서 등록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일원화되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부여군 규암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인터뷰

■ 공주시 이인면행정복지센터

■ 일시 : 2019.07.18.(목) 16:00

■ 장소 : 공주시 이인면행정복지센터

■ 참석자 : 팀장 1명, 주무관 1명,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전남북이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부여군의 경우 환경실천사업에 더하여 농민수

당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음

기존의 직불금은 농업 면적에 따라 지급하나 농민수당의 경우 임업, 축산업까지 추가되는 상황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어려움이 있는지 인터뷰 하고자 함

■ 공주시 이인면 주무관

- 현재 시행하는 직불금에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업무의 큰 과부하가 없지만 임업과 축산업이 추가될시 큰 업무과중이 될 것이라 생각함

■ 공주시 이인면 팀장

- 축산업의 경우 분류가 가능하나 임업의 경우 누락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 공주시 이인면 주무관

- 임업이나 축산의 경우 고소득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원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공주시 이인면 팀장

- 임업의 경우 식재 후 몇 년 동안 관리 안하는 농가도 많은 상황으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됨. 즉, 임업은 농업에 비해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조정수의 경우 10 ~ 20년 동안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 마을 단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을의 심적, 분위기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함

■ 공주시 이인면 주무관

- 산림조합의 경우 임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부실한 상태임

■ 한승석(충남연구원)

- 임업인의 문제는 임업 행위가 임업경영체 등록에 정확히 등록이 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공주시 이인면 주무관

- 농관원 및 산림청의 데이터가 공유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시스템의 공유를 위하여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직불금 농업경영체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공주시 이인면 주무관

- 새로운 필지에 대해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과거 직불금 지급이력, 영농기록, 위성 사진(행정망 내 공간정보시스템), 이장 및 3명의 사인이 필요함
1998 ~ 2001년까지 3년 동안 논으로 사용한 논에 대해서만 직불금 지급 대상임 (받은 2012~2014년 동안) → 국제적인 기준. 자유무역협약에 대한 위배로 WTO 결정
직불금의 농지로 지급이 되나 환경실천사업은 주소지로 지급이 되어 지급에 대한 괴리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
환경실천사업의 경우 동일 주소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주소지를 확인하여 지급하며 이러한 조사를 연 2회 이상해야 하며 일정한 시점이 없는 상황으로 일정한 기준을 선정하여 1회에 한해야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직불금과 농업환경실천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며 추가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는 무엇이 있는지

■ 공주시 이인면 주무관

- 논밭과 관련된 사업은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불금 자체가 전체 업무의 50% 정도 수준임
농업경영체 정보의 경우 텍스트 파일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나 엑셀파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현재는 1명씩 들어가 전체 확인하여야 함

■ 공주시 이인면 팀장

- 마을단위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 자체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의문임
일반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신청인이 면사무소에 와서 공무원에게 신청할 것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해남의 경우 신청기간을 길게 하여 농민들의 행정요구가 집중되지 않게 하는 사례가 있음

■ 공주시 이인면 팀장

- 일부 인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농지를 소유권을 소실된 이후 경영체 등록에 반영 안 된 경우가 있음

(2) 인터뷰 결과요약

■ 행정의 업무

- 직불금 및 농업환경실천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인이며 타 사업도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전체 업무의 50% 이상인 상태임
- 농업경영체의 정보가 엑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텍스트 형태로 제공된다면 업무의 강도는 배로 가증될 것임
- 마을단위 심의위원회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이 있는데 이를 마을에서 준비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결국 행정에서 도와줄 수 밖에 없을 것임

■ 농민수당 수령범위

- 임업인의 경우 작물의 재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상태로 이와 같은 허점을 노려 농민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늘 것임

■ 직불제 수령범위

- 직불제는 농가의 경우 논 '1998 ~ 2004', 밭 '2012 ~ 2014'의 기간동안에 농업행위를 시행했어야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 외의 기간에 농업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불가함



공주시 이인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인터뷰

■ 강진군청
■ 일시 : 2019.07.25.(목) 14:00

■ 장소 : 강진군청 친환경농산과

■ 참석자 : 과장 1명, 팀장 1명,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경영안정 자금의 도입은 농민회에서 제안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송승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과장)

- 농민회와 당시의 군수님과 협의하여 도입하였음. 2017년 하반기 사업을 착수하였는데 전년도 쌀 가격이 폭락하여 소농 및 고령농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도입하였음
현재 정책은 대농 및 법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농업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 안정망이 필요하여 대입하였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충남의 경우 직불금을 활용하여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강진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였는데 어떠하였는지

■ 송승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과장)

- 재정분석은 예산부서에서 시행하였고 충분하며 더 이상의 재원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시행하였고 순수 군비로 시행하였음
당시 채무가 없었으며 특별교부금도 60억 확보된 상태로 무리가 없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민수당의 지급방법은 어떠한지

■ 한승석(충남연구원)

- 농협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농협과 지역화폐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1%가 적용됨

사용은 농협에서 농약, 비료 등을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4, 5월임

■ 송승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과장)

- 1년에 1회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번기가 시작할 때 지급하고 있음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최초 현금 및 상품권을 섞어 줬으나 현금의 경우 저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령기한은 설정되어 있으나 사용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수령은 지역 농협에서 직접 수령하고 있으며 농협 중앙회에서 발행하고 지역 단위 농협에 배부하여 농민은 주거지 근처 농협에서 수령하고 수령시 전산망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수령할 수 있음

등록된 농업인경영체와 실제 수령하는 경영체와 차이는 1,000명 정도 차이가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작년부터 지급을 하였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지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일부 그런 의견이 있으나 증가의 원인은 농협이 농지원부로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가 농업경영체로 바뀐 사유, 청년창업농도 경영체를 분리하여야만 각종 농정사업을 지원하는 사유, 환원농의 증가로 인한 사유 등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함

경영안전자금은 과거 경영체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 한 주소지에 1경영체에 지급하고 있음. 이장과 개발위원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읍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하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경영안전자금의 신청시 절차는 어떠한지

■ 한승석(충남연구원)

-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에서 시행 후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는 전체의 얼마나 되는지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쌀 직불금 신청하듯 개인이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신청시 농가직불

금 수령증 혹은 경작확인증이 제출되어야 함
 시행 후 과거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영체를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새롭게 등록한 경우가 10% 정도가 됨
 최대한의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농지가 1,000㎡가 안 되는 사람은 농업인의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경영안전자금의 도입 후 지역상인의 반응은 어떠한지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시행 첫해의 경우 농민들이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70% 농협에서 사용하였고 다음은 농자재,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였음. 올해는 지역 상인에게 사전 홍보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10% 정도가 지역 상인으로 흘러갔고 향후 더 넘을 것이라 생각함
 1% 수수료로 때문에 일반 상인들도 상품권으로 농협에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나 카드 수수료의 경우 3.3%를 부담하는 반면 지역화폐는 1%의 수수료로 상인들은 반영하고 있음
 강진군 내의 상점 중 농협에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점은 등록만하면 사용이 가능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전라도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데 도입이 된다면 강진군의 경영안전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현 조례를 두고 도 지침을 따라갈지 군에서 추가로 시행할지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임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간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탈락할 수 있으나 상품권으로 지급시 통장잔고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으며 지급방법이 틀려지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당의 개념은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경영안전자금의 부정수급 혹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지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위탁농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농지법 내에 전부 위탁일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면 전부위탁일 경우 농업인의 지위를 박탈하여야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지급 조건 중 지역제한은 어떤지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강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경작을 해야 지급의 조건이 됨

■ 박경철(충남연구원)

- 상품권의 발행에 발생하는 소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 윤영문(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장)

- 한 장당 발행비용 96원 정도 소요되며 최종 금액에서 3 ~ 4% 할인이 있으며 발행액면 금액은 5만원, 1만원권으로 지급함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을 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발행이 늦춰질 수 있음

(2) 인터뷰 결과요약

■ 논밭 경영안전자금 도입 배경

- 농작물 가격의 하락 및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
- 농민회의 최초 요구 후 당시 군수의 전폭적으로 도입을 결정하였음

■ 지역화폐 관련

- 최초 현금 및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지역화폐로 전체 전환하였음
- 사용은 주로 농협에서 이루어지며 농자재를 비롯한 비료의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 도입시기가 지남에 따라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의 도움으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도 환영하고 있음

- 지역의 농협중앙회에서 발행을 전담하고 배급은 지역단위 농협에서 이루어져 수급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극대화하였음
-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종 현금전환자가 1%를 부담하며 액면에 상관없이 한 장당 96원의 발행비용이 발생함
- 최초 발행시 농협에서는 강진군청 3% 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발행 후 발행 수수료를 강진군에 3%를 요구하는 형태임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인터뷰

■ 해남군청

■ 일시 : 2019.07.26.(금) 10:00

■ 장소 : 해남군청 농업정책과

■ 참석자 : 주무관 1명,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도입과정의 어려운 점이나 타 지자체들에 대한 조언사항이 궁금함

■ 박상철(해남군청 농정과 차장)

• (도입과정)

최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반발이 컸었음. ‘왜 농민이냐’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결국 해남사랑 상품권 100%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농민단체만 모여서 회의 했을 시에는 상품권 및 현금 50:50로 하고자 하였으나 소상공인이 함께 회의한 결과 100%로 결정하였으며 최초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지역화폐가 지역 내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수축협은

못 쓰도록 제한하였음

상반기 38억원이 발행되었고 상반기 분은 98%가 지급되었으며 더불어 경제산업
과에 소상공팀을 만들어 상품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농수축협은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향후 지역
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

최초 농협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농수축협의 반대로 인해 사업의 시
행이 불투명하였으나 관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어민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높으며 1,000개 경영체 중 400개가 농업을 겸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농민수당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전남도 수당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도록 설득하였음

추진위원장을 경우 제3자로 행정의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객관
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수로 선임하여 행정의 부담을 경감시켰음

재원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나 실제 시행해보니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박경철(충남연구원)

- 경영체 등록 우선으로 했는데 탈락자의 불만은 없었는지

■ 박상철(해남군청 농정과 차장)

- 도입 후 시행시 15,212 농업경영체 중 13,688 경영체가 대상이었고 지급대상은
12,487 경영체로 1,201개 경영체가 탈락하였음

확인인 주소록을 확인하였으며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실제 경작 및 사육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상, 각종 법령 위반사항(가축전염병, 농지·
산지 관리법 위반 자 등을 제한하였는데 이들은 이미 벌금을 지출하였고 선의의
피해라 할 수 있는데 제한되었다는 문제제기가 되었음), 복지급여(총 16가지, 소
득인정에 반영되는 급여 13개), 67명이 복지급여 대신 농민수당을 받는 것으로
하였고 확인서를 받고 지급하였고 읍면간 중복신청 여부(최초 경영체 등록에 따
른 농지소재지로 하였으나 이중 신청 등의 문제로 주소지로 통일하였음)를 확인
하여 한 주소지에 같이 신청한다고 하면 무조건 1곳만 지급하였음

향후, 지방세 체납시 농민수당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되어 향후 체
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행할 예정임

직불제 수급자는 신청서 및 의무이행 신청서만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전년의 소득이 당해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지급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향후 변화양성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 박상철(해남군청 농정과 차장)

- 도에서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 행정력의 소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군 차원에 서는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강진은 1년에 1회 지급하는데 해남의 경우는 어떤지

■ 박상철(해남군청 농정과 차장)

- 행정의 입장에서는 1년 1회 지급하는 것이 좋으나 상품권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 는 현금화의 문제가 있으며 농민들이 2회 지급을 원하였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한 농민수당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박상철(해남군청 농정과 차장)

- 이미 다른 방법으로 부정 수급하는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타 방법을 제시한다면 법령의 한계가 따른다고 생각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마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지

■ 박상철(해남군청 농정과 차장)

- 마을 이장을 통해 확인을 받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장의 역량으로 인하여 홍보, 확인 등 모두 되지 않는 것이 현실로 마을의 역량이 과연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 임

(2) 인터뷰 결과요약

■ 농민수당 도입

- 농수축협에 사용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수축협 사용을 배제하였으 나 향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수수료는 강진군은 1%로 설정하였으나 해남군은 그보다 적은 0.5%로 설정하였음
- 복지급여와 마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복지급여와 농민수당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수급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음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 60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수령은 지역단위 농협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행정에서 맡게 되면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이 행정의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으나 객관적이라 판단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추진위원회 및 설명회에 지역의 소상공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

■ 향후 활용방안

-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남도청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농민수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논의되어야 함
- 수당의 지급과 지방세 체납과 연계하여 체납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함



해남군 농업정책과 담당자 인터뷰

3)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 강진군 농민회

■ 일시 : 2019.07.25.(목) 14:00

■ 장소 : 강진군 커피숍

■ 참석자 : 장귀영 사무국장,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배경 및 문제점 등 농민의 입장에서 시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 바람

■ 장귀영(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쌀 수매제 폐지 후 도 경영안전자금이 시행되고 강진이 2008년경 농산물 가격 하락, 농자재 비용 증가로 군에 건의 후 16억원으로 경영안전자금으로 최초 시작하였음. 해당 조례는 5년마다 새롭게 갱신해야 하는 상황으로 2017년 정도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음. 서명 받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벼농사에만 자금이 집중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으로 밭농사도 고려하게 되었음. 이로써 논밭경영안전자금이 도입되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군에서 책정한 금액과 농민회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 장귀영(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농민회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군수가 전폭적인 결정으로 시행되었음
현재의 경영안전자금 제도는 농민수당이 시행되면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 즉 지급액이 적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연간 70만원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시행하면 더 줄어 들 수도 있을 것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가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민회의 역할은 있는지

■ 장귀영(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농민회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음
고령자, 땅이 없는 자를 위하여 이장 혹은 마을주민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법적 기준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농민에 대한 배려는 있는지

■ 장귀영(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은퇴농,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농업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으면 함

■ 한승석(충남연구원)

- 경영안전자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은 사업에 대한 인지나 반응은 어떤지

■ 장귀영(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나 농업인들이 소비가 증가하였고 만족도가 높은 편임
경영안전자금의 도입시 상인, 건설업자, 농민회가 모여서 간담회 했을 시 상인들이 농민에 대한 특혜로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민수당 지급 후 마을 혹은 면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개별로 각출해서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장귀영(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예전보다 각출의 의지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강진에서 진행한 경험상 개인별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장귀영(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개별지급을 한다면 결국 금액이 낮춰진 상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도에서 농민수당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농민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 장귀영(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기존에 지급되는 경영안전자금을 수정하여 수급금액이 축소되지 않고 도의 농민수당이 별도로 추가되는 형태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2) 인터뷰 결과요약

■ 논발경영안전자금 도입

-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농민회의 건의를 당시 군수가 전폭적으로 받아드려 시행하게 되었음

■ 논발경영안전자금 반응

-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농업인도 있으나 상품권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임
-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도입 초기에는 농업인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으로 반대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다보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 전남도 농민수당과의 관계

- 현행 논발경영안전자금의 금액과 시행방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 일시 : 2019.07.25.(목) 14:00

■ 장소 : 김명숙 의원실

■ 참석자 : 김명숙 의원, 연구진 2명

(1) 인터뷰 결과

■ 박경철(충남연구원)

- 주민발의 35,000명으로 충족조건보다 2배를 채워 조례제정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김명숙(충남도의원)

- 주민발의나 도의원 발의나 문제는 없으나 금액적으로 합의가 될지가 문제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 충남도가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연금처럼 할증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개별 농가에 60만원 지급보다 1백억원 가량 더 필요함
- 50만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농업인이 증가하면 추가로 지급하여 2인 80만원, 3인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있으며, 실제 지급을 하게 되면 해남 혹은 강진의 경우 약 전체 예산에서 15% 정도는 지급이 안 되었음

■ 김명숙(충남도의원)

- 지급이 됐을 때, 같은 지역 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 동의하나 제도를 개방하여 놓으면 도시민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악용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 농업인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김명숙(충남도의원)

- 직불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주고 있는 상황이며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예컨대 농촌에 이주한지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조건이 되나, 실제 농촌에 오랫동안 거주하였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농촌에 거주하면서 법적인 농민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과 새로 유입된 농업인과의 갈등이 문제가 있음
- 법적 농업인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과거 서천군 한계마을 연구시 한계마을에 대해서 수당 형식의 주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였음
- 향후 농민수당보다 농어촌주민수당의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거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김명숙(충남도의원)

- 농업인은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보다 큰 틀에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한 방안이 중요함

- 세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민의 범위를 농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에서 일용직을 영위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 유엔의 농민권리선언에 있듯이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만이 지역의 거주민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김명숙(충남도의원)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중 전통문화의 보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야 함
- 농민과 공무원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 이외의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 연매출 1억이 넘더라도 농민이면 학자금도 무이자로 이루어지고 있음. 건강보험 역시 농민은 경감되나 농촌에 거주하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음. 이와 같이 사각지대가 큰 상태임
- 현재 농민수당의 체계 내에서 이들을 못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연구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개정되고 있는 직불금도 있기 때문에 직불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업환경실천 사업의 경우 최초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했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로 인해 농업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국한시켰음
- 우선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김명숙(충남도의원)

- 행정의 역할은 그와 같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시행한 이후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함

■ 김명숙(충남도의원)

-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예산이 지방이향 되면서 농민수당에 대한 필요성 및 여론 등의 문제로 확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음
- 현재 확보된 예산은 환경실천사업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통폐합 등에 대하여 농민들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농민들도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가 반영되어야 함
- 농민단체와 함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보조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오픈하고 논의를 하였으면 함
- 1회성 연명사업, 기계지원, 종자지원 등의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1년에 얼마 이상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시켜야 함
- 사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분은 마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음

■ 박경철(충남연구원)

- 직불금이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는 마을수당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수당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함
- 이와 같은 시설의 지원, 직접적인 소득보장이 안 되는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함

■ 김명숙(충남도의원)

- 향후 실질적인 시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시행되어야 하며 농민과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함
- 행정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농민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선제작업이 시행되어야 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민수당이 시행된 해남과 같은 경우 농수축협에서 사용을 금지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김명숙(충남도의원)

- 농민수당이 지급하기 위하여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거론하였으면 함

- 사각지대의 거주민에 대한 노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거론하였으면 함 (약한 수준의 마을사업)

(2) 인터뷰 결과요약

-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의 단순한 일용직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급방안도 제시되어야 함
-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사업 중 정리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농민단체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더불어 내용을 적시하였으면 함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책임	박 경 철	책임연구원
연구간사	한 승 석	연구원
내부 연구진	강 마 야	연구위원
외부 자문위원	김 명 숙	충남도의회 의원
	김 득 응	충남도의회 의원
	방 한 일	충남도의회 의원
	이 선 영	충남도의회 의원
	박 지 홍	충남도 식량원예과 과장
	김 희 봉	당진시 농민수당 추진위원장
	김 지 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최 용 혁	충남도농민회 정책위원장 등
행정협조	최 영 길	충남도의회 주무관
	남 홍 우	충남도의회 주무관